



전라남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 2021-22호

2021년 5월 20일 (목)

발행 : 전라남도 / 편집 : 대변인실
홈페이지 www.jeonnam.go.kr



목 차

◆ 조 례

전라남도 조례 제5303호	조직개편에 따른 실·국명 등 일괄개정을 위한 전라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04호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05호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06호	전라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07호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08호	전라남도 수난구조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09호	전라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10호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11호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12호	전라남도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정비 지원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13호	전라남도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가족 구현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14호	전라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15호	전라남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16호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17호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18호	전라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19호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20호	전라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21호	전라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22호	전라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23호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24호	전라남도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25호	전라남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26호	전라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27호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328호	전라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규 칙

- 전라남도 규칙 제3259호 조직개편에 따른 실·국명 등 일괄개정을 위한 전라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 전라남도 규칙 제3260호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훈 령

- 전라남도 훈령 제1450호 조직개편에 따른 실·국명 등 일괄개정을 위한 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훈령

◆ 고 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1-225호 담양산단 진입도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1-227호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사업계획 변경 고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1-229호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1-230호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고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1-232호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 결정 고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1-233호 나주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 공간시설) 변경 결정 고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1-235호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 고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1-237호 지방어항 지정(변경) 고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1-238호 감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앙로 리브프로젝트 조성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1-239호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추진계획(13차) 고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1-242호 2021년 흡수로 구조물화사업(시군) 시행계획 승인(5차) 고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1-243호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사업계획 변경 고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1-244호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자원효율화사업시행계획 승인 고시

◆ 공 고

- 전라남도 공고 제2021-547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변경) 공고
- 전라남도 공고 제2021-548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공고
- 전라남도 공고 제2021-551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공고
- 전라남도 공고 제2021-554호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사전 열람 공고
- 전라남도 공고 제2021-557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공고
- 전라남도 공고 제2021-562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 시군행정

목포시 공고 제2021-848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소로 2-538호선)사업 실시계획 공고
목포시 공고 제2021-854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소로 3-317호선)사업 실시계획 공고
목포시 공고 제2021-855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소로 1-246호선)사업 실시계획 공고
여수시 고시 제2021-206호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순천시 고시 제2021-106호	순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나주시 공고 제2021-723호	나주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서류열람 공고
광양시 고시 제2021-185호	광양 도시관리계획(백운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강진군 고시 제2021-71호	강진 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진군 고시 제2021-73호	강진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강진군 공고 제2021-367호	강진 군계획시설(주차장 1호) 영랑힐링정원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영광군 고시 제2021-55호	‘영광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영광군 고시 제2021-56호	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유관기관

광양청 고시 제2021-16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고시
------------------	---------------------

조직개편에 따른 실·국명 등 일괄개정을 위한 전라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03호

조직개편에 따른 실·국명 등 일괄개정을 위한 전라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전라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경제에너지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경제에너지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제2조(「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일자리정책본부”를 “일자리경제본부”로 한다.

제3조(「전라남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일자리정책본부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에너지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전라남도 산업평화상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산업평화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제에너지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중소벤처기업과장”으로 한다.

제6조(「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정책실장, 경제과학국장, 건설도시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 전략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7조(「전라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에너지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 제8조(「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일자리정책본부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제에너지국장”을 “전략산업국장”으로 한다.
- 제9조(「전라남도 산업단지 활성화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산업단지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정책본부장, 경제에너지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 전략산업국장”으로 한다.
- 제10조(「전라남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정책본부장, 경제에너지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 전략산업국장”으로 한다.
- 제11조(「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 중 “경제에너지국장”을 “전략산업국장”으로 한다.
- 제12조(「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에너지국장”을 “전략산업국장”으로 한다.
- 제13조(「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에너지국장”을 “전략산업국장”으로 한다.
- 제14조(「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 제15조(「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정책실장, 경제과학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 전략산업국장”으로 한다.
- 제16조(「전라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전략산업국장”으로 한다.
- 제17조(「전라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정책본부장, 경제에너지국장”을 “일자리경제본

부장, 전략산업국장” 으로 한다.

제18조(「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해양항만과장·건설도시국장·문화산업디자인과장·농업정책과장·산림산업과장”을 “해운항만과장·건설교통국장·문화자원과장·농업정책과장·산림보전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전라남도 친환경 지역개발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친환경 지역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건설도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제과학국”을 “에너지산업국”으로 한다.

제20조(「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일자리정책본부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제21조(「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의 “일자리정책본부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경제에너지국장”을 “전략산업국장”으로 한다.

제22조(「전라남도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자원과장”으로 한다.

제23조(「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자원과장”으로 한다.

제24조(「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일자리정책본부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제25조(「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일자리정책본부장, 경제에너지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 전략산업국장, 에너지산업국장”으로 한다.

제26조(「전라남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제에너지국장”을 “전략산업국장”으로 한다.

제27조(「전라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일자리정책본부장, 경제에너지국장” 을 “일자리경제본부장, 전략산업국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04호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공증”을 “체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민간위탁 사항(제4조 관련)

소 관	위탁사무명	수탁기관
인구청년정책관	①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② 모자보건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농어법 관련 법인·단체 복지 관련 법인·단체
여성가족정책관	① 성교육 및 성상담에 관한 사항	보건 관련 법인·단체
에너지신산업과	①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신·재생에너지 운영 관련 법인·단체
관 광 과	① 관광 관련 종사원 교육 ② 관광의 날 기념행사 ③ 전남관광 홍보관 운영 ④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추진 ⑤ 관광안내소 운영 ⑥ 관광전남 홍보 캠페인 ⑦ 그 밖에 관광진흥에 관한 도지사가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	관광 관련 법인·단체
문화예술과	① 남도소리올림터 관리·운영	문화예술사업 관련 법인·단체
문화자원과	① 전라남도고인돌공원관리사무소 관리·운영	문화재 관련 법인·단체
스포츠산업과	① 전라남도체육시설관리·운영	체육 관련 법인·단체
건강증진과	① 보건증진에 관한 다음 사무 1.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2. 주민건강생활 지원·검진·보건교육 등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건강검진 및 검진 관련 전문 기관·단체
식품의약과	① 이동응급 의료에 관한 다음 사무 1. 차량 및 장비관리·유지·운영에 관한 사항 2. 장비활용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동응급 의료세트 관리지침에 따라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②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다음 사무 1.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가 요청하는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③ 전라남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외상전문치료 센터, 권역응급 의료센터 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응급구조사 양성 기관 또는 권역 응급의료 센터, 적십자사 등 보건산업진흥원, 정부출연 연 구기관, 대학·산업대학 비영리 법인·단체
감염병관리과	① 한센병에 관한 다음 사무 1. 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 2. 한센병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한센 관련 법인·단체 또는 한센병 치료 관련 병원

소 관	위 탁 사 무 명	수탁기관
감염병관리과	3. 한센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5. 난치성 한센환자의 입원치료 6. 한센병 치료 전문 진료소 설치 7. 신환자 발견을 위한 일반피부와 진료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8. 그 밖에 한센병 관리와 관계하여 도지사가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 9. 한센 부랑인 선도사업 ② 결핵환자에 관한 다음 사무 1. 결핵환자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사항 2. 결핵관리요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결핵관리역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X-ray 필름 판독에 관한 사항 5. X-ray 이동 검진에 관한 사항 6. 결핵 등록환자의 진료에 관한사항 ③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의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감염병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1. 공공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감염병관리자)교육 2. 기생충질환 감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결핵예방 관련 법인·단체 또는 결핵전문 치료 병원 에이즈예방 및 퇴치 관련 법인·단체 감염병 관리 관련 전문 기관·단체
농식품유통과	① 남도장터(JNmall) 운영 ② 남도장터(JNmall) 추가입점 및 입점업체 개별 홈페이지 구축	전자상거래 관련 법인·단체
해운항만과	① 지방부역항 및 연안항 여객선터미널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여객선터미널 운영 관련 법인·단체
도로교통과	①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사회복지, 장애인 관련 법인·단체
총무과	① 전남도청 비둘기 어린이집 관리 운영	도내대학 또는 보육 관련 단체·법인
희망인재육성과	① 전라남도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② 전라남도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해양수산과학원	① 전라남도 전복양식업 관리·운영	어업법인
도립미술관	① 아산조방원미술관 관리·운영	문화예술사업 관련 법인·단체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05호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미리 전라남도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중복감사의 방지) ①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

② 자치경찰사무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0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로부터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고 재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임명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상임위원 선정을 의결한다.

제6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 ① 위원은 재적위원 2명 이상의 찬성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

제7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 할 경우 심의·의결할 수 없다.

1. 위원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사항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 등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은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 등을 중단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지체 없이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신청할 경우 상임위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8조(위원의 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참석수당 외에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3급 지방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실무협의회에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기구 소속 실무협의회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구성, 회의 개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예산) ①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전에 예산안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전라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유사지원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4조(위원장의 의회 출석·답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제2조제1항 관련)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운영	①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범죄 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 추진 ②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나)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진단	① 지역·건물의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및 점검·관리 ②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시행 ③ 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 등 범죄예방진단팀(CPO) 운영
	다)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① 시기별·테마별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②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지역안전순찰 등) 제도 시행 ③ 은행·편의점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 범죄예방활동 시행
2)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①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협업 및 지원·지도
	나)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① 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요령·범죄예방교실·시민경찰학교 등 홍보활동 ②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합동순찰 등)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	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구조지원
	나)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	①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② 재해발생지역의 교통관리 등
	다)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 내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가)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	①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사안대응(시설 내 학대 점검, 가·피해자 조사 등) ③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피해자 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나)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대응 활동	① 지문 등 사전등록 업무 ② 실종·유괴 경보 체계 구축·운영 ③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대상시설 지도·감독 ④ 유전자 채취 및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 운영
	다)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①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선발·배치·감독 ② 아동안전지킴이집 관리 및 운영·교육·홍보 ③ 기타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p>라)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활동</p>	<p>① 청소년 비행방지, 선도·보호활동 ② 위기청소년(가·피해학생,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면담·관리 ③ 위기청소년 발굴(거리상담 등) 및 유관기관 연계 ④ 소년법 선도제도 운영(선도프로그램, 선도심사위원회, 전문가참여제, 우범소년 송치) ⑤ 경찰의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대한 청소년 참여 제도 운영(정책자문단 등)</p>
	<p>마)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p>	<p>① 가정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가정폭력 (긴급)입시조치 ③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 가정폭력 사안대응(협업회의의 참석, 가·피해자 조사 등) ⑤ 가정폭력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p>
	<p>바) 학교폭력의 근절·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p>	<p>① 학교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학교폭력 사안대응(학폭위 참석, 117사안대응, 가·피해학생 조사 등) ③ 청소년육성회 등 지역 내 학교폭력 유관단체와 협업 업무 ④ 청소년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⑤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p>
	<p>사)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p>	<p>① 성폭력범죄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p>
	<p>아)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업무</p>	<p>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업무</p>
<p>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p>	<p>가) 경범죄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p>	<p>① 경범죄 위반행위 단속(과태료 등 지체 행정처분 사항 제외) ② 지역 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대상 계도 및 홍보 등</p>
	<p>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성매매 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단속</p>	<p>① 풍속영업의 지도·단속 ② 성매매 단속 ③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④ 사행행위 지도·단속</p>
	<p>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p>	<p>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p>
<p>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p>	<p>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p>	<p>① 가정폭력, 학교폭력, 이동학대, 실종 등 지치경찰 수사사무 관련 신고 처리 ② 풍속영업, 기티경범죄, 주취자 등 지역 질서유지 관련 신고 처리 ③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등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신고 처리</p>

나) 지하철,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	① 지하철경찰대 설치·운영(수사 제외) ② 내수면경찰대 설치·운영 ③ 관광경찰대 설치·운영
다) 유실물 보관·반환·매각·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	① 유실물 처리업무 계획 및 지도·감독 ② 습득물·분실물 신고접수 및 보관 ③ 유실자 확인 및 습득자 소유권 취득 시 물건 인계 ④ 법정기간 만료 시 국고·금고 귀속 ⑤ 유실물 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	① 응급구호대상자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 긴급구호 요청 및 인계하거나 경찰관서 임시보호 등 조치 ② 응급구호대상자 휴대 무기·흉기 임시영치 ③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④ 그 밖에 응급구호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마)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가)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	① 음주·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 ③ 기타 교통법규 위반신고 처리(영상단속, 방문 신고 등)
	나)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관리·운영 등	① 음주단속장비 등 구매보급 ② 음주단속장비 등 검정·교정 ③ 음주단속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가) 교통사고 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운영	① 교통안전시설 운영계획 수립 ② 교통신호기 설치·관리·운영 ③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④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⑤ 교통안전시설 및 유사 교통안전시설 무단 설치 단속 ⑥ 그 밖에 도로 위험 방지와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관련 조치
	나)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② 도로교통 규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여부의 심의·결정
	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운영	①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설치·관리·운영 ②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우선 설치장소 선정 심의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가)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계획 수립시행 ② 교안, 리플렛 등 교육자료 제작배포
	나)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홍보계획 수립시행 ② 교통안전 홍보물품 구매보급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모범운전자화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 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단체 구성 ② 모범운전자화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 단체의 교통안전 지원활동 관리
	나) 주민참여형 교통안전활동 지원 및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사고 운전자 선발·관리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안내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가) 차미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 차 통행허가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전기준 초과승차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②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③ 차로폭초과차 통행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나) 도로공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도로점용허가 필요 조치 ② 도로공사 신고 관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
	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관리 및 관계 기관 합동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접수 및 신고증명서 발급재교부 ②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및 계도단속
	라)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긴급자동차 지정증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긴급자동차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마)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바)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법인 등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견인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취소·정지 및 지정증 회수
	가)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통사고, 사망·대형사고 신고 처리 ② 음주운전, 교통위반 신고 처리 ③ 교통불편 신고 처리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나)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운전면허 발급·재발급·갱신 신청·접수·교부 ②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접수 ③ 국제운전면허 신청접수 및 교부 ④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⑤ 기타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다)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② 교통정보 연계(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등과의 연계)
라)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출·퇴근 시간대 및 상습 정체 구간 주요 교차로에서의 교통관리 ② 안전사고·재해·재난 발생 시 이동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 및 관리
마)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기별취약 대상위험요인별 지역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② 지역 교통안전협의체 구성운영 등 교통안전 분야 유관기관 협업
바)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 교통영향평가, 교통성 검토 등 교통소통 관련 협의 ② 「도로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등 관련 협의(도로관리청이 국토부장관인 경우는 제외) ③ 「교통안전법」상 안전진단, 사고조사 관련 협의 ④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관련 협의 ⑤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	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 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중운집 행사장 주변 주요 교차로 소통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지원 ② 행사장 주변 보행자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 지원
	나.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원 ② 행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활동 지원

비고 : 위 표의 나목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의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는 제외한다.

[별표 2]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수당의 종류

- 가. 참석수당: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 나. 심사수당: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 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2. 수당의 지급기준

가. 참석수당

구분	기준 단가	비고
참석수당	· 기본료 150,000원 · 초과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만 지급한다.

- 나.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위원회 예산 범위에서 사전 위원회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가능

전라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06호

전라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라남도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과 사회 기능 유지 및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9조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제9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라남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제도 개선
4. 재원 조달 방안
5. 노동환경 개선
6.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재난상황에 대한 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노동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2. 연구 조사 및 기초자료 구축
3.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심리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실태 조사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정)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전라남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결과를 전라남도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지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범위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3.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사업추진 및 실태조사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필수업무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및 전문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위원 또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6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수업무의 정의, 범위 및 중요성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방안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07호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한 차례만 재위촉” 을 “재위촉”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민명예기자로 위촉되어 있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전라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08호

전라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 을 “(경비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2.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유형 및 지급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지원금의 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한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 중 “지원” 을 “지원과 수난구호활동에 필요한 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 훈련 등”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09호

전라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전라남도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4. “낚시 관련 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영업과 낚시용 기자재 제조·유통·판매업 등을 말한다.
5.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의 불법행위 감시·지도 및 안전점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라남도 낚시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낚시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보호
3. 낚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낚시 기반 조성
4. 낚시의 저변 확대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5.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낚시터 환경 개선
2.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3.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4. 낚시학교 및 낚시공원 설립·운영 등 낚시 기반 조성
5. 낚시터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6.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낚시환경지킴이) ① 도지사는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낚시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을 설정·변경한 경우에는 낚시인이 알 수 있도록 전라남도 도보 또는 누리집 게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제7조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및 포상) 도지사는 불법 낚시행위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 선정절차, 포상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10호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목을 “출향전라남도민증” 을 “전남사랑도민증”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출향전라남도민증” 을 “전남사랑도민증” 으로, “출향도민증” 을 “전남도민증” 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전남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편의 및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자와 상호 업무협약 등을 통해 할인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 및 시·군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2. 도내 관광 관련 민간시설(숙박·레저·교통관련시설이나 음식점 등을 말한다)
3. 지역특산품 및 농수축산물 관련 온·오프라인 판매시설
4. 그 밖에 출향도민의 이용수요가 높은 각종 유료시설 등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할인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할인가맹점 안내 및 홍보
2. 할인가맹점이 출향도민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혜택
3. 그 밖에 도지사가 출향도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11호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정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12호

전라남도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정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센인 정착마을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센인 피해자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센인”이란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을 말한다.
2. “한센인 정착마을”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지역 중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 정비를 위한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한센인 정착마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센인의 날 행사
2. 제6조에 따른 마을환경정비 사업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과 추진 방향
2. 추진체계
3.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마을환경정비 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한센인 정착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해당 지역은 제외한다.

1. 한센인 정착마을 주택의 개량(신축·증축·대수선 및 보수) 사업

2. 슬레이트(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 축사, 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 제거 및 처리 사업
 3. 산사태, 침수, 화재 등 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건물) 보수, CCTV 설치 등 안전 확보 사업
 4. 상하수도 설치·개량 지원, 재래식 화장실 개선, 비주거용 건물 정비 등 생활·위생관련 사업
 5. 그 밖에 한센인 정착마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마을환경정비 사업에 대한 신청, 선정,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행정지원협의체) 도지사는 마을환경정비 사업을 위해 주관부서와 환경, 농축산, 도시계획, 문화체육 등 관련부서 간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지원협의체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가족 구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13호

전라남도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가족 구현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남도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가족 구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라남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3. “사회복지전달체계”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중복이나 누락 없이 전라남도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를 말한다.
- 4. “민간자원”이란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전라남도 및 각 시·군 외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홀로 사는 노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업대상의 규모
3.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4.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5. 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업 수행인력
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7. 예산 지원
8.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홀로 사는 노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라남도 내(이하 “도내” 라 한다)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서비스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노인돌봄사업 및 어르신지킴이단 지원
2.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운영
3. 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업 수행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및 파견
4. 홀로 사는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5.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연계 등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를 운용하는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군에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가 도내 다른 시·군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학생이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나 결연프로그램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14호

전라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에 따라”를 “에서 위임된 사항과”로, “생성물질”을 “생성물질의”로, “관리함”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전라남도민의 쾌적”을 “쾌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관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세먼지법에 따른다.

제3조제1항 중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를 “미세먼지로부터”로, “수립하고”를 “수립하고,”로, “관리 등을 위하여”를 “관리를 위해”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농도·배출”을 “농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미세먼지 등의”를 “미세먼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취약계층에 대한”을 “취약계층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등의 배출”을 “배출”로 한다.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전라남도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취약계층 등에 대한 피해조사”를 “피해 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를 “저감과 관리를 위해”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국장·원장·본부장”을 “국장·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장(본부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그 직무를 수행”을 “직무를 수행”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및 심의·자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는 전라남도”를 “도지사는”으로, “사업(이하 “저감사업”이라 한다)”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등 지원”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구축·개선”을 “구축·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4.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5. 사업장·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의 미세먼지 저감 기술 지원
7. 미세먼지 대응방안 연구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

제10조의 제목“(취약계층 지원 등)”을“(취약계층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를 “미세먼지법 제2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설치·운영 지원”을 “설치·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기준”을 “지원 범위,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로, “등 세부적인 사항”을 “등”으로 한다.

1. 보건용 마스크 보급

제13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3조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미세먼지경보)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도민의 건강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미세먼지경보를 발령한다. 미세먼지경보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PM-10): 주의보, 경보
2.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경보
- ② 미세먼지경보의 단계별 발령·해제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다.
- ③ 미세먼지경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지역
 2. 미세먼지 농도
 3. 미세먼지경보 단계 및 단계별 조치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중전의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미세먼지경보 대상지역) 미세먼지경보 대상지역은 전라남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권역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경보 대상지역)”을“(미세먼지경보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경보를 발령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보도 관련 기관 및 유관 기관에 신속하게 이를 알려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미세먼지경보 상황을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도로 등에 설치된 전광판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미세먼지경보, 미세먼지 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 “(경보에 따른 조치)” 를 “(미세먼지경보에 따른 조치)”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보” 를 “미세먼지경보” 로, “별표 2” 를 “별표”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경보 발령 시에는” 을 “미세먼지경보 발령 시” 로,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을 “위해 병원·약국, 보건소” 로, “운영,” 을 “운영 및” 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을 “(미세먼지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의 확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보를 발령하여” 를 “미세먼지경보를 발령한 경우” 로,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해당 조치사항” 을 “조치사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보” 를 “미세먼지경보” 로, “특별” 을 “정당” 으로, “해당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를 “이에 따라야” 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를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예측농도” 를 “예측 농도” 로, “할” 을 “시행할”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미세먼지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보도 관련 기관이나 전라남도 누리집 등을 통해 미세먼지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과 도민 등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비상저감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도지사는 미세먼지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제16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① 도지사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지역: 전라남도 전 지역
2.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

② 자동차 운행 제한은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동차
2.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같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4.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없거나 해당 장치나 엔진을 장착할 수 없는 자동차
5. 그 밖에 도지사가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등) ① 도지사는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해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하거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단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중전의 제19조)제1항 중 “유관기관 및 단체”를 “유관 기관·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세먼지 경보”를 “미세먼지경보”로 한다.

제21조(중전의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른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2. 미세먼지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별표로 하고, 같은 표(중전의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라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미세먼지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제14조제1항 관련)

구분	주요보	경보
도민건강 보호	<p>민감군(어린이임산부노인,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등)은 실외 활동 제한</p> <p>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p> <p>외출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 사용)</p> <p>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p> <p>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p> <p>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p> <p>공공기관의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p> <p>공원체육시설터미널철도 등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p> <p>그 밖에 도민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p>	<p>민감군(어린이임산부노인,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등)은 실외 활동 금지</p> <p>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특히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p> <p>외출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 사용)</p> <p>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p> <p>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등하교시간 조정, 수업단축 또는 휴교</p> <p>중고등학교 실외수업 금지</p> <p>공공기관의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p> <p>공원체육시설터미널철도 등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p> <p>그 밖에 도민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p>
대기오염 개선노력	<p>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 차량 제외)</p> <p>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p> <p>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p> <p>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p> <p>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p> <p>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p> <p>공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p> <p>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p>	<p>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 차량 제외)</p> <p>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p> <p>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p> <p>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p> <p>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p> <p>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p> <p>공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p> <p>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p>

전라남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15호

전라남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시장·군수가 지정한 개방화장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민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리운영비”란”을 ““관리·개선 비용”이란”으로, “관리·운영”을 “관리 또는 개선 등”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도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관리·운영에 필요한”을 “관리·개선”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관리운영비 지원 등)”을 “(보조금의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운영비의 지원을”을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개방화장실 관리·개선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보조금 산정에 있어서 개방화장실 이용자 수 및 만족도 평가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의무 사항)”을 “(의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운영비를”을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비치·제공”을 “보관·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관리운영비”를 “보조금”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개방화장실 운영을 하는”을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방화장실 보조금 지원 기준(제5조제1항 관련)

지급 방법

○ 개방시간, 대·소 변기수, 시설 및 청소상태 별 점수를 합산하여 상, 중, 하 구분 차등 지급

개방시간, 대·소 변기수, 시설 및 청소상태에 따른 구분

구분	개방시간		대소 변기수			시설 및 청소상태		
	상시	정시	6개이상	4-5개	3개이하	우수	양호	보통
점수	5	3	5	3	1	5	3	1

지급 금액

등급	상	중	하
점수	12점이상	7~11점	5~7점
지급액 (월)	100,000원	80,000원	60,000원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16호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도의 책무)” 를 “(도지사의 책무)”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포함한다” 를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일제잔재 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일제잔재 용어는 순화하여 사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17호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라남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전라남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문화”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유형·무형의 생활 양식을 말한다.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안전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책의 추진)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
2.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시책
3. 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4.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교육에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18호

전라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주민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여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층간소음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전라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방향
2. 층간소음 방지 시책
3.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소음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실태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 준칙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 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구체적인 조치 및 권고방안 마련
2.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 조정
3. 층간소음 분쟁 조정기관 홍보
4.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예방 및 해소 방안 마련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층간소음에 대한 자문·상담 및 정보제공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소음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라남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19호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등재 등)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횟수: 매년 1회 이상
2. 장소 및 기간: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누리집에 20일 이상
3. 대상: 도에 소재지를 둔 기관. 다만, 「국토안전관리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 지역에 상관없이 제2항에 따른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증명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등재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기관이 아닌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그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2. 도지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
3.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에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시장·군수가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도지사에게 등재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⑥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 또는 변경 등재 통보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 또는 변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제3조제4항에 따른 등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업·재개업·폐업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3조제6항의 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2. 기술인력으로 건축사와 건축 분야 기술사를 모두 갖춘 경우
3. 건축물관리점검대상 건축물의 대지위치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등재 신청 시 작성·제출한 선호지역이 일치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는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 법 제19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취소) ① 시장·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점검기관으로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시장·군수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자의 신체 상태, 점검능력 등이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바로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등재 등) ① 도지사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횟수: 매년 1회 이상
2. 장소 및 기간: 도 및 시·군의 누리집에 20일 이상
3. 대상: 도에 소재지를 두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감리자격이 있는 자
- ② 해체공사감리자로 등재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 증명 서류
2.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증명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8조(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 작성·관리) ① 도지사는 제7조제2항에 따른 등재신청자가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이 아닌 자로서 제9조제2항에 따른 등재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등재신청자를 별지 제7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량 및 해체공사감리자 분포 등을 고려한 권역을 설정하여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를 도 또는 시·군 누리집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시장·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2주 이상 입원 시
2. 국내외 장기 출장 시
3.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다른 공사현장의 상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7조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

2. 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결과

⑤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를 관리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3. 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기간에 있는 해체공사감리자
2.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반납한 해체공사감리자
3.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연기를 요청한 해체공사감리자
4.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유 이외에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해체공사감리자
5.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
6.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 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에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사유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1. 지하층이 있는 공사
2. 리모델링, 건축공사, 해체공사가 혼재할 경우

④ 영 제2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체공사 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등재명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도지사 및 허가권자는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관리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 업무에 대해 해체공사감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② 안전진단: []	

-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	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명, 고급: 명, 중급: 명, 초급: 명, 건축사보: 명)	
	분류	자본금 원
	장비 따로 불임	

「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등재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선호지역(선호지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

■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 통보서

1. 기관명

2.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3. 소재지

4. 전화번호

5. 점검분야

6. 분류

위 기관을 「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변경)등재 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직인

■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고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고인	기관명	등재번호 및 등재일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분야	
------	--

	구분	변경 연월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항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작성방법	신고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

■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5호 서식)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정기점검, () 긴급점검,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통보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대지위치

용도	구조
건축물 수	세대 수
	연면적 m ²

점검대상 건축물						
순번	명 칭	사용 승인일	연면적	세대 수	점검 근거	점검기한
1			m ²			
2			m ²			
3			m ²			

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 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상기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00시장 · 군수

직인

■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6호 서식]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청구분	[] 신규	[] 재신청	[] 중도사퇴 후 재신청
------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개설 신고번호/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주소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1.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다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별지 제8호 서식]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개설 신고번호/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주소	

요청사유 및 기간	[]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2주 이상 입원 시
	[] 국내외 장기 출장 시
	[]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년 월 일 ~ 년 월 일

「전라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전라남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1.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전라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20호

전라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 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전기 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 2.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 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
-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인력 동원
- 2. 전기재해 농어업 시설 및 농수산물 피해 복구
- 3.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방 사업) 도지사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도내 농어업 전기시설 안전 점검
- 2. 도내 노후화된 농어업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 4. 전기재해 조사·연구 및 대응매뉴얼 마련

5. 전기재해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법

2. 농어업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업무 위탁)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21호

전라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교류를 촉진하여 도시민의 농어촌 체험 및 휴양 수요를 충족시키고, 전라남도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농교류, 농어촌 체험관광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체험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계획
2. 농어촌 정주지원 및 투자 활성화
3.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의 개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 확보 및 기반 정비
2.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3. 농어촌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
4. 도농교류 확대 및 홍보
5.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농교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도농교류 활성화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활성화계획

-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지원
- 3. 도농교류 관련 홍보, 조사, 연구
- 4. 그 밖에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농교류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이 선출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2. 도농교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농어촌 관련 단체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대표
- 4. 그 밖에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도농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농교류 활성화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농교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도농교류센터는 도농교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도농교류 협력 증진
 - 2. 도농교류 관련 중간지원조직 운영
 - 3. 도농교류 관련 교육·홍보·전파
 - 4. 그 밖에 도농교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도농교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22호

전라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치유 산업을 육성하고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전라남도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목표 및 방향
2. 해양치유자원 현황
3. 해양치유자원 활용 방안
4.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시책
5.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6.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지구 조성
2. 해양치유 관련 조사 및 연구
3. 해양치유산업 육성
4. 해양치유서비스 활성화
5.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마련

6.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공공시설의 설치) 도지사는 해양치유지구 조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도로, 전기설비, 상하수도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도지사는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 및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군 및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23호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전라남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과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에 따른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고독사 예방 및 지원)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치료 및 지원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3. 법 제16조에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
4. 고독사 예방서비스 발굴 및 지원
5.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고독사 위험자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독사 위험자에게 제6조제1호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 3.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 4.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고독사 예방 협의회) ①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24호

전라남도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활동 참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 활동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관계인구”란 해당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지역 경제, 지역 주민 등과 관계를 맺으며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이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정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청년 정착을 위한 시책 사업 개발·평가
4. 청년 정착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5. 관계 기관 등 협력 방안
6. 그 밖에 청년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년 정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의 지역 경제 활동 사업
2. 청년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 사업

3. 시군 청년마을 조성사업
4. 청년의 지역 체험 및 거주·관광을 통한 정착 지원 등 관계인구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청년 자립지원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 정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청년 관련 법인·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년 활동을 통한 청년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시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25호

전라남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한다.

-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 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 라.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향상의 향상
- 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증진
- 바.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 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 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 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 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 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2. “공공기관”이란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 가치가 공공영역의 실현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정착을 위하여 전라남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
2. 교육 및 연구·조사
3. 제도 개선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관련 지표를 개발하여 기본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차기 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 가치 성과평가) 도지사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 정도에 관한 평가를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사회적 가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
2.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3. 그 밖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적 가치 업무 담당 과장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회적 가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사회적 가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 가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3조(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민간부문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정부, 시·군, 전라남도교육청, 관련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관한 정보공유,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26호

전라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산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연합회 지회”란 전라남도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전라남도 지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회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 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기준) 지방문화원의 시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제6조(시설 제공 및 이용료의 승인) 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 관할 시장·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분원의 설치) 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려면 도지사에게 분원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분원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지방문화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원설치의 필요성이 포함된 설치취지서 1부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서 1부
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6. 분원시설현황

③ 도지사는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향유의 불균형 등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고려

하여 설치를 인가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증을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지방문화원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사업비 및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연합회 지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④ 지방문화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도지사는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 지회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결과를 연합회 지회에 알려야 하며, 문제 발생시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연합회 지회장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 지원) 도지사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다른 지역의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회와의 공동사업, 공동연구, 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남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전라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전라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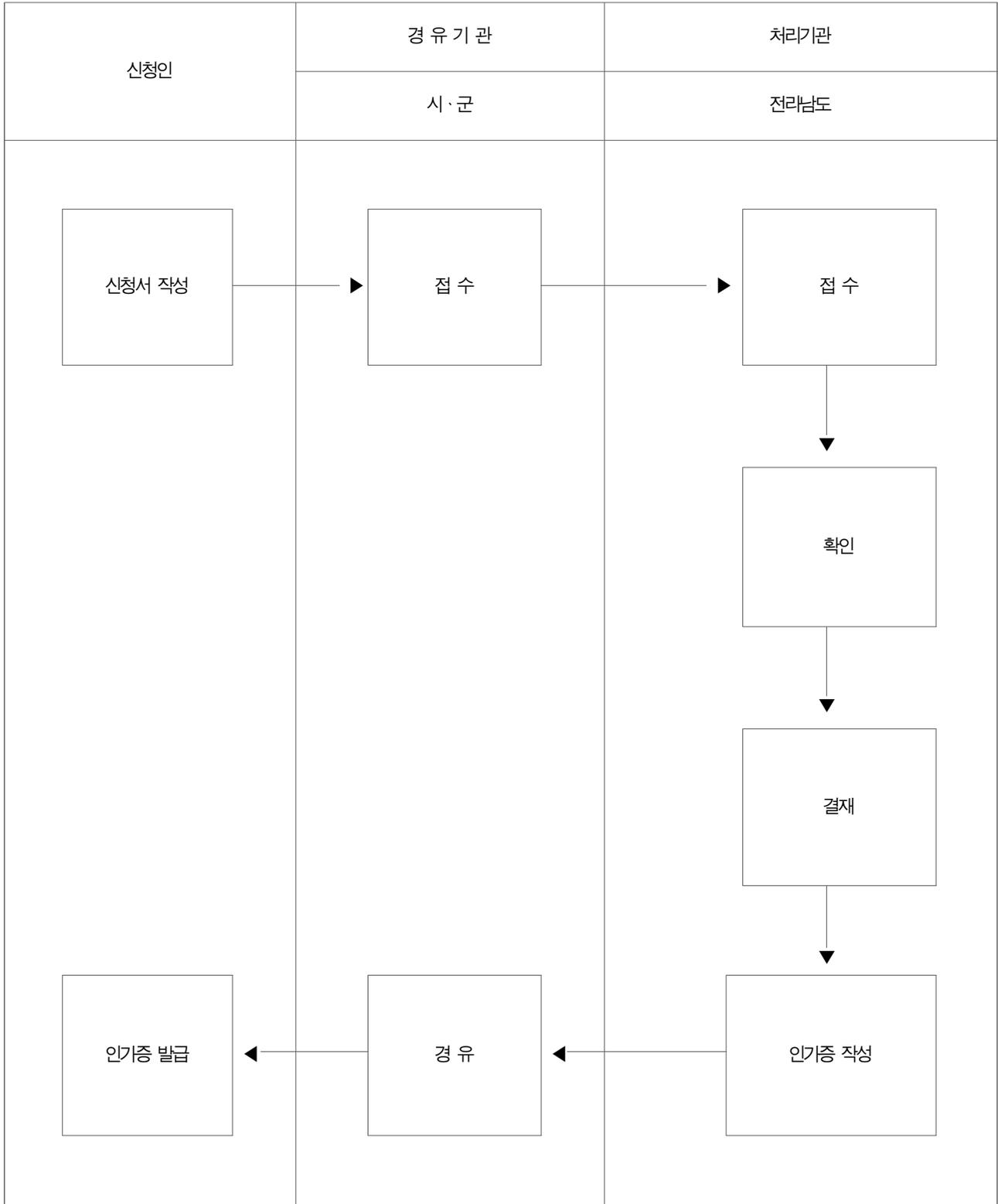
신청인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예금·유기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p>※ 제5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p>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전라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전라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

1. 명 창:

2. 소재지:

3.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4. 설립목적: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전라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직인

■ 전라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 인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앞쪽)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분원	대표자 성명		
		분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8항 및 「전라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원 설치취지서 1부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서 1부 3. 분원 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 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 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6. 분원 시설현황 	수수료 없음
-------------	---	-----------

■ 전라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전라남도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 인가증

1. 명 칭:

2. 소재지

본원	
분원	

3.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4. 설립목적: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8항 및 「전라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직인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27호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328호

전라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직개편에 따른 실·국명 등 일괄개정을 위한 전라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규칙 제3259호

조직개편에 따른 실·국명 등 일괄개정을 위한 전라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전라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의 개정) 전라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에너지국장”을 “전략산업국장”으로 한다.

제2조(「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마을공동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 목부터 다목까지, 마목,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파목을 삭제한다.

- 가. 사회적경제과장
- 나. 인구청년정책관
- 다. 스마트정보담당관
- 마. 문화예술과장
- 사. 산림휴양과장
- 아. 해운항만과장
- 타. 기후생태과장

제3조(「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사회적경제 담당 과장”으로, “사회적경제 담당사무관”을 “사회적기업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사회적경제 담당 과장”으로, “사회적경제 담당 사무관”을 “마을기업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전라남도 중소기업 대상 규칙」의 개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대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제과학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혁신경제과장”을 각각 “기반산업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혁신경제과장”을 각각 “기반산업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관부서란 중 “혁신경제과장”을 각각 “기반산업과장”으로 한다.

제6조(「전라남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개정) 전라남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원장”을 “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제7조(「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의 제목“(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 임용)”를“(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임용)”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8조(「전라남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전라남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10명”을 “11명”으로, “일자리정책본부장, 경제에너지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 전략산업국장, 에너지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명”을 “11명”으로 한다.

제9조(「전라남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전라남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으로, “전라남도 동물위생사업소”를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로 한다.

제10조(「전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전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입학홍보실장”을 “입학학생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입학홍보팀장”을 “입학학생팀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팀장, 대학교의 교무기획실장, 사무국장, 입학홍보실장”을 “희망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팀장, 대학교의 교무기획처장, 사무국장, 입학학생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기 금 납 입 서

원 부

위 탁 서

납입통지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장학기금								
유기증권								
금 정리구분 현 금 증 권 명								
원권 내 원 원권 내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입학 학생 처장</td> <td style="width: 25%;">출 납 원</td> <td style="width: 25%;">취 급 자</td> <td style="width: 25%;">기 장</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입학 학생 처장	출 납 원	취 급 자	기 장				
입학 학생 처장	출 납 원	취 급 자	기 장					

제 호 년도
장학기금
유기증권
금 정리구분 현 금 증 권 명
원권 내 원 원권 내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장학기금 출납원 금고 귀하

제 호 년도								
장학기금								
유기증권								
금 정리구분 현 금 증 권 명								
원권 내 원 원권 내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장학기금 출납원 귀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입학 학생 처장</td> <td style="width: 25%;">출 납 원</td> <td style="width: 25%;">취 급 자</td> <td style="width: 25%;">기 장</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입학 학생 처장	출 납 원	취 급 자	기 장				
입학 학생 처장	출 납 원	취 급 자	기 장					

제 호 년도
장학기금
유기증권
금 정리구분 현 금 증 권 명
원권 내 원 원권 내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입학학생 팀 장	입학학생 처 장	기금운용관	년도 회계	취급자	지출원		
				세출과목			
발 의	(인)	장		발 의	(인)		
		관					
원인행위부 기 재	(인)	항		지 출 부 기 재	(인)		
		세항					
계 약	(인)	세세항		지 출 부 발행부기재	(인)		
		목					
검 수	(인)	지급명령 번호	제 호				
금 _____ 원(금 _____ 원)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채 주	주소		성명				
영수증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 관 과							
취급자 (인)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규칙 제3260호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조례”를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를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50미터”를 “200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신청 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 보조사업자”를 “따른 보조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 지원 결정에 대해”를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 중”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제1항에 따라”로,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

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결과와 일치 하는지, 별표1”을 “결과와 일치하는지, 별표 1”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자는「건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호”를 “자는「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호”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 규정에 의한”을 “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영하여야”를 “반영해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직개편에 따른 실·국명 등 일괄개정을 위한 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훈령 제1450호

조직개편에 따른 실·국명 등 일괄개정을 위한
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훈령

제1조(「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일자리정책본부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제2조(「전라남도 비상대비업무 조정통제규정」의 개정) 전라남도 비상대비업무 조정통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3조(「전라남도 긴급재난문자운영규정」의 개정) 전라남도 긴급재난문자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일자리경제과

19. 감염병관리과

제7조제3호 중 “건강증진과”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혁신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

제4조(「전라남도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전라남도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제과학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일자리창출과장, 지역계획과장, 주택건축과장,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경영지원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 지역계획과장, 건축개발과장,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소기업과”을 “중소벤처기업과”으로 한다.

제5조(「전라남도 중소기업지원 기관협의회 운영규정」의 개정) 전라남도 중소기업지원 기관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과학국” 을 “일자리경제본부” 로 한다.

제6조(「전라남도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포상운영 지침」의 개정) 전라남도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포상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 을 “자치행정국장” 으로, “일자리정책실장” 을 “일자리경제본부장” 으로 한다.

제7조(「전라남도 신 · 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 운영관리 규정」의 개정) 전라남도 신 · 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 운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삼향면” 을 “삼향읍” 으로 한다.

제8조(「전라남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의 개정) 전라남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건설도시국장, 정보화담당관, 자연재난과장, 해양항만과장” 을 “건설교통국장, 스마트정보담당관, 자연재난과장, 해운항만과장” 으로 한다.

제9조(「전라남도 공무국외출장 규정」의 개정) 전라남도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전략산업국장

제8조제1항제2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반산업과장

제10조(「전라남도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의 개정) 전전라남도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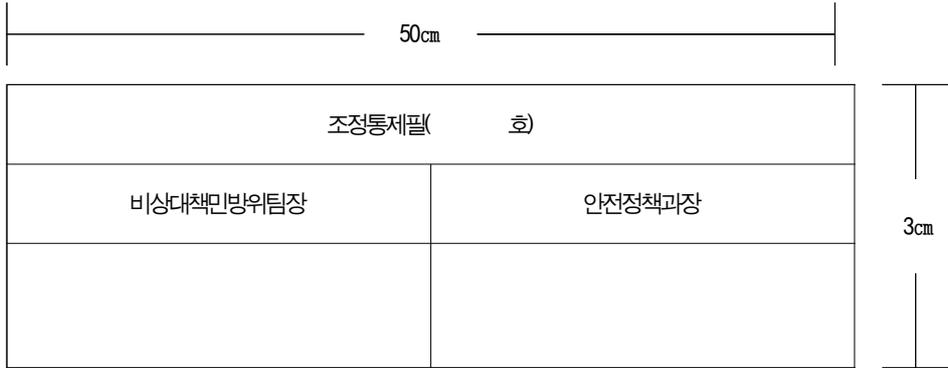
조정 통제 대상(제2조 관련)

부 호	계 획 명	주 관 실 과
총무2100	방송시행계획	대 변 인
◇ 3700	행정안전시행계획(총괄편) 주민및차량통제시행계획 재난안전관리시행계획 인력동원시행계획 지방행정시행계획 지방재정동원시행계획 전시민방위시행계획	총 무 과 자 치 행 정 과 사 회 재 난 과 안 전 정 책 과 총 무 과 예 산 담 당 관 안 전 정 책 과
◇ 3800	문화체육관광시행계획	관 광 과
◇ 3900	농림수산식품시행계획	농 업 정 책 과
◇ 4100	지식경제시행계획	에 너 지 신 산 업 과
◇ 4200	보건복지가족시행계획 식품의약품동원시행계획	건 강 증 진 과
◇ 4300	환경시행계획 상수도시행계획	물 환 경 과
◇ 4500	여성정책시행계획	여 성 가 족 정 책 관
◇ 4600	건설시행계획 교통시행계획	지 역 계 획 과 도 로 교 통 과
◇ 6000	자체총무계획	총 무 과
◇ 9500	행정안전시행계획	총 무 과

[별지 2]

[별표 2]

조정통제인(제8조제1항 관련)



[별지 3]

[별표 1]

직렬별 인사 의견 제출 실·국·원장(제4조제2항 관련)

직렬(직류)	실·국·원장	비고
전산통신직	· 기획조정실장 (스마트정보담당관)	
기계화공자원전기직	· 전략산업국장 (신성장산업과장)	
보건사회복지직	· 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건강증진과장)	
농업직 축산직·축산연구직 수의직·수의연구직	· 농축산식품국장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동물방역과장)	
수산·해양수산연구직, 어촌지도직	· 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과학원장	
환경직 녹지직·녹지연구직	· 동부지역본부장(기후생태·산림보전과장)	
토목·건축지적직	· 건설교통국장 (지역계획·건축개발·토지관리과장)	
농촌지도·농업연구직	· 농업기술원장 (연구개발기술지원국장)	
보건연구·환경연구직	· 보건환경연구원장(연구부장)	

전라남도 고시 제2021-225호

담양산단 진입도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8-4호(2018.1.11)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담양산단 진입도로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담양산단 진입도로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

나. 성 명 : 전라남도지사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목 적(변경없음)

○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물류수송 기능 강화로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담양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불편 해소

나. 사업개요(변경)

○ 토지이용계획

(당초) 124,621㎡

(변경) 124,766㎡ 중) 145㎡

○ 기반시설계획 : 중로 연장 2,900m

(당초) B=20.5m~24.0m - 20.5m(산단진입도로), 21.75m(국도29호선)

(변경) B=11.0m~24.0m - 20.5m(산단진입도로), 11.0m~13.25m, 21.75m(국도29호선)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삼만리, 운교리, 용면 두장리 일원

나. 면 적

(당초) 124,621㎡

(변경) 124,766㎡ 중) 145㎡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2015년 ~ 2018년

○ (변경) 2015년 ~2021년

6.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도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3	25	주간선 도로	140	대로3-1 담양읍 운교리 95-3	10호교통광장 담양읍 운교리 69-5	일반 도로	-	잔고 제332호 ('10.11.5)	
기정	중로	1	10	20	보조 간선 도로	1,568	10호 교통광장 담양읍 삼만리 475-4도	중로2-11 담양읍 학동리 578-4	일반 도로	영산강	잔고 제42호 ('10.11.26)	
기정	중로	1	42	20.75~24	주간선 도로	1,380	10호교통광장 담양읍 삼만리 477-3	중로2-10 담양읍 삼만리 610-11	일반 도로	-	잔고 제2015-296호 ('15.9.25)	
변경	중로	1	42	20.75~24	주간선 도로	1,380	10호교통광장 담양읍 삼만리 477-3	중로2-10 담양읍 삼만리 610-11	일반 도로	-	잔고 제2015-296호 ('15.9.25)	
기정	중로	2	10	15	주간선 도로	14,806	중로1-42 담양읍 삼만리 610-11	북측 담양군계 용면 용치리 산238-2	일반 도로	추월산 관광단지	담고 제42호 ('10.11.26)	
변경	중로	1	42	20.75~24	주간선 도로	14,806	중로1-42 담양읍 삼만리 610-11	북측 담양군계 용면 용치리 산238-2	일반 도로	추월산 관광단지	담고 제42호 ('10.11.26)	
기정	중로	1	43	20.5	집산 도로	906	국도 29호선 담양읍 삼만리 794-2	중로3-9 담양읍 삼만리 308-5	일반 도로	-	잔고 제2015-296호 ('15.9.25)	
변경	중로	1	42	20.75~24	집산 도로	906	국도 29호선 담양읍 삼만리 794-2	중로3-9 담양읍 삼만리 308-5	일반 도로	-	잔고 제2015-296호 ('15.9.25)	
기정	중로	3	9	12	집산 도로	1,092	중로1-43 담양읍 삼만리 306-5	에코단지동축경계 담양읍 삼만리 산50-11	일반 도로	-	담고제42호 ('10.11.26)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42	중로1-42	•선형변경	•공사 완료 된 도로 선형 반영
중로1-43	중로1-43	•선형변경	•공사 완료 된 도로 선형 반영
중로2-10	중로2-10	•선형변경	•공사 완료 된 도로 선형 반영

○ 광장(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	광장	교통광장	담양읍 운교리 69-1	6,579	감) 146	6,433	잔고 제2015-296호 ('15.9.25)	향교 사거리

○ 광장(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	광 장	•선형변경 및 시설면적 축소 6,579㎡ → 6,433㎡	•공사 완료 된 광장 선형 반영 결과 시설면적 축소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 (변경)

가.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집계표(변경)

번호	구분	합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기정	25	7,101	24	7,087	1	14	
	변경	26	7,270	25	7,256	1	14	
도로	기정	7	896	6	882	1	14	
	변경	7	896	6	882	1	14	
구거	기정	16	5,963	16	5,963			
	변경	16	5,963	16	5,963			
하천	기정	2	242	2	242			
	변경	3	411	3	411			

○ 농림축산식품부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군	읍/면	리	지번				성명	주소	
합계					기정	24필지	35,495	7,087		
					변경	25필지	42,717	7,256		
1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51	도	570	38	국(농림축산식품부)	
2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51-1	도	1,825	339	국(농림축산식품부)	
3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52-1	구	544	32	국(농림축산식품부)	
4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52-2	구	2,305	1,745	국(농림축산식품부)	
5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52-4	구	1,050	193	국(농림축산식품부)	
6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52-12	구	1,475	66	국(농림축산식품부)	
7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52-24	구	982	177	국(농림축산식품부)	
8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70-4	도	6	6	국(농림축산식품부)	
9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71	구	2,185	413	국(농림축산식품부)	
10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71-1	구	915	341	국(농림축산식품부)	
11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71-2	구	580	46	국(농림축산식품부)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군	읍/면	리	지번	성명				주소		
12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71-6	구	2,440	404	국(농림축산식품부)		
13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71-7	구	645	112	국(농림축산식품부)		
14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73	천	7,222		국(국토교통부)		
	변경	담양	담양	삼만	873	천	7,222	169	국(농림축산식품부)		
15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84	도	2,744	166	국(농림축산식품부)		
16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84-1	도	1,110	219	국(농림축산식품부)		
17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85	구	7,870	1,741	국(농림축산식품부)		
18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85-2	구	512	227	국(농림축산식품부)		
19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85-3	구	1,185	117	국(농림축산식품부)		
20	기정	담양	담양	삼만	928-2	도	129	114	국(농림축산식품부)		
21	기정	담양	담양	삼만	999-8	구	96	48	국(농림축산식품부)		
22	기정	담양	담양	운교	70-5	구	221	82	국(농림축산식품부)		
23	기정	담양	용	두장	1055-23	천	463	105	국(농림축산식품부)		
24	기정	담양	용	두장	1058-1	구	4,898	219	국(농림축산식품부)		
25	기정	담양	용	두장	1058-21	천	640	137	국(농림축산식품부)		

○ 기획재정부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군	읍	리	지번	성명				주소		
합 계						1필지	33	14			
1	담양	담양	삼만	625-4	도		33	14	기획재정부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성명 (변경)

○ 토지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세목조서

번호	구분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군	읍/면	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면 적 계						124,621	124,766				
1	기정	담양	담양	삼만	298-9	도	3	3	3	3	담양군		
2	기정	담양	담양	삼만	298-12	도	82	82	5	5	담양군		
3	기정	담양	담양	삼만	298-14	답	38	38	35	35	국(국토교통부)		
4	기정	담양	담양	삼만	298-15	구	122		122		영산강농지개발 조합	광주시 서구 쌍촌	

번호	구분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군	읍/면	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변경	담양	담양	삼만	298-15	구		122		122	국(국토교통부)		
-	제척	담양	담양	삼만	301-2	구	374		21		김성규	서울시 마포구	
5	기정	담양	담양	삼만	301-3	도	26	26	26	26	담양군		
6	기정	담양	담양	삼만	301-6	도	33	33	33	33	담양군		
7	기정	담양	담양	삼만	301-7	도	181	181	168	168	담양군		
8	기정	담양	담양	삼만	301-8	도	79		79		영산강농지개량 조합	광주시 서구쌍촌동	
	변경	담양	담양	삼만	301-8	도		79		79	국(국토교통부)		
9	기정	담양	담양	삼만	301-9	도	730	730	730	730	담양군		
10	기정	담양	담양	삼만	301-10	도	121	121	121	121	담양군		
11	기정	담양	담양	삼만	301-11	도	13	13	13	13	담양군		
12	기정	담양	담양	삼만	301-12	도	714	714	714	714	담양군		
13	기정	담양	담양	삼만	301-13	답	79	79	79	79	국(국토교통부)		
14	기정	담양	담양	삼만	301-14	답	1,573	1,573	1,573	1,573	국(국토교통부)		
15	기정	담양	담양	삼만	302-2	도	231	231	157	157	담양군		
16	기정	담양	담양	삼만	302-3	도	46	46	46	46	담양군		
17	기정	담양	담양	삼만	302-4	도	150	150	150	150	담양군		
18	기정	담양	담양	삼만	302-5	도	565	565	565	565	담양군		
19	기정	담양	담양	삼만	302-6	도	352	352	352	352	담양군		
20	기정	담양	담양	삼만	303-1	도	80	80	80	80	담양군		
21	기정	담양	담양	삼만	303-2	도	319	319	319	319	담양군		
-	제척	담양	담양	삼만	303-3	답	718		1		(주)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12층	
22	기정	담양	담양	삼만	303-4	답	1,695	1,695	1,695	1,695	국(국토교통부)		
23	기정	담양	담양	삼만	304-3	도	415	415	400	400	담양군		
24	기정	담양	담양	삼만	304-4	도	82	82	10	10	담양군		
25	기정	담양	담양	삼만	304-5	도	319	319	319	319	담양군		
26	기정	담양	담양	삼만	305-1	도	316	316	313	313	담양군		
27	기정	담양	담양	삼만	305-2	도	204	204	204	204	담양군		
28	기정	담양	담양	삼만	306-2	도	36	36	26	26	담양군		
29	기정	담양	담양	삼만	306-3	도	189	189	189	189	담양군		
30	기정	담양	담양	삼만	307-3	도	71	71	36	36	담양군		

번호	구분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군	읍/면	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31	기정	담양	담양	삼만	307-4	답	17	17	17	17	국(국토교통부)		
-	제척	담양	담양	삼만	308-5	도	318		22		담양군		
32	기정	담양	담양	삼만	308-7	도	188	188	188	188	담양군		
-	제척	담양	담양	삼만	308-8	도	199		5		담양군		
33	기정	담양	담양	삼만	324-5	도	73	73	73	73	담양군		
34	기정	담양	담양	삼만	324-7	구	833	833	24	24	담양군		
35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34	도	575	575	61	61	국(국토교통부)		
36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35-1	도	582	582	202	202	국(국토교통부)		
37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74-2	도	3	3	3	3	국(국토교통부)		
38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74-3	도	222	222	222	222	국(국토교통부)		
39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74-6	도	251	251	251	251	국(국토교통부)		
40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74-7	답	247		225		국(국토교통부)		
	변경	담양	담양	삼만	474-7	답		247		247	국(국토교통부)		
41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75-2	도	33		33		강봉엽	담양읍 객사리	
	변경	담양	담양	삼만	475-2	도		33		33	국(국토교통부)		
42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75-3	도	223	223	223	223	국(국토교통부)		
43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75-4	도	3,251	3,251	1,977	1,977	국(국토교통부)		
44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75-8	창	147		147		김철동	객사리 278-3	
	변경	담양	담양	삼만	475-8	창		147		147	국(국토교통부)		
45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75-9	전	15	15	15	15	국(국토교통부)		
46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76-2	도	245	245	183	183	국(국토교통부)		
47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76-3	도	416	416	230	230	국(국토교통부)		
48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76-5	도	162	162	162	162	국(국토교통부)		
49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77-2	도	317	317	317	317	국(국토교통부)		
50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77-3	도	116	116	116	116	국(국토교통부)		
51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77-4	도	97	97	97	97	국(국토교통부)		
52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77-5	도	214	214	214	214	국(국토교통부)		
53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77-11	답	228	228	228	228	국(국토교통부)		
54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77-12	잡	138	138	138	138	국(국토교통부)		
55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77-13	답	16	16	16	16	국(국토교통부)		
56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77-14	대	79	79	79	79	국(국토교통부)		
-	제척	담양	담양	삼만	478	전	1,022		1		김옥동	향교리 180	

번호	구분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군	읍/면	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57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78-1	전	33		16		국(국토교통부)		
	변경	담양	담양	삼만	478-1	전		33		33	국(국토교통부)		
58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82-2	도	301	301	301	301	국(국토교통부)		
59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82-3	답	149	149	149	149	국(국토교통부)		
60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83-2	도	136	136	136	136	국(국토교통부)		
61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83-6	도	18	18	18	18	국(국토교통부)		
62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83-7	도	195		195		국윤경	향교리	
	변경	담양	담양	삼만	483-7	도		195		195	국(국토교통부)		
63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83-8	전	111	111	111	111	국(국토교통부)		
64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83-9	도	71	71	71	71	국(국토교통부)		
65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83-15	전	22	22	22	22	국(국토교통부)		
66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83-21	잡	30	30	30	30	국(국토교통부)		
67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83-22	임	32	32	32	32	국(국토교통부)		
68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83-23	도	34	34	34	34	국(국토교통부)		
69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83-24	임	62	62	62	62	국(국토교통부)		
70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83-25	임	110	110	110	110	국(국토교통부)		
71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91-3	도	603	603	603	603	담양군		
72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91-5	도	490	490	490	490	국(국토교통부)		
73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91-6	도	33	33	33	33	국(국토교통부)		
74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91-8	답	239	239	239	239	국(국토교통부)		
75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91-9	잡	274	274	274	274	국(국토교통부)		
76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91-10	대	283		283		나은영	담양군 담양읍 추월산로 26	
	변경	담양	담양	삼만	491-10	대		283		283	국(국토교통부)		
77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91-11	도	77	77	77	77	국(국토교통부)		
78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98-2	도	132	132	132	132	국(국토교통부)		
79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98-3	도	179	179	179	179	국(국토교통부)		
80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98-4	답	84	84	84	84	국(국토교통부)		
81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99-2	도	360		332		강봉업	담양읍 객사리	
	변경	담양	담양	삼만	499-2	도		360		332	국(국토교통부)		
82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99-3	답	13		13		강대만	객사리 126	
	변경	담양	담양	삼만	499-3	답		13		13	국(국토교통부)		

번호	구분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군	읍/면	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83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99-4	도	582	582	353	353	국(국토교통부)		
84	기정	담양	담양	삼만	499-5	답	57	57	57	57	국(국토교통부)		
85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01-2	도	777	777	4	4	국(국토교통부)		
86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01-3	도	142	142	60	60	국(국토교통부)		
87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02-2	도	109		46		류희유	대덕면 장산리	
	변경	담양	담양	삼만	502-2	도		109		46	국(국토교통부)		
88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02-3	구	7		7		유대수 외5인	대덕면 장산리 213	
	변경	담양	담양	삼만	502-3	구		7		7	국(국토교통부)		
89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03-2	도	17		17		김기술 외2인	담양군 금성면	
	변경	담양	담양	삼만	503-2	도		17		17	국(국토교통부)		
90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03-3	도	73	73	73	73	국(국토교통부)		
91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03-4	답	1,351	1,351	1,336	1,336	국(국토교통부)		
92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04-1	답	800		800		허판옥	담양읍 객사리 101	
	변경	담양	담양	삼만	504-1	답		800		800	국(국토교통부)		
93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05-1	답	266	266	266	266	국(국토교통부)		
94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06-2	답	1,643	1,643	1,643	1,643	국(국토교통부)		
95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07-1	답	5	5	5	5	국(국토교통부)		
96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07-2	답	5	5	5	5	국(국토교통부)		
97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08-2	답	2,959	2,959	2,959	2,959	국(국토교통부)		
98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08-3	도	410	410	307	307	국(국토교통부)		
99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09-3	전	58	58	58	58	국(국토교통부)		
100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09-4	도	243	243	243	243	국(국토교통부)		
101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10-3	도	126	126	102	102	국(국토교통부)		
102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12-1	답	1,900	1,900	1,900	1,900	국(국토교통부)		
103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12-3	도	340	340	304	304	국(국토교통부)		
104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12-4	도	28	28	28	28	국(국토교통부)		
105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12-5	답	924	924	924	924	국(국토교통부)		
106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15-2	답	986	986	986	986	국(국토교통부)		
107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16	답	833	833	833	833	국(국토교통부)		
108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17	답	1,070	1,070	1,070	1,070	국(국토교통부)		
109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17-1	도	34	34	34	34	국(국토교통부)		
110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18-2	도	132	132	79	79	국(국토교통부)		

번호	구분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군	읍/면	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111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37-2	답	225		225		이정기	담양읍 향교리 340	
	변경	담양	담양	삼만	537-2	답		225		225	국(국토교통부)		
112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37-3	도	443	443	224	224	국(국토교통부)		
113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38-3	답	578		578		국(국토교통부)		
	변경	담양	담양	삼만	538-3	도		578		578	국(국토교통부)		
114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38-4	도	80	80	18	18	국(국토교통부)		
115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39-1	도	83	83	83	83	국(국토교통부)		
116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40-2	도	26		18		장길선	월산면 운교리	
	변경	담양	담양	삼만	540-2	도		26		18	국(국토교통부)		
117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69-3	구	46		30		김해주	광주시 황금동 90	
	변경	담양	담양	삼만	569-3	구		46		30	국(국토교통부)		
118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71-2	답	547	547	488	488	국(국토교통부)		
119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71-3	답	582	582	582	582	국(국토교통부)		
120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71-6	천	185	185	1	1	국(국토교통부)		
121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71-7	제	455	455	171	171	국(국토교통부)		
122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71-8	답	386	386	208	208	국(국토교통부)		
123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71-9	답	60	60	60	60	국(국토교통부)		
124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72-9	답	1,016	1,016	1,016	1,016	국(국토교통부)		
125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78-1	도	621	621	420	420	담양군		
126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79-1	전	384	384	384	384	국(국토교통부)		
127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79-4	구	136	136	136	136	담양군		
128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79-5	도	179	179	84	84	담양군		
129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79-6	도	1,635	1,635	1,214	1,214	담양군		
130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80-1	도	1,142	1,142	1,048	1,048	담양군		
131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80-2	답	1,703	1,703	1,703	1,703	국(국토교통부)		
132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81-1	도	545	545	505	505	담양군		
133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81-2	구	26		26		장균식	담양읍 남산리 150	
	변경	담양	담양	삼만	581-2	구		26		26	국(국토교통부)		
134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82-2	구	10	10	2	2	담양군		
135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82-3	구	423	423	262	262	담양군		
136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82-4	구	122	122	69	69	담양군		
137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83-2	구	149	149	149	149	국(국토교통부)		

번호	구분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군	읍/면	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138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83-3	도	489	489	489	489	담양군		
139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84-2	도	102	102	97	97	담양군		
140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84-3	답	168	168	168	168	국(국토교통부)		
141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90-2	도	397	397	351	351	담양군		
142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90-3	도	30	30	30	30	담양군		
143	기정	담양	담양	삼만	590-4	답	362	362	362	362	국(국토교통부)		
144	기정	담양	담양	삼만	609-2	도	136	136	84	84	담양군		
145	기정	담양	담양	삼만	610-9	답	521	521	521	521	국(국토교통부)		
146	기정	담양	담양	삼만	610-10	도	37	37	37	37	국(국토교통부)		
147	기정	담양	담양	삼만	610-11	도	1,053	1,053	1,053	1,053	국(국토교통부)		
148	기정	담양	담양	삼만	610-12	답	441	441	417	417	국(국토교통부)		
149	기정	담양	담양	삼만	610-17	답	989	989	989	989	국(국토교통부)		
150	기정	담양	담양	삼만	611-2	구	20		20		박삼금	담양읍 삼만리 271	
	변경	담양	담양	삼만	611-2	구		20		20	국(국토교통부)		
151	기정	담양	담양	삼만	614-13	답	1,384	1,384	1,384	1,384	국(국토교통부)		
152	기정	담양	담양	삼만	614-15	도	362	362	362	362	국(국토교통부)		
153	기정	담양	담양	삼만	614-16	도	692	692	612	612	국(국토교통부)		
154	기정	담양	담양	삼만	614-17	답	309	309	263	263	국(국토교통부)		
155	기정	담양	담양	삼만	614-32	답	2,101	2,101	2,101	2,101	국(국토교통부)		
156	기정	담양	담양	삼만	625-2	도	413	413	121	121	국(국토교통부)		
157	기정	담양	담양	삼만	625-4	도	33	33	14	14	국(기획재정부)		
158	기정	담양	담양	삼만	626-2	도	301		287		노영춘	용면 두장리	
	변경	담양	담양	삼만	626-2	도		301		301	국(국토교통부)		
159	기정	담양	담양	삼만	626-4	도	229	229	229	229	국(국토교통부)		
160	기정	담양	담양	삼만	626-5	답	297	297	297	297	국(국토교통부)		
161	기정	담양	담양	삼만	627-2	도	26		13		강봉업	담양읍 객사리 126	
	변경	담양	담양	삼만	627-2	도		26		13	국(국토교통부)		
-	제척	담양	담양	삼만	627-10	임	7,044		1		(주)시아이에프	광주 북구	
162	기정	담양	담양	삼만	627-11	도	1,055	1,055	501	501	국(국토교통부)		
163	기정	담양	담양	삼만	627-12	도	13	13	13	13	국(국토교통부)		
164	기정	담양	담양	삼만	627-44	임	59		59		(주)발해모아	광주 광산구 용동 668-9	
	변경	담양	담양	삼만	627-44	임		59		59	국(국토교통부)		

번호	구분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군	읍/면	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165	기정	담양	담양	삼만	627-45	임	95	95	95	95	국(국토교통부)		
166	기정	담양	담양	삼만	627-46	구	36		36		영산강농지개량 조합	광주시 서구 쌍촌동 994-1	
	변경	담양	담양	삼만	627-46	구		36		36	국(국토교통부)		
167	기정	담양	담양	삼만	627-47	도	25	25	25	25	국(국토교통부)		
168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08-1	도	383	383	218	218	국(국토교통부)		
169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08-2	도	493	493	493	493	국(국토교통부)		
170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08-4	구	53		35		영산강농지개량 조합	광주시 서구 쌍촌동 994-1	
	변경	담양	담양	삼만	708-4	구		53		35	국(국토교통부)		
171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08-5	답	7	7	7	7	국(국토교통부)		
172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09-2	도	50	50	20	20	국(국토교통부)		
173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09-4	도	516	516	516	516	국(국토교통부)		
174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09-5	도	23	23	23	23	국(국토교통부)		
175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10-2	도	516	516	331	331	국(국토교통부)		
176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10-4	도	1,865	1,865	24	24	국(국토교통부)		
177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73-21	답	514	514	514	514	국(국토교통부)		
178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73-22	답	87	87	87	87	국(국토교통부)		
179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73-23	답	8		8		김철승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486	
	변경	담양	담양	삼만	773-23	답		8		8	국(국토교통부)		
180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74	전	2,051		2,051		지정임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180-10	
	변경	담양	담양	삼만	774	전		2,051		2,051	국(국토교통부)		
181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74-13	도	227	227	205	205	국(국토교통부)		
182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74-14	도	28	28	28	28	국(국토교통부)		
183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74-15	도	23	23	23	23	국(국토교통부)		
184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74-16	도	4	4	4	4	국(국토교통부)		
185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74-17	도	32	32	32	32	국(국토교통부)		
186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74-18	도	32	32	32	32	국(국토교통부)		
187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74-19	도	9	9	9	9	국(국토교통부)		
188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74-20	도	42	42	42	42	국(국토교통부)		
189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74-21	도	96	96	96	96	국(국토교통부)		

번호	구분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군	읍/면	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190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74-22	도	56	56	56	56	국(국토교통부)		
191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74-23	도	93	93	93	93	국(국토교통부)		
192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74-24	답	33	33	30	30	담양군		
193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74-25	답	32	32	14	14	담양군		
194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74-26	답	987	987	987	987	국(국토교통부)		
195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74-27	답	368	368	368	368	국(국토교통부)		
196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74-28	답	955	955	955	955	국(국토교통부)		
197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74-29	답	806	806	806	806	국(국토교통부)		
198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74-30	답	209	209	209	209	국(국토교통부)		
199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74-31	답	759	759	759	759	국(국토교통부)		
200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74-32	답	513	513	513	513	국(국토교통부)		
201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74-33	답	160	160	160	160	국(국토교통부)		
202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74-34	답	295	295	295	295	국(국토교통부)		
203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74-35	답	27	27	27	27	국(국토교통부)		
204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74-36	답	16	16	16	16	국(국토교통부)		
205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74-37	답	84	84	84	84	국(국토교통부)		
206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74-38	답	15		15		천안전씨대재 학파		
	변경	담양	담양	삼만	774-38	답		15		15	국(국토교통부)		
207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82	답	79		79		국영현	담양읍 담주리	
	변경	담양	담양	삼만	782	답		79		79	국(국토교통부)		
208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83-1	도	119		50		국영현	담양읍 담주리 105	
	변경	담양	담양	삼만	783-1	도		119		50	국(국토교통부)		
209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83-3	도	274		124		국영현	담양읍 담주리 105	
	변경	담양	담양	삼만	783-3	도		274		124	국(국토교통부)		
210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90-5	답	281	281	240	240	국(국토교통부)		
211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90-6	답	543	543	540	540	국(국토교통부)		
212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90-7	답	19	19	19	19	국(국토교통부)		
213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90-12	구	89	89	39	39	담양군		
214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90-16	도	55	55	55	55	담양군		
215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90-17	도	1,156	1,156	1,093	1,093	담양군		
216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90-18	도	287	287	198	198	담양군		

번호	구분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군	읍/면	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217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90-19	도	1,049	1,049	596	596	담양군		
218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90-20	도	670	374	374	374	담양군		
219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90-23	답	5		5		전구석	수북면 대방리	
	변경	담양	담양	삼만	790-23	답		5		5	국(국토교통부)		
220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90-24	답	1,124	1,124	1,124	1,124	국(국토교통부)		
221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90-25	답	1,481	1,481	1,481	1,481	국(국토교통부)		
222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92-8	도	2,365	2,365	1,365	1,365	담양군		
223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92-9	도	607	607	190	190	담양군		
224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92-10	도	931	931	218	218	담양군		
225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92-11	도	1,143	1,143	415	415	담양군		
226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92-12	도	706	706	527	527	담양군		
227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92-17	도	58	58	38	38	국(국토교통부)		
228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92-18	도	63	63	63	63	국(국토교통부)		
229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92-19	도	20	20	20	20	국(국토교통부)		
230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92-20	도	32	32	32	32	국(국토교통부)		
231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92-21	도	48	48	48	48	국(국토교통부)		
232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92-22	도	4	4	4	4	국(국토교통부)		
233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92-38	답	80	80	47	47	담양군		
234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92-39	도	251	251	251	251	담양군		
235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92-40	도	362	362	344	344	담양군		
236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92-41	도	781	781	653	653	담양군		
237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92-43	도	358	358	257	257	담양군		
238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92-45	도	1,366	1,366	838	838	담양군		
239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92-46	도	60	60	32	32	담양군		
240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92-47	답	792	792	792	792	국(국토교통부)		
241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92-48	답	264	264	264	264	국(국토교통부)		
242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92-49	답	379	379	379	379	국(국토교통부)		
243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92-50	답	153	153	153	153	국(국토교통부)		
244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92-51	답	650	650	650	650	국(국토교통부)		
245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92-52	답	153	153	153	153	국(국토교통부)		
246	기정	담양	담양	삼만	795-1	도	162		27		박흥덕	담양읍 담주리 105	
	변경	담양	담양	삼만	795-1	도		162		27	국(국토교통부)		

번호	구분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군	읍/면	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247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03-9	도	7	7	7	7	국(국토교통부)		
248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03-10	구	375	375	99	99	담양군		
249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03-11	답	214	214	214	214	국(국토교통부)		
250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03-12	답	99	99	99	99	국(국토교통부)		
251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04-7	도	48	48	48	48	국(국토교통부)		
252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04-8	도	52	52	52	52	국(국토교통부)		
253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04-9	도	28	28	16	16	국(국토교통부)		
254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04-12	답	433	433	433	433	국(국토교통부)		
255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04-13	잡	408	408	408	408	국(국토교통부)		
256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04-14	답	41	41	41	41	국(국토교통부)		
257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04-15	답	2	2	2	2	국(국토교통부)		
258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06-7	도	176	176	176	176	국(국토교통부)		
259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06-8	도	196	196	196	196	국(국토교통부)		
260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06-9	도	242	242	242	242	국(국토교통부)		
261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06-10	도	41	41	41	41	국(국토교통부)		
262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06-11	도	58	58	58	58	국(국토교통부)		
263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06-12	도	102	102	102	102	국(국토교통부)		
264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06-13	도	92	92	92	92	국(국토교통부)		
265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06-14	답	372	372	372	372	국(국토교통부)		
266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06-15	답	424	424	424	424	국(국토교통부)		
267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06-16	답	768	768	768	768	국(국토교통부)		
268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06-17	답	1,316	1,316	1,316	1,316	국(국토교통부)		
269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06-18	답	1,128	1,128	1,128	1,128	국(국토교통부)		
270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06-19	답	148		148		향교리2구 마을회관	담양읍 향교리	
	변경	담양	담양	삼만	806-19	답		148		148	국(국토교통부)		
271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06-20	답	87	87	87	87	국(국토교통부)		
272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07-7	도	301	301	301	301	국(국토교통부)		
273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07-8	답	2,863	2,863	2,863	2,863	국(국토교통부)		
274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08-5	답	250		250		서진인	객사리 188-2	
	변경	담양	담양	삼만	808-5	답		250		250	국(국토교통부)		
275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08-7	답	2,549	2,549	2,549	2,549	국(국토교통부)		

번호	구분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군	읍/면	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276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08-8	답	68		68		서진인	객사리 188-2	
	변경	담양	담양	삼만	808-8	답		68		68	국(국토교통부)		
277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51	도	570	570	38	38	국 (농림축산식품부)		
278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51-1	도	1,825	1,825	339	339	국 (농림축산식품부)		
279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52-1	구	544	544	32	32	국 (농림축산식품부)		
280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52-2	구	2,305	2,305	1,745	1,745	국 (농림축산식품부)		
281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52-4	구	1,050	1,050	193	193	국 (농림축산식품부)		
282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52-12	구	1,475	1,475	66	66	국 (농림축산식품부)		
283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52-24	구	982	982	177	177	국 (농림축산식품부)		
284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70-4	도	6	6	6	6	국 (농림축산식품부)		
285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71	구	2,185	2,185	413	413	국 (농림축산식품부)		
286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71-1	구	915	915	341	341	국 (농림축산식품부)		
287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71-2	구	580	580	46	46	국 (농림축산식품부)		
288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71-6	구	2,440	2,440	404	404	국 (농림축산식품부)		
289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71-7	구	645	645	112	112	국 (농림축산식품부)		
290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73	천	7,222			176	국(국토교통부)		
	변경	담양	담양	삼만	873	천		7,222		169	국 (농림축산식품부)		
291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84	도	2,744	2,744	166	166	국 (농림축산식품부)		
292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84-1	도	1,110	1,110	219	219	국 (농림축산식품부)		
293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85	구	7,870	7,870	1,741	1,741	국 (농림축산식품부)		
294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85-2	구	512	512	227	227	국 (농림축산식품부)		

번호	구분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군	읍/면	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295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85-3	구	1,185	1,185	117	117	국 (농림축산식품부)		
296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96-1	도	2	2	2	2	국(국토교통부)		
297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97-1	도	26	26	26	26	국(국토교통부)		
298	기정	담양	담양	삼만	899-2	도	334		735		국(국토교통부)		
	변경	담양	담양	삼만	899-2	도		334		318	국(국토교통부)		
299	기정	담양	담양	삼만	900-2	도	23		23		미말레	담양읍 천변리 24	
	변경	담양	담양	삼만	900-2	도		23		23	국(국토교통부)		
300	기정	담양	담양	삼만	900-3	도	13		13		전대현	담양읍 삼만리 649	
	변경	담양	담양	삼만	900-3	도		13		13	국(국토교통부)		
301	기정	담양	담양	삼만	901-2	도	502	502	502	502	국(국토교통부)		
302	기정	담양	담양	삼만	901-3	답	86	86	86	86	국(국토교통부)		
303	기정	담양	담양	삼만	901-4	도	126	126	126	126	국(국토교통부)		
304	기정	담양	담양	삼만	901-5	답	417	417	89	89	담양군		
305	기정	담양	담양	삼만	901-6	도	3	3	3	3	국(국토교통부)		
306	기정	담양	담양	삼만	903-2	도	331		331		정용준	담양읍 자침리	
	변경	담양	담양	삼만	903-2	도		331		331	국(국토교통부)		
307	기정	담양	담양	삼만	915-2	도	354		354		강봉엽	담양읍 객사리	
	변경	담양	담양	삼만	915-2	도		354		354	국(국토교통부)		
308	기정	담양	담양	삼만	916-2	도	311	311	311	311	국(국토교통부)		
309	기정	담양	담양	삼만	919-1	도	142	142	142	142	국(국토교통부)		
310	기정	담양	담양	삼만	927-1	답	38	38	38	38	국(국토교통부)		
311	기정	담양	담양	삼만	928-2	도	129	129	114	114	국 (농림축산식품부)		
312	기정	담양	담양	삼만	928-14	도	15	15	15	15	국(국토교통부)		
313	기정	담양	담양	삼만	928-20	답	266	266	266	266	국(국토교통부)		
314	기정	담양	담양	삼만	999-8	구	96	96	48	48	국 (농림축산식품부)		
315	기정	담양	담양	삼만	999-9	구	972	972	151	151	국(국토교통부)		
316	기정	담양	담양	삼만	999-11	구	11	11	11	11	국(국토교통부)		
317	기정	담양	담양	삼만	999-15	구	11,519	11,519	1,677	1,677	국(국토교통부)		
318	기정	담양	담양	삼만	1002	도	2,549	2,549	358	358	국(국토교통부)		
319	기정	담양	담양	삼만	1009-1	도	776	776	14	14	국(국토교통부)		

번호	구분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군	읍/면	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320	기정	담양	담양	삼만	1010-5	천	1,990	1,990	480	480	국(국토교통부)		
321	기정	담양	담양	삼만	1010-10	답	791	791	63	63	국(국토교통부)		
322	기정	담양	담양	삼만	1010-15	도	69	69	44	44	국(국토교통부)		
323	기정	담양	담양	삼만	1010-35	제	434	434	81	81	국(국토교통부)		
324	기정	담양	담양	삼만	1010-41	제	14	14	14	14	국(국토교통부)		
325	기정	담양	담양	삼만	1012-6	도	150	150	150	150	국(국토교통부)		
326	기정	담양	담양	삼만	1012-7	도	312	312	150	150	국(국토교통부)		
327	기정	담양	담양	삼만	1012-8	도	66	66	66	66	국(국토교통부)		
328	기정	담양	담양	삼만	1012-9	도	2,121	2,121	224	224	국(국토교통부)		
329	기정	담양	담양	삼만	1015-2	도	4,237	4,237	2,082	2,082	국(국토교통부)		
330	기정	담양	담양	삼만	1016	도	592	592	36	36	국(국토교통부)		
331	기정	담양	담양	삼만	1017-1	도	224	224	77	77	국(국토교통부)		
332	기정	담양	담양	삼만	1041	구	1,855	1,855	46	46	담양군		
333	기정	담양	담양	삼만	산152-2	도	2,380	2,380	2,380	2,380	국(국토교통부)		
334	기정	담양	담양	삼만	산152-7	도	103	103	77	77	국(국토교통부)		
335	기정	담양	담양	삼만	산152-12	임	106		106		김미자	광주 남구 봉선동 1040-22	
	변경	담양	담양	삼만	산152-12	임		106		106	국(국토교통부)		
336	기정	담양	담양	삼만	산152-13	임	116		116		윤수복	광주 북구 두암동 그린파크 102동1104호	
	변경	담양	담양	삼만	산152-13	임		116		116	국(국토교통부)		
337	기정	담양	담양	삼만	산152-14	임	79		79		김미자	울산시 남구	
	변경	담양	담양	삼만	산152-14	임		79		79	국(국토교통부)		
338	기정	담양	담양	삼만	산153-2	도	595	595	595	595	국(국토교통부)		
339	기정	담양	담양	삼만	산153-4	임	516	516	516	516	국(국토교통부)		
340	기정	담양	담양	운교	66-1	도	56	56	19	19	국(국토교통부)		
341	기정	담양	담양	운교	67-1	도	924	924	705	705	국(국토교통부)		
342	기정	담양	담양	운교	68-1	도	76	76	76	76	국(국토교통부)		
343	기정	담양	담양	운교	68-3	도	121	121	121	121	국(국토교통부)		
344	기정	담양	담양	운교	68-4	도	333	333	333	333	국(국토교통부)		
345	기정	담양	담양	운교	68-12	전	230	230	230	230	국(국토교통부)		
346	기정	담양	담양	운교	68-13	잡	32	32	32	32	국(국토교통부)		
347	기정	담양	담양	운교	69-1	도	182	182	182	182	국(국토교통부)		

번호	구분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군	읍/면	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348	기정	담양	담양	운교	69-3	도	3		3		강봉업	담양읍 객사리	
	변경	담양	담양	운교	69-3	도		3		3	국(국토교통부)		
349	기정	담양	담양	운교	69-4	도	586	586	586	586	국(국토교통부)		
350	기정	담양	담양	운교	69-5	도	1,677	1,677	1,655	1,655	국(국토교통부)		
351	기정	담양	담양	운교	69-6	도	347	347	305	305	국(국토교통부)		
352	기정	담양	담양	운교	69-7	답	127	117	127	117	국(국토교통부)		
353	변경	담양	담양	운교	69-8	답		10		10	국(국토교통부)		
354	기정	담양	담양	운교	70-2	도	393	393	8	8	국(국토교통부)		
355	기정	담양	담양	운교	70-3	답	233	233	63	63	국(국토교통부)		
356	기정	담양	담양	운교	70-4	도	50	50	44	44	국(국토교통부)		
357	기정	담양	담양	운교	70-5	구	221	221	82	82	국 (농림축산식품부)		
358	기정	담양	담양	운교	70-6	도	425	425	5	5	국(국토교통부)		
359	기정	담양	담양	운교	71-1	도	1,814	1,814	446	446	국(국토교통부)		
360	기정	담양	담양	운교	산98-1	도	14	14	14	14	국(국토교통부)		
361	기정	담양	담양	운교	산98-27	임	32	32	32	32	국(국토교통부)		
362	기정	담양	담양	운교	산99-1	도	666	666	459	459	국(국토교통부)		
363	기정	담양	담양	운교	산99-4	임	21	21	21	21	국(국토교통부)		
364	기정	담양	용	두장	763-2	도	139	139	73	73	국(국토교통부)		
365	기정	담양	용	두장	763-3	도	45	45	29	29	국(국토교통부)		
366	기정	담양	용	두장	763-4	도	255	255	97	97	국(국토교통부)		
367	기정	담양	용	두장	765-2	도	119		113		조쌍개	용면 두장리 862	
	변경	담양	용	두장	765-2	도		119		113	국(국토교통부)		
368	기정	담양	용	두장	765-3	도	30		30		조쌍개	용면 두장리 862	
	변경	담양	용	두장	765-3	도		30		30	국(국토교통부)		
369	기정	담양	용	두장	765-4	도	238	238	194	194	국(국토교통부)		
370	기정	담양	용	두장	766-2	도	175		158		박순삼	용면 두장리 512	
	변경	담양	용	두장	766-2	도		175		158	국(국토교통부)		
371	기정	담양	용	두장	766-3	도	13		13		양덕례	용면 두장리 911	
	변경	담양	용	두장	766-3	도		13		13	국(국토교통부)		
372	기정	담양	용	두장	766-4	도	513	513	500	500	국(국토교통부)		
373	기정	담양	용	두장	767-4	도	44	44	8	8	국(국토교통부)		

번호	구분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군	읍/면	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374	기정	담양	용	두장	780-6	도	391	391	16	16	국(국토교통부)		
375	기정	담양	용	두장	780-9	천	289	289	233	233	국(국토교통부)		
376	기정	담양	용	두장	788-1	도	337		122		조문룡		
	변경	담양	용	두장	788-1	도		337		122	국(국토교통부)		
-	제척	담양	용	두장	789-1	도	13		1		김광석		
377	기정	담양	용	두장	1045-39	제	116	116	54	54	국(국토교통부)		
378	기정	담양	용	두장	1045-40	천	72	72	5	5	국(국토교통부)		
379	기정	담양	용	두장	1045-41	제	146	146	136	136	국(국토교통부)		
380	기정	담양	용	두장	1045-42	천	105	105	3	3	국(국토교통부)		
381	기정	담양	용	두장	1045-43	제	299	299	299	299	국(국토교통부)		
382	기정	담양	용	두장	1045-44	천	127	127	97	97	국(국토교통부)		
383	기정	담양	용	두장	1045-45	답	57	57	57	57	국(국토교통부)		
384	기정	담양	용	두장	1045-46	답	334	334	334	334	국(국토교통부)		
385	기정	담양	용	두장	1045-47	답	214	214	214	214	국(국토교통부)		
386	기정	담양	용	두장	1045-48	답	388	388	388	388	국(국토교통부)		
387	기정	담양	용	두장	1045-49	답	334	334	334	334	국(국토교통부)		
388	기정	담양	용	두장	1045-50	답	706	706	706	706	국(국토교통부)		
389	기정	담양	용	두장	1045-52	답	741	741	741	741	국(국토교통부)		
390	기정	담양	용	두장	1045-54	답	372	372	372	372	국(국토교통부)		
391	기정	담양	용	두장	1045-56	답	1,170	1,170	1,170	1,170	국(국토교통부)		
392	기정	담양	용	두장	1045-58	답	691	691	691	691	국(국토교통부)		
393	기정	담양	용	두장	1045-60	답	500	500	500	500	국(국토교통부)		
394	기정	담양	용	두장	1045-62	답	428		428		노길주	서울 구로구 구로동 512-22	
	변경	담양	용	두장	1045-62	답		428		428	국(국토교통부)		
395	기정	담양	용	두장	1045-63	답	284	284	284	284	국(국토교통부)		
396	기정	담양	용	두장	1055-23	천	463	463	105	105	국 (농림축산식품부)		
397	기정	담양	용	두장	1058-1	구	5,003	4,913	219	219	국 (농림축산식품부)		
398	기정	담양	용	두장	1058-21	천	640	640	137	137	국(농림축산식품 부)		
399	기정	담양	용	두장	1146-56	천	22,724	22,724	795	795	국(국토교통부)		

번호	구분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군	읍/면	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400	기정	담양	용	두장	1146-77	제	165	165	17	17	국(국토교통부)		
401	기정	담양	용	두장	1149-3	도	745	745	146	146	국(국토교통부)		
402	기정	담양	용	두장	1150-6	구	16	16	4	4	국(국토교통부)		
403	변경	담양	담양	삼만	산153-5	임		197		197	국(국토교통부)		
404	변경	담양	용	두장	1045-64	답		45		45	국(국토교통부)		
405	변경	담양	용	두장	1045-65	답		60		60	국(국토교통부)		
406	변경	담양	용	두장	1045-66	답		29		29	국(국토교통부)		
407	변경	담양	용	두장	1045-67	답		39		39	국(국토교통부)		
408	변경	담양	용	두장	1045-68	답		58		58	국(국토교통부)		
409	변경	담양	용	두장	1045-69	답		41		41	국(국토교통부)		
410	변경	담양	용	두장	1045-70	답		99		99	국(국토교통부)		

9.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따라 관계도서를 전라남도 지역계획과(061-286-7362)와 담양군 지역경제과(061-380-3051)에 관계도면 등을 비치(계재생략)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전라남도 고시 제2021-227호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사업계획 변경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담양군 지적재조사지구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 1. 대 상 사 업 : 2020년 무정동강지구 사업계획 변경 고시
- 2. 사업시행자 : 담양군수
- 3. 사업지구 변경내용

사군	지구명	위치	변경내용				비고 (증감률%)
			구분	당 초	변 경	증감	
담양군	무정동강 지 구	무정면 동강리 134-1번지 일원	필지수(필)	416	415	감 1	감 0.2%
			면 적(m ²)	166,423.6	164,983.6	감 1,440	감 0.9%

- 4. 변경사유 : 지적재조사사업이 불필요한 경지정리 완료 필지 제외
- 5. 토지조서 : 도보게재 생략 (해당 시·군청에 비치)
- 6. 지정도면 : 도보게재 생략 (해당 시·군청에 비치)
- 7. 열람부서 : 담양군청 열린민원과 지적재조사팀 ☎ 061-380-3269
- 8.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전라남도 고시 제2021-229호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광양시, 영암군 소재)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1. 고 시 명 :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광양시, 영암군 소재)
2. 고시내용
 - 가. 대상문화재 : 11개소
 - 1) 광양시 소재 : 1개소(변경)

연번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	소 재 지
1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62호	광양 다암 섬진진터 석비좌대	전남 광양시 다암면 도사리 135-1외

- 2) 영암군 소재 : 10개소(신규)

연번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	소 재 지
1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84호	영암 부춘정	전남 영암군 영암읍 망호리 206
2	전라남도 기념물 제20호	왕인박사유적지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산18 외
			전남 영암군 군서면 서구림리831 외
3	전라남도 기념물 제40호	김원장군 묘소 및 신도비	전남 영암군 시종면 민수리205-7 외
4	전라남도 기념물 제71호	전씨충효문	전남 영암군 서호면 장천리 555-2 외
5	전라남도 기념물 제84호	영암 장동방대형 고분	전남 영암군 시종면 옥아리 158 외
6	전라남도 기념물 제97호	남해당지	전남 영암군 시종면 옥아리 930 외
7	전라남도 기념물 제105호	영팔정	전남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403 외
8	전라남도 기념물 제108호	영암 삼총각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 588 외
9	전라남도 기념물 제144호	영암금계리고분군	전남 영암군 학산면 금계리 산71 외
10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60호	열무정 및 사포계 문서일괄	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193외

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2 제2항 제1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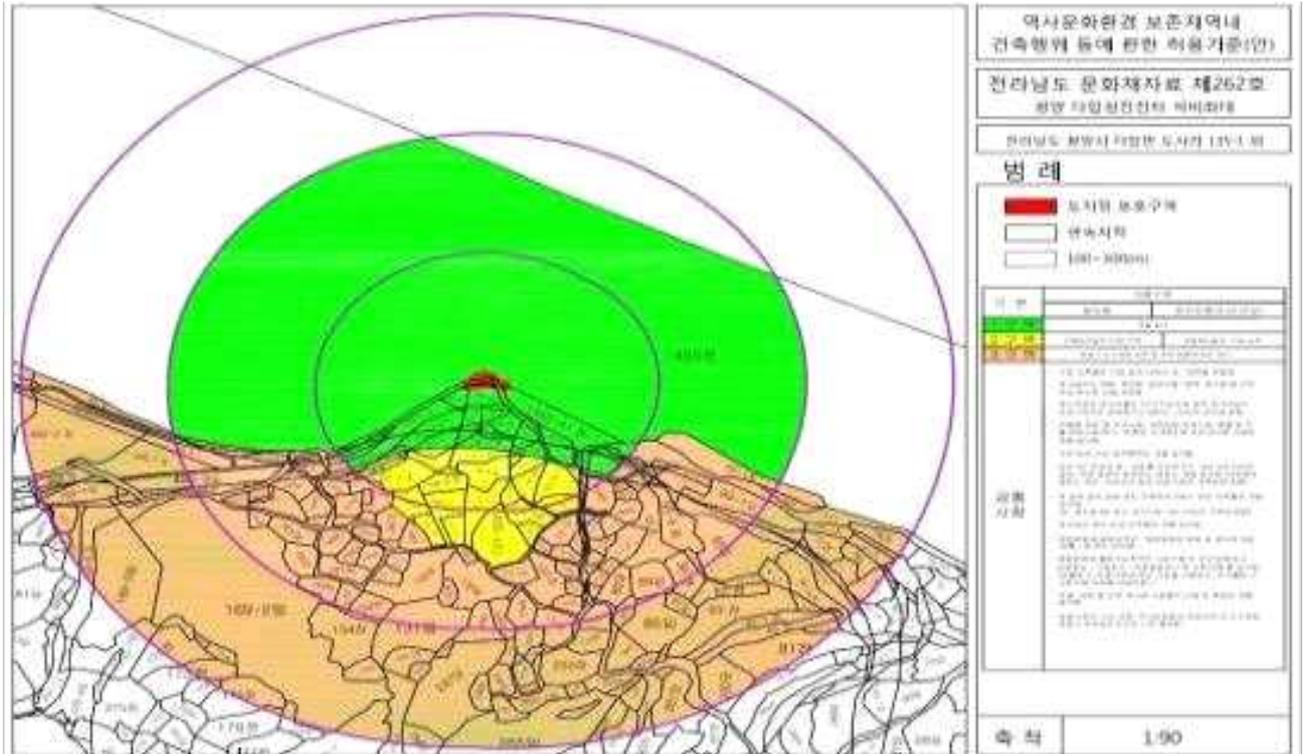
-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25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향검토를 생략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62호 광양 다압 섬진진터 석비좌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물 최고 높이 5.0m이하	○ 건물 최고 높이 7.5m이하
3구역	○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 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 출토 시 사업 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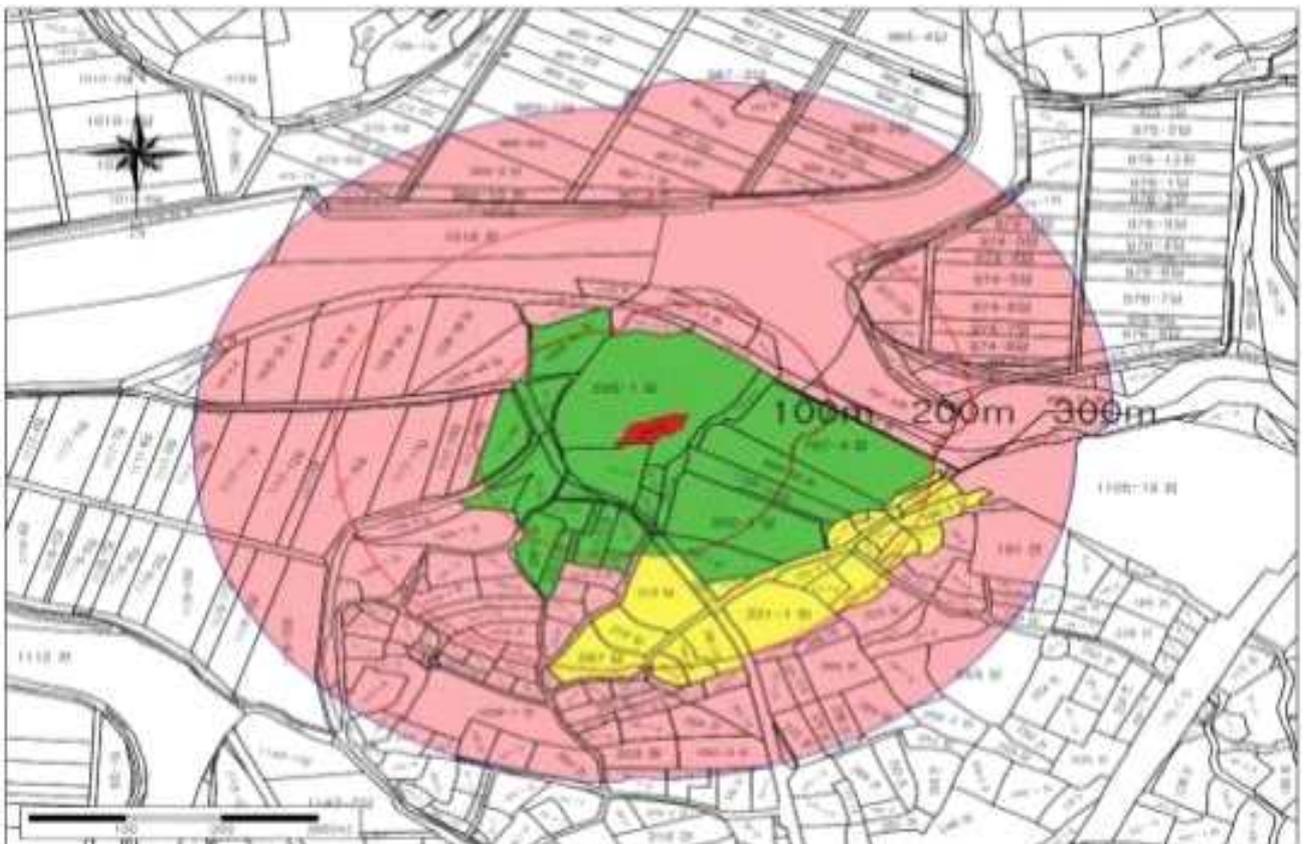
■ 전라남도 영암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개소)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안)- 공통사항

구 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4구역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 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84호 영암부춘정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건축행위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구역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제4구역	○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물 산포지역은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라 이행함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기타 전라남도지사 허가사항(개별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축척  A3 : 1/4,000



■ 전라남도 기념물 제20호 왕인박사유적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건축행위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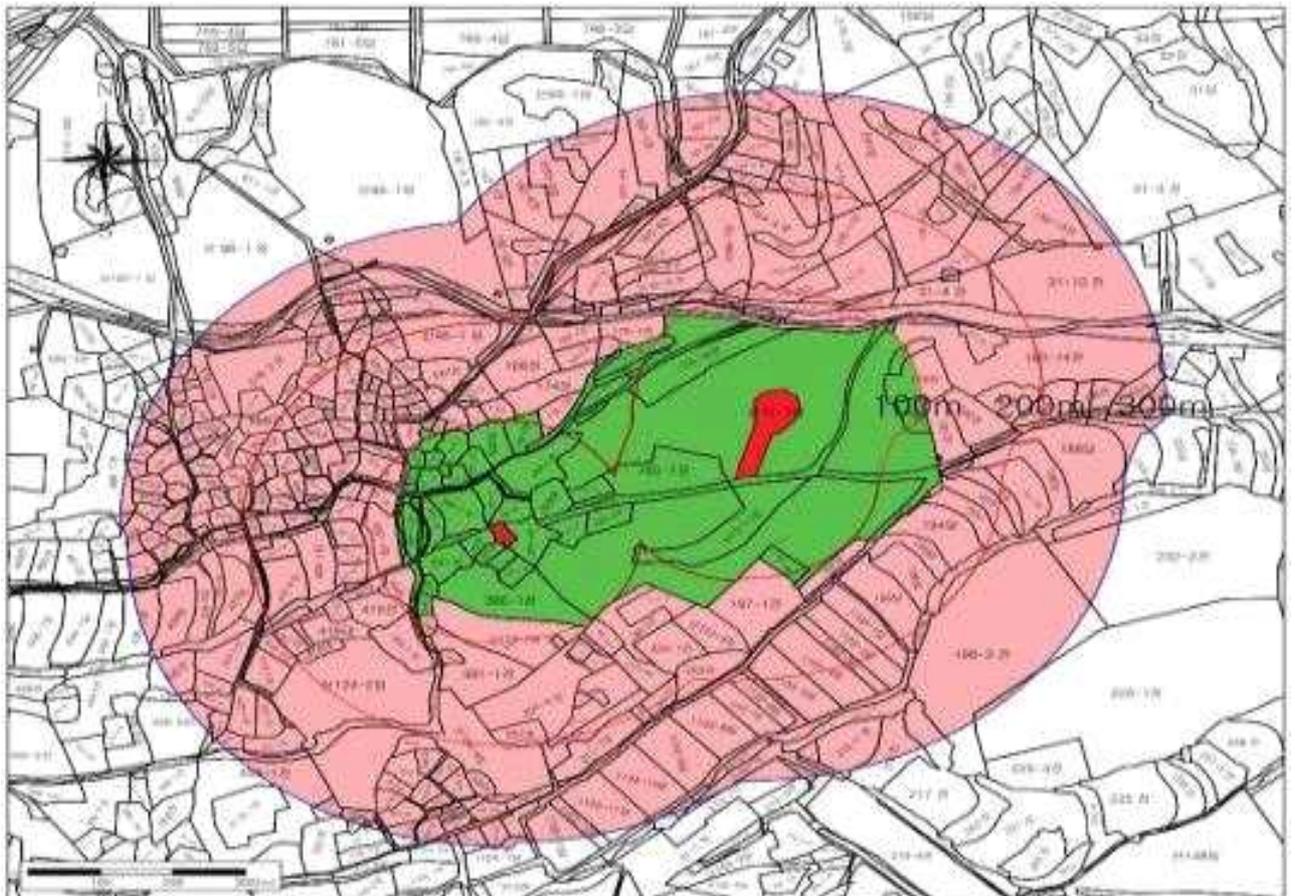
구역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4구역	○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물 산포지역은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라 이행함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기타 전라남도지사 허가사항(개별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p>▲ 축척  A3 : 1/4,000</p>		



■ 전라남도 기념물 제40호 김완장군 묘소 및 신도비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건축 행위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구역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4구역	○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물 산포지역은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라 이행함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기타 전라남도지사 허가사항(개별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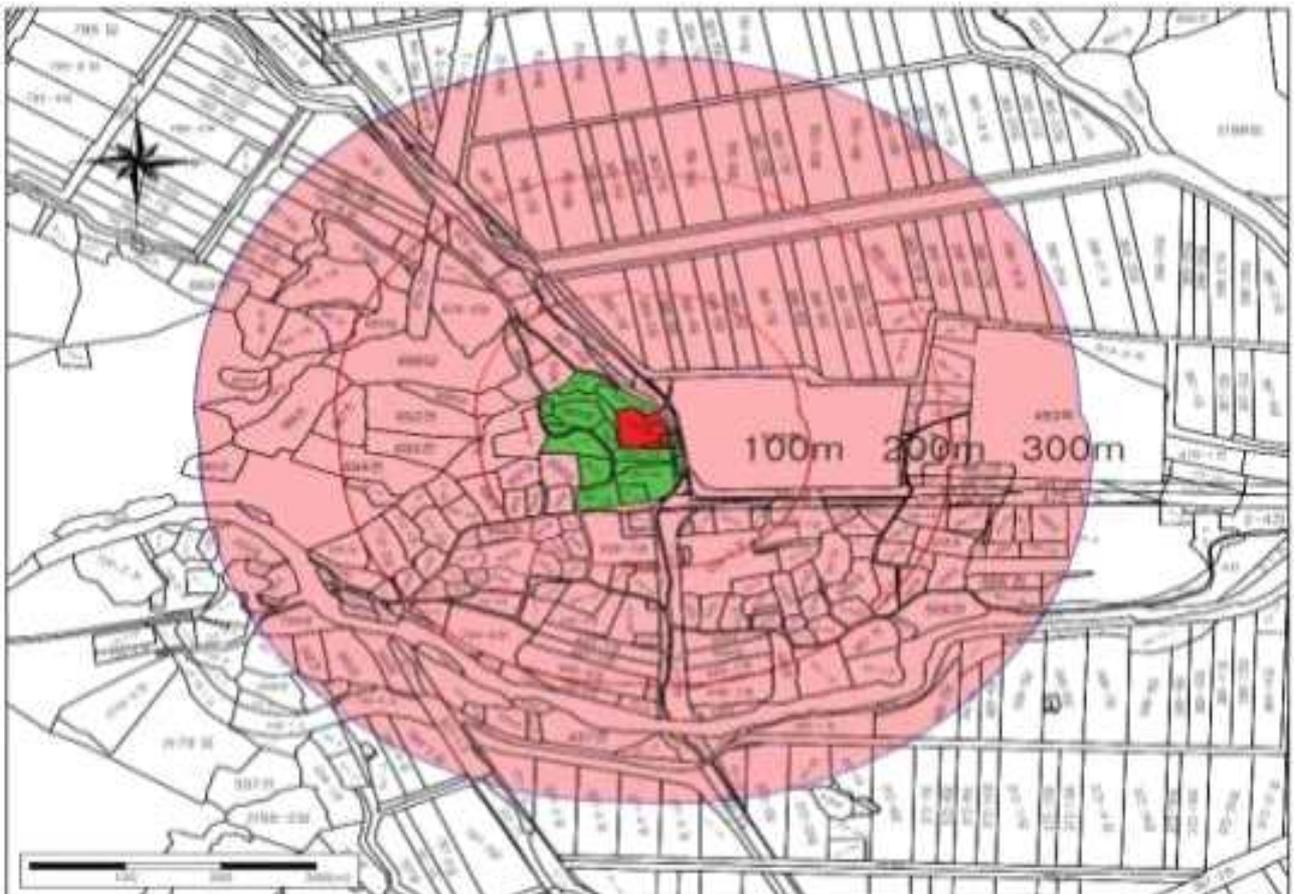
▲ 축척  A3 : 1/4,000



■ 전라남도 기념물 제71호 전씨충효문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건축행위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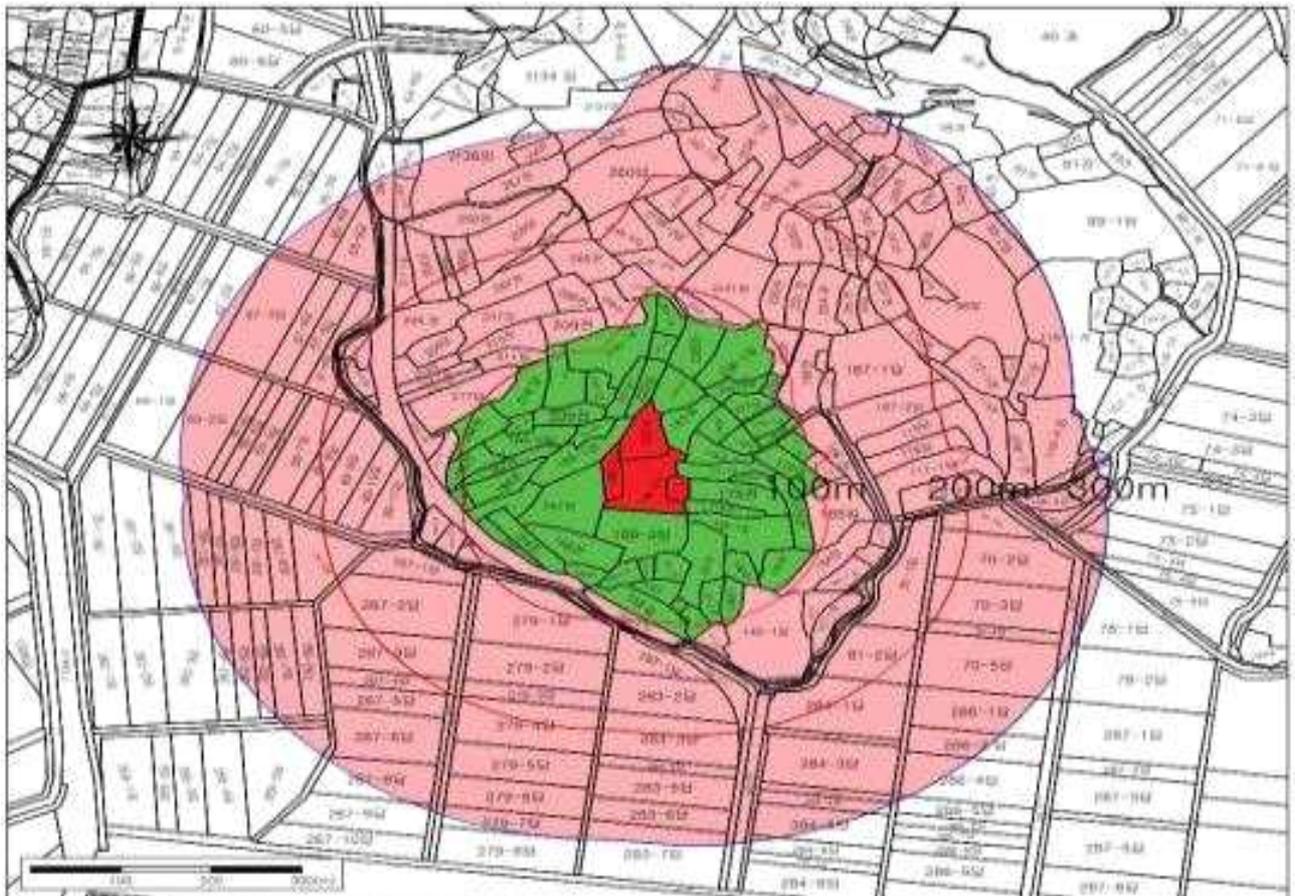
구역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4구역	○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물 산포지역은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라 이행함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기타 전라남도지사 허가사항(개별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축척  A3 : 1/4,000



■ 전라남도 기념물 제84호 영암장동방대형고분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건축행위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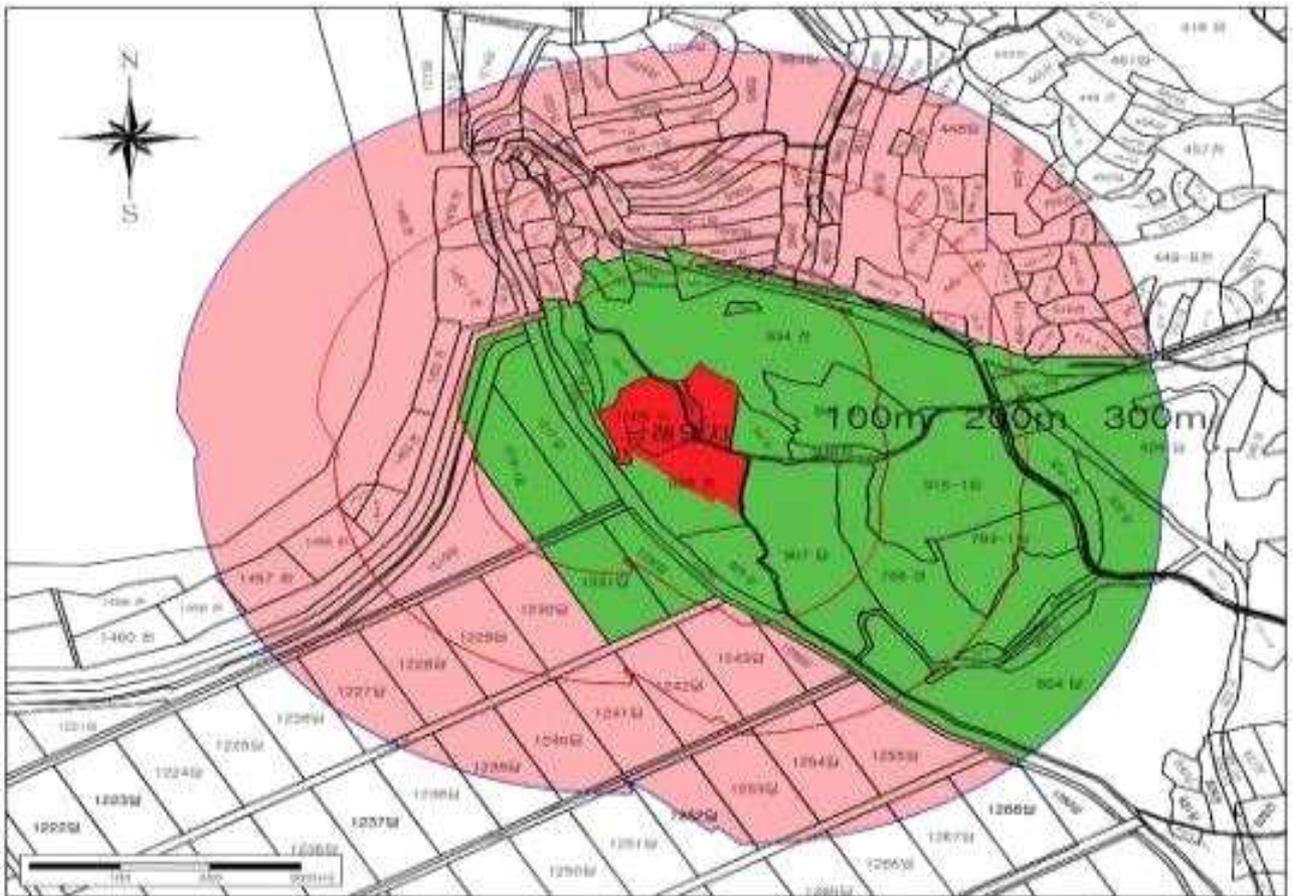
구역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4구역	○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물 산포지역은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라 이행함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기타 전라남도지사 허가사항(개별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p>■ 축척  A3 : 1/4,000</p>		



■ 전라남도 기념물 제97호 남해당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건축행위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구역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4구역	○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물 산포지역은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라 이행함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기타 전라남도지사 허가사항(개별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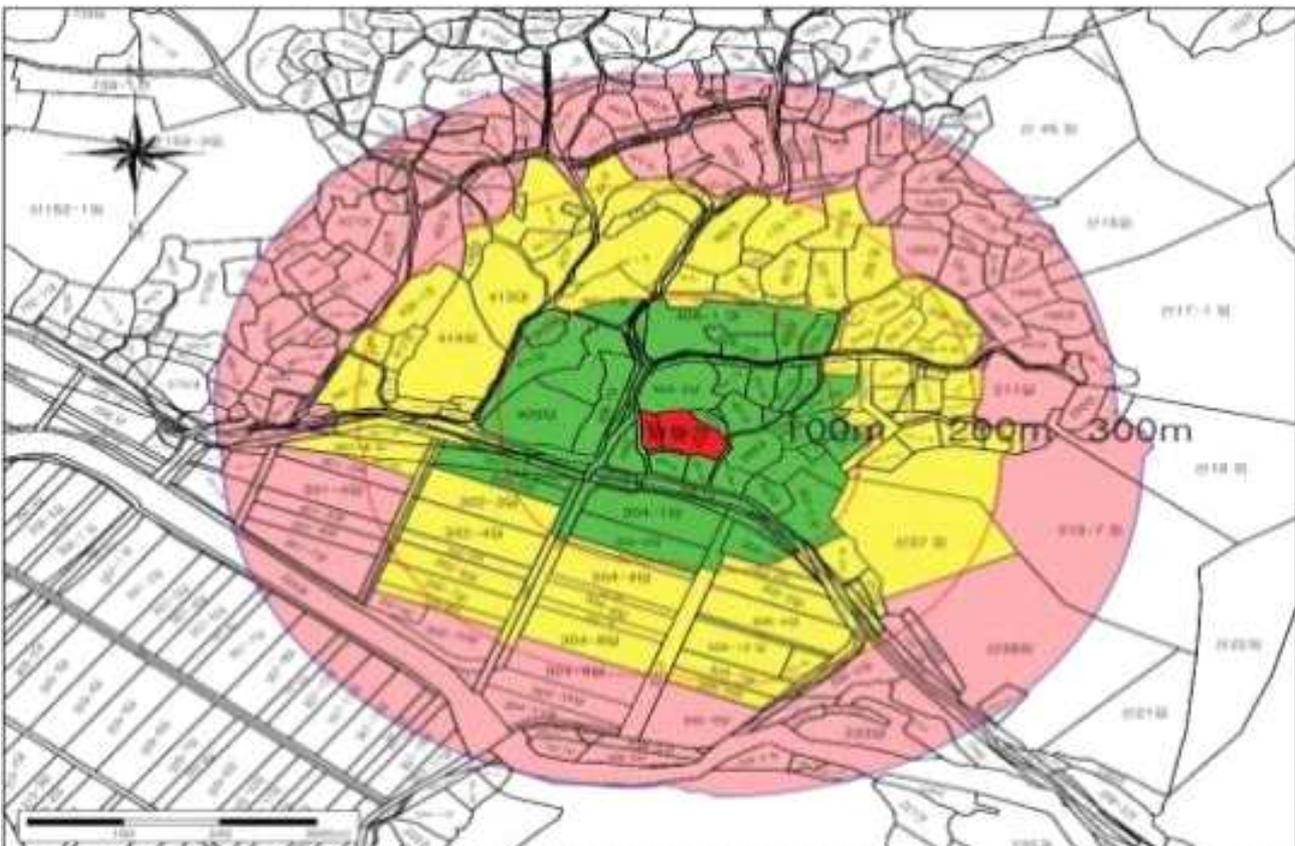
▲ 축척  A3 : 1/4,000



■ 전라남도 기념물 제105호 영팔정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건축행위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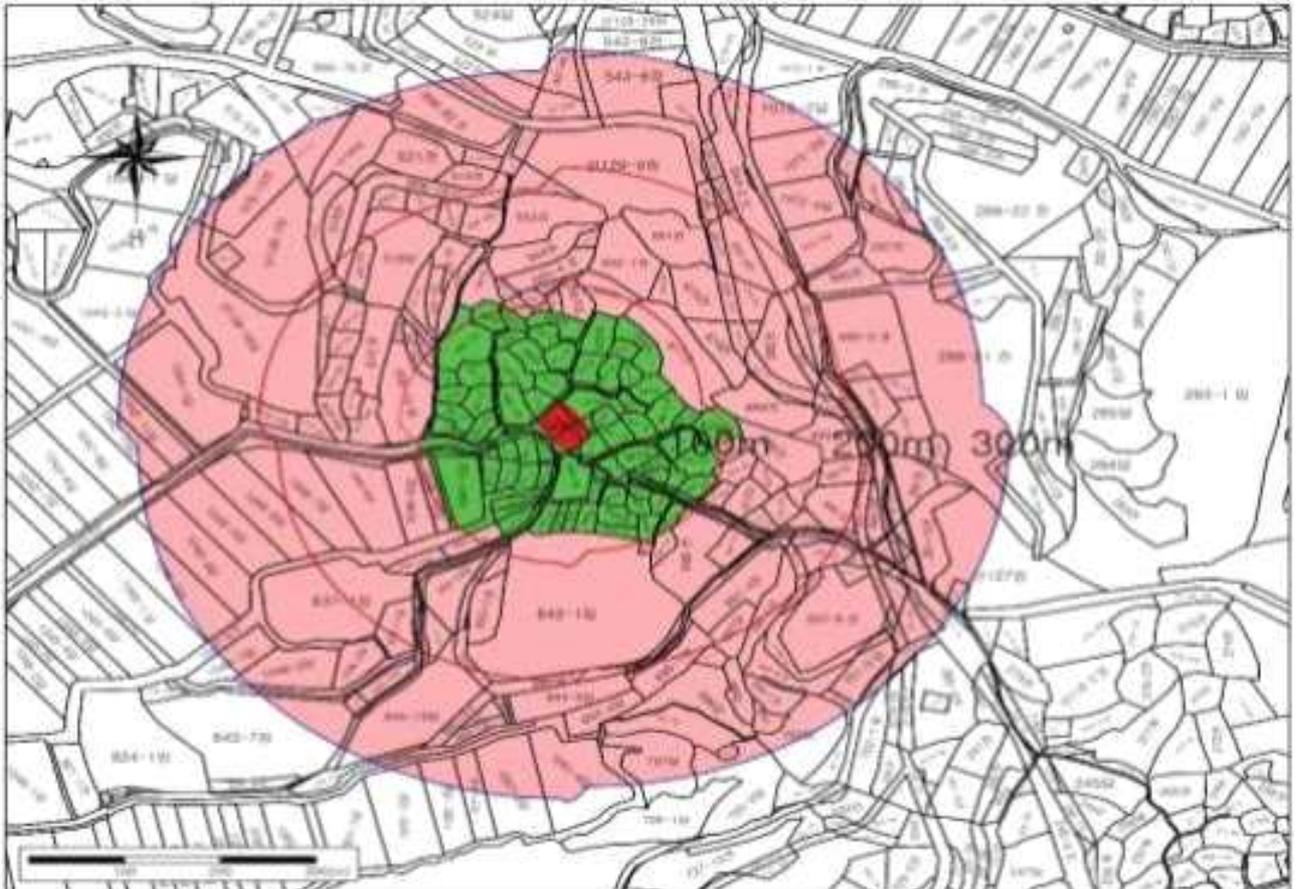
구역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제4구역	○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물 산포지역은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라 이행함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기타 전라남도지사 허가사항(개별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축척  A3 : 1/4,000



■ 전라남도 기념물 제108호 영암삼층각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건축행위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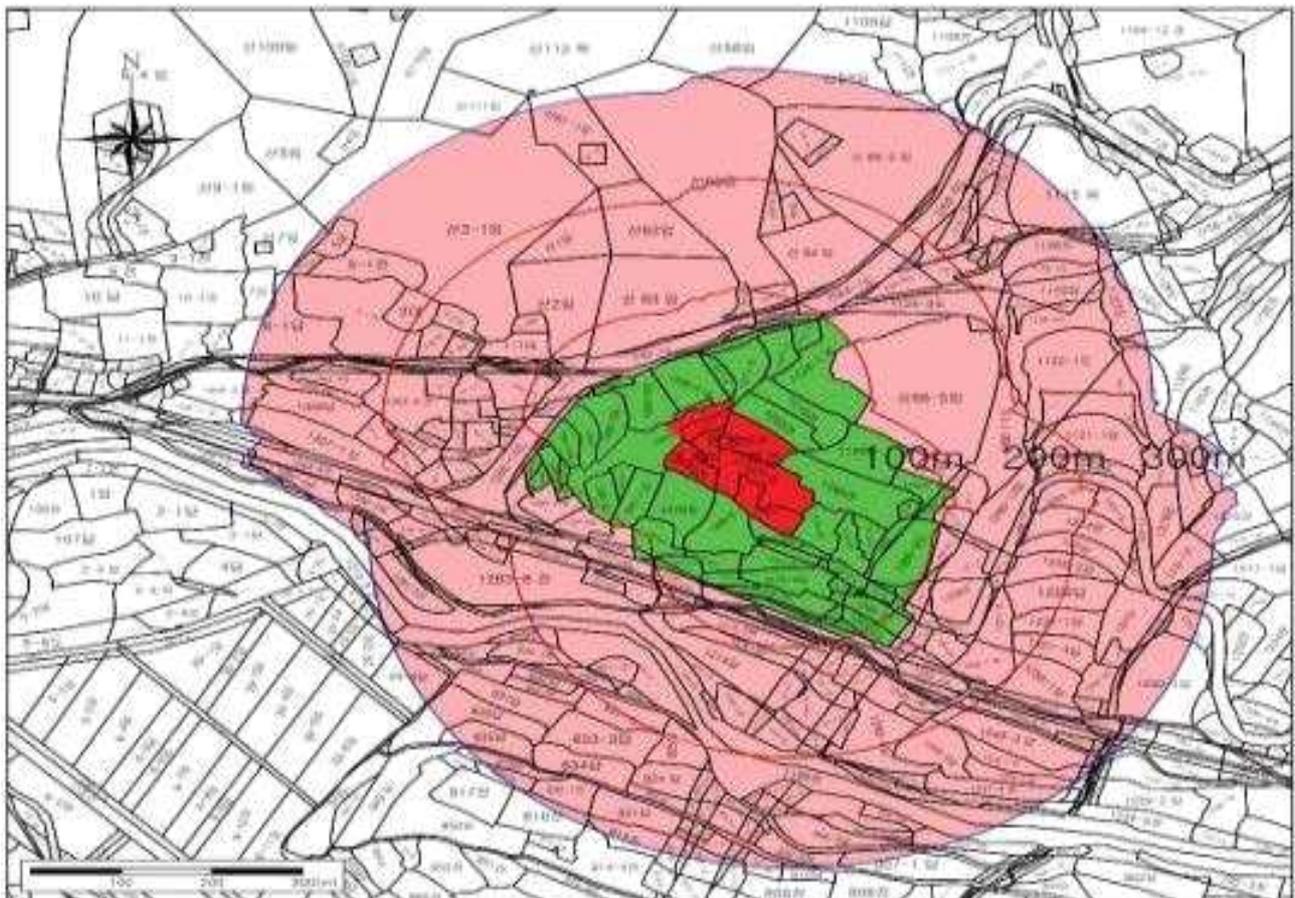
구역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4구역	○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물 산포지역은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라 이행함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기타 전라남도지사 허가사항(개별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p>▲ 축척 1:1,000 A3 : 1/4,000</p>		



■ 전라남도 기념물 제144호 영암금계리고분군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건축행위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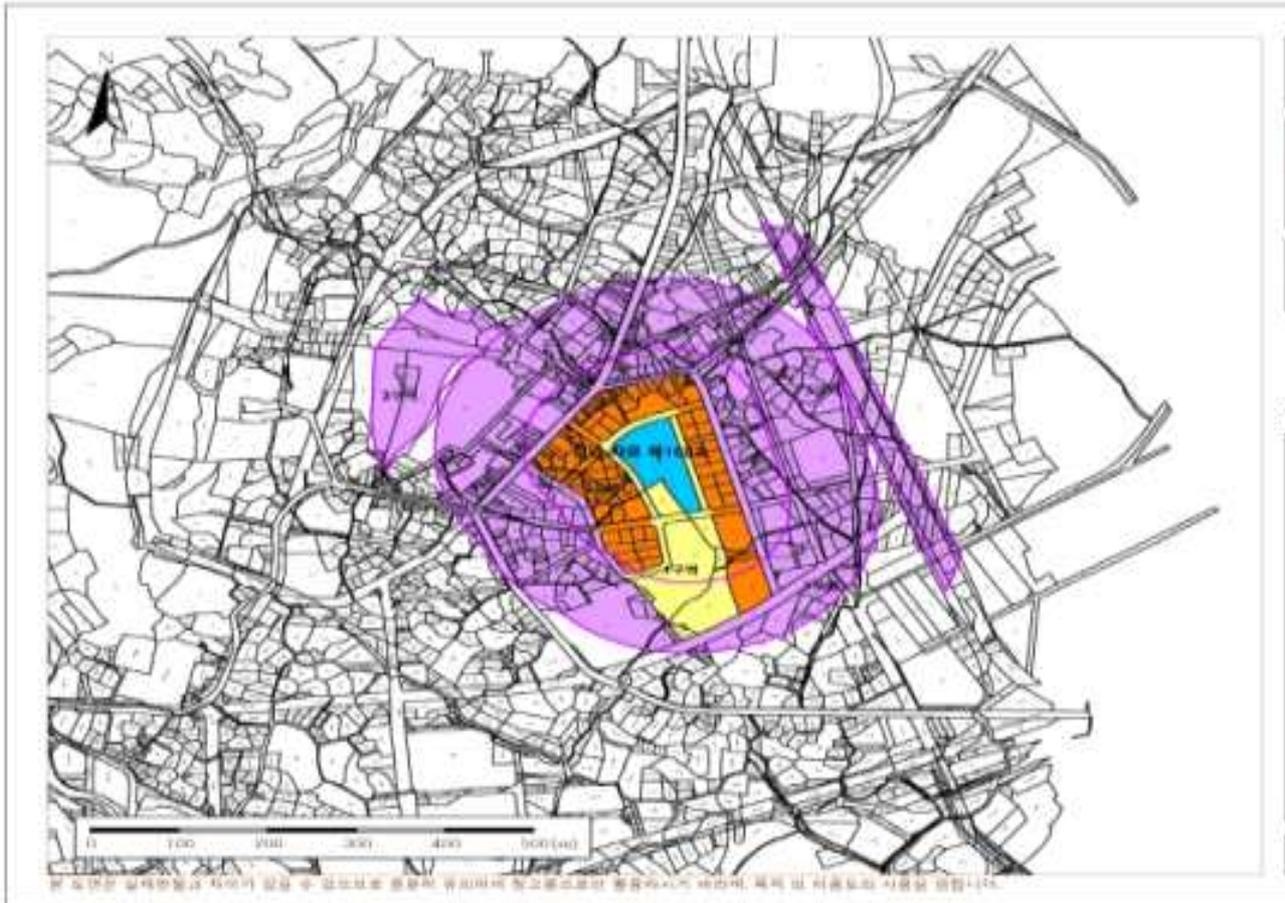
구역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4구역	○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물 산포지역은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라 이행함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기타 전라남도지사 허가사항(개별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A3 : 1/4,000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60호 열무정 및 사포계문서 일괄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건축행위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3구역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동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기타 전라남도지사 허가사항(개별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태양광, 야간조명 등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빛공해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남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확인처
 - 전라남도 광양시 문화예술과
 - 전라남도 영암군 문화관광과
 - 문화재청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문화재보존관리지도 (<http://gis-heritage.go.kr/re>)에서 열람 가능

3. 기준 시행일 : 도보 고시일

4. 연 락 처

-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주 소 : (우)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연락처 : 전화 061-286-5331
- 광양시 문화예술과
 - 주 소 : (우) 57785 전라남도 광양시 행정2길 5(중동)
 - 연락처 : 전화 061-797-2418
- 영암군 문화관광과
 - 주 소 : (우)(58415)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 연락처 : 전화 061-470-2199

전라남도 고시 제2021-230호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고시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1.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다음
2.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면: 게재 생략
3. 관계 도서는 나주시청 도시과(☎061-339-89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총괄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608,543,339.0	-	608,543,339.0	100.0			
도시 지역	계	105,204,946.1	-	105,204,946.1	17.3			
	주거 지역	소 계	17,028,521.1	-	17,028,521.1	2.8		
		제1종전용주거지역	302,794.1	-	302,794.1	0.1		
		제2종전용주거지역	479,004.0	-	479,004.0	0.1		
		제1종일반주거지역	8,818,071.0	-	8,818,071.0	1.4		
		제2종일반주거지역	3,730,105.0	-	3,730,105.0	0.6		
		제3종일반주거지역	1,494,571.0	-	1,494,571.0	0.2		
		준주거지역	2,203,976.0	-	2,203,976.0	0.4		
	상업 지역	소 계	1,421,202.0	-	1,421,202.0	0.2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406,359.0	-	1,406,359.0	0.2		
		근린상업지역	14,843.0	-	14,843.0	-		
	공업 지역	소 계	4,001,071.0	-	4,001,071.0	0.7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3,776,715.0	-	3,776,715.0	0.6		
		준공업지역	224,356.0	-	224,356.0	0.1		
	녹지 지역	소 계	82,754,152.0	-	82,754,152.0	13.6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7,219,747.0	-	7,219,747.0	1.2		
		자연녹지지역	75,534,405.0	-	75,534,405.0	12.4		
	비도시 지역	계	503,338,392.9	-	503,338,392.9	82.7		
		관리 지역	소 계	220,914,310.0	-	220,914,310.0	36.3	
			보전관리지역	114,813,246.0	감)61,598	114,751,648.0	18.9	
생산관리지역			48,694,621.0	감)13,727	48,680,894.0	8.0		
계획관리지역			57,406,443.0	증)75,325	57,481,768.0	9.4		
농 립 지 역		269,530,143.9	-	269,530,143.9	44.3			
자연환경보전지역		12,893,939.0	-	12,893,939.0	2.1			

※ 기정: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다시 도시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나주시 고시 제2020-153호, 2020.10.22.)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1,926	-	91,926	100.0	
관 리 지 역	91,926	-	91,926	100.0	
보전관리지역	74,868	감)61,598	13,270	14.4	
생산관리지역	13,727	감)13,727	-	-	
계획관리지역	3,331	증)75,325	78,656	85.6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다도면 풍산리 67-1번지 일원	보전관리 지 역	계획관리 지 역	61,598	1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니주 다도면 풍산리 일원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의 계획적·체계적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다도면 풍산리 신8번지 일원	생산관리 지 역	계획관리 지 역	13,727	1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니주 다도면 풍산리 일원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의 계획적·체계적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전라남도 고시 제2021-232호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 결정 고시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1.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다음
2.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도면: 게재 생략
3. 관계 도서는 나주시청 도시과(☎061-339-89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1.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 총괄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608,543,339.0	-	608,543,339.0	100.0			
도시 지역	계	105,204,946.1	-	105,204,946.1	17.3			
	주거 지역	소 계	17,028,521.1	-	17,028,521.1	2.8		
		제1종전용주거지역	302,794.1	-	302,794.1	0.1		
		제2종전용주거지역	479,004.0	-	479,004.0	0.1		
		제1종일반주거지역	8,818,071.0	-	8,818,071.0	1.4		
		제2종일반주거지역	3,730,105.0	-	3,730,105.0	0.6		
		제3종일반주거지역	1,494,571.0	-	1,494,571.0	0.2		
		준주거지역	2,203,976.0	-	2,203,976.0	0.4		
	상업 지역	소 계	1,421,202.0	-	1,421,202.0	0.2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406,359.0	-	1,406,359.0	0.2		
		근린상업지역	14,843.0	-	14,843.0	-		
	공업 지역	소 계	4,001,071.0	-	4,001,071.0	0.7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3,776,715.0	-	3,776,715.0	0.6		
		준공업지역	224,356.0	-	224,356.0	0.1		
	녹지 지역	소 계	82,754,152.0	-	82,754,152.0	13.6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7,219,747.0	-	7,219,747.0	1.2		
		자연녹지지역	75,534,405.0	-	75,534,405.0	12.4		
	비도시 지역	계	503,338,392.9	-	503,338,392.90	82.7		
		관리 지역	소 계	220,914,310.0	증)236,417	221,150,727.00	36.3	
			보전관리지역	114,813,246.0	감)172,616	114,640,630.00	18.8	
생산관리지역			48,694,621.0	-	48,694,621.00	8.0		
계획관리지역			57,406,443.0	증)409,033	57,815,476.00	9.5		
농 립 지 역		269,530,143.9	감)236,417	269,293,726.90	44.3			
자연환경보전지역		12,893,939.0	-	12,893,939.00	2.1			

※ 기정: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다시 도시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나주시 고시 제2020-153호, 2020.10.22.)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647,229.4	-	2,647,229.4	100.00	
관 리 지 역	2,410,812.4	증) 236,417	2,647,229.4	100.00	
계획관리지역	2,238,196.4	증) 409,033	2,647,229.4	100.00	
보전관리지역	172,616.0	감) 172,616	-		
농 립 지 역	236,417.0	감) 236,417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다도면 송학리 산148번지 일원	보전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	172,616	100% 이하	• 해피니스CC 9홀 증설 조성사업(대중골프장 9홀 증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고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다도면 송학리 산148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236,417	100% 이하	• 해피니스CC 9홀 증설 조성사업(대중골프장 9홀 증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고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층수 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4	해피니스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다도면 송학리 1219-1번지 일원	5층 이하	2,226,265.3	2017.10.19 (전라남도 고시 제2017-346호)	
변경	14	해피니스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다도면 송학리 1219-1번지 일원	5층 이하	2,647,229.4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지 구 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4	해피니스지구	• 면적 변경 - 2,226,265.3㎡ → 2,647,229.4㎡ (420,964.1㎡ 면적 증가)	• 해피니스CC 9홀 증설 조성사업(대중골프장 9홀 증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고자 용도지구 면적 변경 (기존 용도지구 내 지적 축적 변경사항 반영 포함)

전라남도 고시 제2021-233호

나주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 공간시설) 변경 결정 고시

나주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 공간시설)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1. 나주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 공간시설) 결정(변경) 조서: 다음
2. 나주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 공간시설) 결정(변경) 도면: 게재 생략
3. 관계 도서는 나주시청 도시과(☎061-339-89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나주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 공간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나주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 공간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2	25-35	보조간선 도로	7,503	노안면 구역계 덕산리 503-2도	보산동 구역계 보산동 산6-3도	일반 도로	-	건설부 고시 제342호 1972. 6. 14.	광장 중복
변경	대로	1	2	25-35	보조간선 도로	7,503	노안면 구역계 덕산리 503-2도	보산동 구역계 보산동 산6-3도	일반 도로	-	-	
폐지	대로	2	2	30	주간선 도로	2,723	광장2호 삼도동 1406-9답	광장1호 학산리 958-25답	일반 도로	-	전라남도 고시 제2003-16호 2003. 2. 13.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2	대로1-2	• 현행도로 반영	• 광장1 폐지에 따른 현행도로 반영
대로2-2	-	• 시설 폐지	• 사업비 과다 등 실효 전 집행가능성이 없어 시설 폐지

나. 공간시설

1) 광장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광장	교차점 광장	노안면 학산리 952-4답 일원	57,970	감) 57,970	-	전라남도 고시 제2003-16호 2003. 2. 13.	대로1-2중복 (국도13호선)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지	1	광장	• 시설폐지 - A=57,970㎡ → 0㎡ 감) 57,970㎡	• 사업비 과다 등 실효 전 입체교차로집행가능성이 없어 시설폐지

2)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녹지	완충녹지	월태리 774답 일원	1,228	감) 1,228	-	전라남도 고시 제2003-16호 2003. 2. 13.	국도1호선변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지	1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폐지 - A=1,228㎡ → 0㎡ 감) 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로변 공장 및 상가,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어 완충녹지 설치의 필요성이 없으며, 실효 전 집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시설 폐지

전라남도 고시 제2021-235호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 고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임업진흥권역 관리업무 매뉴얼」 지정해제 기준 제3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1. 해제사유 : 지정목적 상실(산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경우)
 * 임업진흥권역 관리업무 매뉴얼 지정해제 기준 제3항 ㉞호 항목
2. 관련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7조
3. 해제일자 : 2021. 5. 17.
4. 해제고시 내역

번호	소재지	지번		면적	
		당초	변경	지정면적	지정해제면적(㎡)
	합계	18필지	1필지	369,122.38	324,879.14
1	담양군 창평면 광덕리	산13	747(체육용지) (395,657.2㎡)	89,777.51	85,996.90
2	담양군 창평면 광덕리	산14-1		53,032.71	45,758.33
3	담양군 창평면 광덕리	산14-10		980.31	980.31
4	담양군 창평면 광덕리	산14-2		1,142.97	1,142.97
5	담양군 창평면 광덕리	산14-4		720.91	720.90
6	담양군 창평면 광덕리	산14-5		9,869.98	9,869.97
7	담양군 창평면 광덕리	산14-8		97,950.20	73,143.26
8	담양군 창평면 광덕리	산24-4		3,714.09	3,714.09
9	담양군 창평면 광덕리	산28		32,484.91	32,484.90
10	담양군 창평면 광덕리	산29		6,690.13	6,690.12
11	담양군 창평면 광덕리	산34-1		7,956.56	7,098.51
12	담양군 창평면 광덕리	산35		18,484.44	14,961.32
13	담양군 창평면 광덕리	산38-2		2,714.67	2,697.78

번호	소재지	지번		면적	
		당초	변경	지정면적	지정해제면적(㎡)
14	담양군 창평면 광덕리	산40		14,344.67	10,425.66
15	담양군 창평면 광덕리	산41		106.24	106.24
16	담양군 창평면 광덕리	산42		1,733.62	1,733.61
17	담양군 창평면 광덕리	산43		11,362.58	11,350.28
18	담양군 창평면 광덕리	산46		16,055.88	16,003.90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산림보전과(☎061-286-7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고시 제2021-237호

지방어항 지정(변경) 고시

어촌어항법 제17조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어항(고흥 하동항) 명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 지방어항 명칭변경

현 행		변 경		비 고
항종	항명	항종	항명	
지방어항	하동항	지방어항	구암항	

※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섬해양정책과(061-286-6731) 및 해당시군에 비치되어 있음.

전라남도 고시 제2021-238호

감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앙로 리본프로젝트 조성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감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앙로 리본프로젝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사업시행자: 곡성군수
 - 나. 주 소: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2. 사업의 명칭, 위치, 목적
 - 가. 명 칭: 감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앙로 리본프로젝트 조성사업
 - 나. 위 치: 전라남도 곡성군 중앙로 93~146 일원
 - 다. 목 적: 중앙로의 가로환경 및 상가 경관개선으로 기차마을 내 관광객을 곡성읍 시가지로 유입하여 주민 편익 증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과 관광객의 소통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여 공동체 활동 활성화 및 삶의 질 제고
3. 사업 시행기간: 2020 ~ 2022년

【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곡성군수

나. 주 소: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2. 사업의 명칭·목적, 위치·면적, 사업 시행 기간

가. 명 칭: 감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앙로 리본프로젝트 조성사업

나. 목 적: 중앙로의 가로환경 및 상가 경관개선으로 기차마을 내 관광객을 곡성읍 시가지로 유입하여 주민 편의 증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과 관광객의 소통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여 공동체 활동 활성화 및 삶의 질 제고

다. 위 치: 전라남도 곡성군 중앙로 93~146일원

라. 면 적: 11,376㎡

마. 사업 시행기간: 2020 ~ 2022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 게재 생략

가. 위치도



4. 계획 평면도,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 게재 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사업비		연차별				비고
		2020년	2021년		2022년	
			국토부	타부처		
합 계	4,856	300	1,123	1,700	1,733	
국 비	2,841	200	653	850	1,138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방비	2,015	100	470	850	59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곡성읍 읍내리	188-2	도	225	198	곡성군		
2	곡성읍 읍내리	188-3	도	245	245	곡성군		
3	곡성읍 읍내리	188-6	도	20	20	허기태	곡성읍 읍내리 188-6	
4	곡성읍 읍내리	188-12	도	30	30	곡성군		
5	곡성읍 읍내리	188-14	도	14	7	양승순	곡성읍 읍내리 188-1	
6	곡성읍 읍내리	188-16	도	10	10	조태규	곡성읍 읍내리 164-3	
7	곡성읍 읍내리	188-17	도	31	31	곡성군		
8	곡성읍 읍내리	188-18	도	32	32	김순호	곡성읍 읍내리 356-1	
9	곡성읍 읍내리	188-19	도	22	22	강문수	곡성읍 읍내리188	
10	곡성읍 읍내리	188-20	도	27	27	곡성군		
11	곡성읍 읍내리	188-21	도	10	10	장욱기	곡성읍 읍내리 333-3	
12	곡성읍 읍내리	188-22	도	10	10	조정훈	곡성읍 읍내리 358-7	
13	곡성읍 읍내리	189-4	도	46	10	조종훈	곡성읍 읍내리 139-7	
14	곡성읍 읍내리	190-1	도	3	3	구대량	곡성읍 읍내리 292	
15	곡성읍 읍내리	191-9	도	5	5	곡성단위농업협동조합	곡성읍 읍내리 191-4	
16	곡성읍 읍내리	191-10	도	10	10	곡성단위농업협동조합	곡성읍 읍내리 191-4	
17	곡성읍 읍내리	191-11	도	55	52	곡성단위농업협동조합	곡성읍 읍내리 191-4	
18	곡성읍 읍내리	192-1	도	80	80	곡성군		
19	곡성읍 읍내리	261-10	도	115	102	오순임	곡성읍 읍내리 261	
20	곡성읍 읍내리	264-1	도	42	42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21	곡성읍 읍내리	264-2	도	104	104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7)	
22	곡성읍 읍내리	266-4	도	25	25	박태귀	곡성읍 읍내리273	
23	곡성읍 읍내리	270-5	도	49	49	여복술	곡성읍 읍내리 270-2	
24	곡성읍 읍내리	350-7	도	50	29	김선옥외1	순천시 장천동40-5	
25	곡성읍 읍내리	350-18	도	29	20	김두수	곡성읍 읍내리 350-2	
26	곡성읍 읍내리	350-19	도	23	23	윤재욱	곡성읍 읍내리 350-9	
27	곡성읍 읍내리	350-22	도	15	15	한정현	곡성읍 장선리538	
28	곡성읍 읍내리	350-21	도	7	7	강동수	곡성읍 읍내리169	
29	곡성읍 읍내리	350-20	도	14	14	김판례	곡성읍 읍내리 151	
30	곡성읍 읍내리	350-8	도	73	73	배영찬	곡성읍 읍내리 350-3	
31	곡성읍 읍내리	350-23	도	54	54	한영준	인천시 부평구 수변로 334,310동601호	
32	곡성읍 읍내리	350-17	도	136	136	한진현	곡성읍 읍내리 395	
33	곡성읍 읍내리	350-24	도	41	41	한경연외1	곡성읍 읍내리 350-16	
34	곡성읍 읍내리	353-7	도	87	87	이윤식	곡성읍 읍내리 353-1	
35	곡성읍 읍내리	296-20	도	72	72	송학근	곡성읍 읍내리 296-6	
36	곡성읍 읍내리	296-21	도	85	73	강영호	곡성읍 읍내리 296	
37	곡성읍 읍내리	304-6	도	41	41	조봉길	곡성읍 읍내리 304-2	
38	곡성읍 읍내리	305-3	도	31	31	정내정	곡성읍 읍내리 317	
39	곡성읍 읍내리	305-4	도	34	34	왕성장	곡성읍 읍내리 305	
40	곡성읍 읍내리	306-4	도	17	17	김용기	곡성읍 읍내리	
41	곡성읍 읍내리	307-4	도	60	60	박경일	곡성읍 읍내리 307-1	
42	곡성읍 읍내리	307-5	도	9	9	양춘길	곡성읍 읍내리 307-2	
43	곡성읍 읍내리	307-6	도	6	6	박옥남	곡성읍 읍내리 307	
44	곡성읍 읍내리	308-5	도	17	17	김영섭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21-26	
45	곡성읍 읍내리	308-6	도	29	29	박옥남	곡성읍 읍내리 384	
46	곡성읍 읍내리	308-7	도	21	21	차복례	곡성읍 읍내리 308	
47	곡성읍 읍내리	308-8	도	16	16	김영섭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21-26	
48	곡성읍 읍내리	309-3	도	81	81	김홍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188번길 41 501호	
49	곡성읍 읍내리	309-4	도	120	26	손영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188번길 41 501호	
50	곡성읍 읍내리	330-1	대	185	2	장용순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곡고로 80-86	
51	곡성읍 읍내리	330-3	도	185	16	권용석	광주광역시 남구 화산로 75 203동1002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52	곡성읍 읍내리	331	대	193	2	이강하	곡성군 오곡면 오자리 350	
53	곡성읍 읍내리	331-1	도	19	19	이태열	곡성읍 읍내리 766	
54	곡성읍 읍내리	332-1	대	45	2	오자리대동마을회	오곡면 오자리 1000	
55	곡성읍 읍내리	332-2	대	23	3	홍하현	곡성읍 읍내리 332-2	
56	곡성읍 읍내리	332-3	도	23	23	이천홍	서울 용산구 동자동 19-8 동자아파트 비동 303호	
57	곡성읍 읍내리	332-4	도	17	17	여규상	곡성읍 읍내리 424	
58	곡성읍 읍내리	332-5	대	43	2	김종표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95-1 2층	
59	곡성읍 읍내리	333	대	90	2	우제천	읍내리1구 573-2	
60	곡성읍 읍내리	333-1	대	100	4	임채준	곡성읍 읍내리 333-1	
61	곡성읍 읍내리	333-3	대	103	5	박삼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읍내10길 16-5	
62	곡성읍 읍내리	333-4	대	982	2	안병관	곡성읍 읍내리 333-4	
63	곡성읍 읍내리	333-9	대	97	2	조은영	광주 북구 문흥동 972-4 문흥리인동산아파트 203-606	
64	곡성읍 읍내리	333-10	대	54	2	김봉순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418-8	
65	곡성읍 읍내리	333-14	도	19	19	주영기	경남 울산시 전희동 681-1 로얄맨션 105호	
66	곡성읍 읍내리	333-15	도	22	22	임택	곡성읍 읍내리 333-1	
67	곡성읍 읍내리	333-16	도	29	29	이순덕	곡성읍 읍내리 333-3	
68	곡성읍 읍내리	333-17	도	13	13	김영수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36 은빛마을 617-1403	
69	곡성읍 읍내리	333-18	도	9	9	김재수	곡성읍 읍내리 333-9	
70	곡성읍 읍내리	333-19	도	12	12	김상석	곡성읍 읍내리 333-10	
71	곡성읍 읍내리	333-22	대	128	3	송하정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101	
72	곡성읍 읍내리	339	대	316	2	박철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솟대길 44-3(삼천동1가)	
73	곡성읍 읍내리	340-1	도	22	22	진병국	곡성읍 읍내리 274	
74	곡성읍 읍내리	340-2	대	86	4	장남옥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학정2길 48	
75	곡성읍 읍내리	341-4	대	58	5	서길환	곡성읍 읍내리 310-27	
76	곡성읍 읍내리	341-7	도	15	15	한인수	인천직할시 남구 옥련동 465	
77	곡성읍 읍내리	342-3	도	15	15	김영자	곡성읍 읍내리373	
78	곡성읍 읍내리	344-3	도	42	33	허기명	곡성읍 읍내리343	
79	곡성읍 읍내리	344-4	도	15	9	허기명	곡성읍 읍내리343	
80	곡성읍 읍내리	345-1	도	46	46	김용성	곡성읍 읍내리345	
81	곡성읍 읍내리	349-8	도	8	8	김복이	대평리113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82	곡성읍 읍내리	349-9	도	30	30	곡성군		
83	곡성읍 읍내리	350-7	도	50	50	김선옥	순천시 장천동40-5	
84	곡성읍 읍내리	350-8	도	73	73	배영찬	곡성읍 읍내리 350-3	
85	곡성읍 읍내리	350-17	도	136	136	한진현	곡성읍 읍내리 395	
86	곡성읍 읍내리	350-18	도	29	29	김두수	곡성읍 읍내리 350-2	
87	곡성읍 읍내리	350-19	도	23	23	윤재욱	곡성읍 읍내리 350-9	
88	곡성읍 읍내리	350-20	도	14	14	김판례	곡성읍 읍내리 151	
89	곡성읍 읍내리	350-21	도	7	7	강동수	곡성읍 읍내리169	
90	곡성읍 읍내리	350-22	도	15	15	한정현	장선리538	
91	곡성읍 읍내리	350-23	도	54	54	한갑연	곡성읍 읍내리 350-15	
92	곡성읍 읍내리	350-24	도	41	41	한경연	곡성읍 읍내리 350-16	
93	곡성읍 읍내리	350-25	도	11	11	박순서	곡성읍 읍내리 350-14	
94	곡성읍 읍내리	353-5	도	17	11	김막동		
95	곡성읍 읍내리	353-7	도	87	87	이윤식	곡성읍 읍내리 353-1	
96	곡성읍 읍내리	353-8	도	12	12	김복이	곡성읍 읍내리397	
97	곡성읍 읍내리	354-1	대	80	8	국(기획재정부)		
98	곡성읍 읍내리	354-3	도	142	142	국(기획재정부)		
99	곡성읍 읍내리	354-5	도	73	73	정규태		
100	곡성읍 읍내리	354-7	도	105	105	국(기획재정부)		
101	곡성읍 읍내리	354-8	도	58	58	정내혁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3-15	
102	곡성읍 읍내리	354-9	도	54	54	국(기획재정부)		
103	곡성읍 읍내리	355-1	도	7	7	곡성단위농업협동조합	곡성읍 읍내리 191-4	
104	곡성읍 읍내리	358-8	도	23	22	김용명	곡성읍 읍내리 358	
105	곡성읍 읍내리	367-2	도	28	28	곡성군		
106	곡성읍 읍내리	367-3	도	5	5	곡성군		
107	곡성읍 읍내리	368-1	도	29	29	권이두	곡성읍 읍내리 122-4	
108	곡성읍 읍내리	369-1	도	34	34	박철주	곡성읍 읍내리 369	
109	곡성읍 읍내리	370-5	도	8	8	송정자	곡성읍 읍내리 370-1	
110	곡성읍 읍내리	370-6	도	17	17	권근오	곡성읍 읍내리 370-2	
111	곡성읍 읍내리	370-7	도	24	24	김현기	곡성읍 읍내리262	
112	곡성읍 읍내리	370-8	도	24	24	정영환	곡성읍 읍내리370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13	곡성읍 읍내리	371-3	도	36	36	장지덕	광주시 북구 신안동 790-2	
114	곡성읍 읍내리	387	도	435	435	곡성군		
115	곡성읍 읍내리	388-7	도	12	12	정석진	곡성읍 읍내리 349-1	
116	곡성읍 읍내리	388-8	도	6	6	한용태	곡성읍 읍내리 390	
117	곡성읍 읍내리	390-1	도	50	50	한용태	광주 북구 두암동 308-11	
118	곡성읍 읍내리	391-1	도	62	62	최갑기	곡성읍 읍내리 391	
119	곡성읍 읍내리	392-6	도	36	36	김영심	곡성읍 읍내리 392-5	
120	곡성읍 읍내리	392-7	도	47	47	김곤	곡성읍 읍내리 392-1	
121	곡성읍 읍내리	392-8	도	96	96	박경순	곡성읍 읍내리 392	
122	곡성읍 읍내리	395-2	도	96	30	원유복		
123	곡성읍 읍내리	395-4	도	26	26	서영균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382번길 9(시동)	
124	곡성읍 읍내리	396-1	도	66	66	서영균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382번길 9(시동)	
125	곡성읍 읍내리	397-1	도	121	121	김복이	곡성읍 읍내리 390	
126	곡성읍 읍내리	398-1	도	57	57	박점순	곡성읍 읍내리 267-4	
127	곡성읍 읍내리	399-1	도	54	54	최영천	곡성읍 읍내리 161	
128	곡성읍 읍내리	400-4	도	21	21	김태길	곡성읍 읍내리312	
129	곡성읍 읍내리	411-21	도	24	24	장재기	곡성읍 읍내리 411-6	
130	곡성읍 읍내리	411-22	도	15	15	김태길	곡성읍 읍내리 312	
131	곡성읍 읍내리	411-23	도	7	7	김태길	곡성읍 읍내리 312	
132	곡성읍 읍내리	846	도	27,029	3,324	국(건설부)		
133	곡성읍 읍내리	365-4	대	89	89	곡성군		
134	곡성읍 읍내리	365-7	대	119	119	곡성군		
135	곡성읍 읍내리	365-9	대	674	674	곡성군		
136	곡성읍 읍내리	365-11	대	159	159	곡성군		
137	곡성읍 읍내리	372-3	대	238	238	곡성군		
138	곡성읍 읍내리	373-1	대	195	195	곡성군		
139	곡성읍 읍내리	373-2	대	403	403	곡성군		
140	곡성읍 읍내리	373-3	대	171	171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349-1	
141	곡성읍 읍내리	373-4	대	238	238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390	
142	곡성읍 읍내리	373-5	대	416	416	곡성군	광주 북구 두암동 308-11	
143	곡성읍 읍내리	373-9	대	167	167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391	
144	곡성읍 읍내리	373-10	대	48	48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392-5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45	곡성읍 읍내리	373-11	대	35	35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392-1	
146	곡성읍 읍내리	373-12	대	157	157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392	
147	곡성읍 읍내리	373-13	대	98	98	곡성군		
148	곡성읍 읍내리	373-14	대	14	14	곡성군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382번길 9(시동)	
합계				38,063	11,376			

- 7. 그 밖의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게재 생략
- 8.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지역계획과(☎061-286-7361), 곡성군 도시경제과(☎061-360-8710)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고시 제2021-239호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추진계획(13차) 고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5개 시·군(목포, 고흥, 해남, 무안, 진도)의 택시 자율감차 보상업무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1. 감차기간

구 분	사업시행기간	비 고
목포시	2021 ~ 2050년 (30년)	
고흥군	2020 ~ 2031년 (12년)	
해남군	2020 ~ 2039년 (20년)	
무안군	2020 ~ 2024년 (5년)	
진도군	〃	

2. 연도별·업종별 감차규모

○ 총 감차규모

(단위: 대)

구 분	감차대수	비 고
목포시	358	
고흥군	104	
해남군	90	
무안군	14	
진도군	59	

○ 2020~2024년 시행

(단위: 대)

구분	면허대수 (일반/개인)	총량 결과	종류	연차별 감차규모						
				합계	소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143 (903/1,241)	1,518	일반	625	274	6	25	30	30	29
			개인		351	7	13	20	18	22
목포시	1,531 (607/924)	1,173	일반	358	179	-	15	15	15	15
			개인		179	-	-	-	-	-
고흥군	200 (121/79)	96	일반	104	62	5	8	5	5	4
			개인		42	3	4	3	3	4
해남군	194 (96/98)	104	일반	90	1	-	1	-	-	-
			개인		89	2	5	6	4	5
무안군	137 (44/93)	123	일반	14	4	1	1	1	1	-
			개인		10	2	2	2	2	2
진도군	81 (35/46)	22	일반	59	28	-	-	9	9	10
			개인		31	-	2	9	9	11

○ 2025~2034년까지 시행

(단위: 대)

구분	종류	연차별 감차규모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계	일반	20	10	10	10	10	9	9	5	5	5
	개인	7	15	14	15	14	16	19	12	11	12
목포시	일반	15	5	5	5	5	4	4	5	5	5
	개인	-	7	7	7	7	8	8	7	7	7
고흥군	일반	5	5	5	5	5	5	5	-	-	-
	개인	3	3	3	3	3	3	7	-	-	-
해남군	일반	-	-	-	-	-	-	-	-	-	-
	개인	4	5	4	5	4	5	4	5	4	5
무안군	일반	-	-	-	-	-	-	-	-	-	-
	개인	-	-	-	-	-	-	-	-	-	-
진도군	일반	-	-	-	-	-	-	-	-	-	-
	개인	-	-	-	-	-	-	-	-	-	-

○ 2035~2044년까지 시행

구분	종류	연차별 감차규모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계	일반	5	4	4	4	4	4	4	4	4	4
	개인	11	12	11	12	11	7	7	7	7	7
목포시	일반	5	4	4	4	4	4	4	4	4	4
	개인	7	7	7	7	7	7	7	7	7	7
고흥군	일반	-	-	-	-	-	-	-	-	-	-
	개인	-	-	-	-	-	-	-	-	-	-
해남군	일반	-	-	-	-	-	-	-	-	-	-
	개인	4	5	4	5	4	-	-	-	-	-
무안군	일반	-	-	-	-	-	-	-	-	-	-
	개인	-	-	-	-	-	-	-	-	-	-
진도군	일반	-	-	-	-	-	-	-	-	-	-
	개인	-	-	-	-	-	-	-	-	-	-

○ 2044~2050년까지 시행

구분	종류	연차별 감차규모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계	일반	4	4	4	4	4	4	-	
	개인	7	7	7	7	7	7	9	
목포시	일반	4	4	4	4	4	4	-	
	개인	7	7	7	7	7	7	9	
고흥군	일반	-	-	-	-	-	-	-	
	개인	-	-	-	-	-	-	-	
해남군	일반	-	-	-	-	-	-	-	
	개인	-	-	-	-	-	-	-	
무안군	일반	-	-	-	-	-	-	-	
	개인	-	-	-	-	-	-	-	
진도군	일반	-	-	-	-	-	-	-	
	개인	-	-	-	-	-	-	-	

3. 감차보상금액

(단위 : 1대당, 천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일반(면/읍)	개인(면/읍)	휴지	일반(면/읍)	개인(면/읍)	휴지
목포시	41,000	-	일반 동일	40,000	-	-
고흥군	25,000 37,000	39,000 53,000	일반 20,000 개인 25,000	25,000 37,000	39,000 53,000	일반 20,000 개인 25,000
해남군	35,000 45,000	90,000 110,000	20,000	40,000 50,000	90,000 110,000	20,000
무안군	35,000	80,000	-	35,000	109,800	-
진도군	28,000	65,000	-	35,000	80,000	-

* 목포시 향후 5년간 일반택시만 감차, 개인택시 보상금액은 이후 결정

** 진도군의 휴지택시는 운행개시일부터 2년 이후 감차 가능

전라남도 고시 제2021-242호

2021년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시군) 시행계획 승인(5차) 고시

2021년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시군) 대해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2021년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2. 사업의 목적: 수로 내 수초, 퇴적토 등의 정비 불량과 단면 부족으로 인해 침수피해를 유발하는 흙수로를 구조물화
3. 사업의 내용: 흙수로 구조물화(개거, 수로관 설치 등)

지구명	위 치			사업량(m)	사업비(천 원)			사업기간 (예 정)	사 업 시행자	비고
	사군	읍면동	리		합계	도비	시군비			
2개 시군, 20지구				2,201	715,000	572,000	143,500			
보성군(14지구)				1,525	460,000	368,000	92,000			
대야	보성	보성	대야	70	26,135	20,908	5,227	'21. 5. ~ 12.	보성군수	
우산	보성	보성	우산	45	26,247	20,997	5,250			
쾌상	보성	보성	쾌상	83	26,247	20,997	5,250			
옥마	보성	노동	옥마	74	24,571	19,656	4,915			
명봉	보성	노동	명봉	90	24,571	19,657	4,914			
대련	보성	노동	대련	90	24,571	19,657	4,914			
광곡	보성	노동	광곡	52	24,571	19,657	4,914			
평호	보성	겸백	평호	96	25,082	20,066	5,016			
수남	보성	겸백	수남	260	73,315	58,652	14,663			
용산	보성	겸백	용산	100	27,812	22,250	5,562			
도개	보성	미력	도개	271	76,276	61,021	15,255			
미력	보성	미력	미력	114	30,101	24,081	6,020			
용정	보성	미력	용정	84	23,665	18,932	4,733			
반룡	보성	미력	반룡	96	26,836	21,469	5,367			

지구명	위 치			사업량(m)	사업비(천 원)			사업기간 (예 정)	사 업 시행자	비고
	사군	읍면동	리		합계	도비	시군비			
화순군(6지구)				676	255,000	204,000	51,000			
가수	화순	동북	가수	65	43,500	34,800	8,700	'21. 6. ~ 8.	화순군수	
만수	화순	능주	만수	96	29,300	23,440	5,860			
동가	화순	한천	고시	170	52,987	42,390	10,597			
천태	화순	도암	천태	80	30,000	24,000	6,000			
신리	화순	청풍	신리	35	30,000	24,000	6,000			
정우	화순	한천	동가	230	69,213	55,370	13,843			

4. 사업의 효과: 흙수로 구조물화를 통한 영농환경 개선 및 농업생산성 향상

5. 관련 서류 열람 장소

- 보성군 안전건설과(061-850-5533), 화순군 건설과(061-379-3762)

전라남도 고시 제2021-243호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사업계획 변경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무안군 지적재조사지구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1. 대 상 사 업 : 2020년 동산1지구
2. 사업시행자 : 무안군수
3. 사업지구 변경내용

사군	지구명	위 치	변경내용				비고 (증감률%)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무안군	동산1지구	무안군 현경면 동산리 9-3번지 일원	필지수(필)	2,002	2,002	-	-
			면 적(㎡)	1,978,294.2	1,979,367.2	증 1,073	증 0.1%

4. 변경사유 : 토지합병, 면적정정 등 필지 추가 및 제외
5. 토지조서 : 도보게재 생략 (해당 시·군청에 비치)
6. 지정도면 : 도보게재 생략 (해당 시·군청에 비치)
7. 열람부서 :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 061-450-5417
8.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전라남도 고시 제2021-244호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자원효율화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자원효율화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1.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 혁신밸리 운영을 위해 혁신밸리 내 폐양액, 폐식물, 폐배지파쇄장치 및 지원센터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광) 시설 설치 운영
2. 사업내용 및 구역
 - 위 치 : 전남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3737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50㎡(설비보관동)
 - 사업개요
 - 폐식물처리시설 1식
 - 폐양액처리시설 1식
 - 폐배지파쇄기 1식
 - 지원센터 태양광설치공사, 지열공사 1식
 - 자원재활용 설비실 토목·건축공사 1식
3. 총 사업비 : 2,430백만원
4. 사업기간 : 2021년 ~ 2022년(2년)
5. 사업효과 :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6. 사업시행자 : 전라남도지사, 고흥군수(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7. 기 타 : 관계 설계도서는 고흥군청 농업축산과(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및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스마트팜혁신밸리추진단(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25)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공고 제2021-547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변경) 공고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흥군 신상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내용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지정번호	변경 사항	당 초 (전라남도 공고 제2021-28호)	변 경	사유
전라남도 수산자원 관리수면 제2021-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어구의 종류 및 수 ◆ 포획채취 방법 	잠수기 어선 25척 양식장형망선 2척	양식장형망선 5척	관리수면의 효율적 관리

전라남도 공고 제2021-548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토목건축공사업 (제150493호)	이도종합건설주식회사 (박○숙)	전남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22-60	2021. 5. 13.
건축공사업 (제150996호)	서진종합건설주식회사 (이○한)	전남 강진군 강진읍 해강로 1426	2021. 5. 13.

전라남도 공고 제2021-551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아래 업체를 건설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상호명	대표자	등록번호	영업 소재지	전문분야	등록일
대건 주식회사	여승준	전남 2-318호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4길 44	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 일반) *계획·설계·조사 제외	2021. 5. 14.

전라남도 공고 제2021-554호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사전 열람 공고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36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나. 명 칭 :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3. 사업의 목적 : 소통과 화합을 통해 배움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열린 공무원교육원 조성
4.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사업 내용	
	기정	변경
면 적	81,133㎡	77,793㎡
건축면적(건폐율 %)	5,302.50㎡(6.54%)	5,418.12㎡(9.88%)
연 면 적(용적율 %)	13,154.58㎡(16.21%)	13,951.86㎡(9.12%)
건축규모	3동(지상1층-지상4층)	3동(지상1층-지상4층)

5.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나. 성 명 : 전라남도지사
6.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나. 준공(예정)일 : 2021.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다음
8. 관계도서 및 세부조서 : 열람장소 비치

9. 공람일시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1. 5. 20. ~ 2021. 6. 3.(15일간)

나. 공람장소

○ 전라남도인재개발원(☎061-286-3191)

다. 공람내용 : 실시계획 신청서류 1식(열람장소 비치)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인재개발원(☎061-286-3191, 담당자 방영홍)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면	리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1	도암	만덕	364	전	436.0	436.0		전라남도
2	도암	만덕	368	대	11,853.0	11,853.0		전라남도
3	도암	만덕	369	대	9,669.0	9,669.0		전라남도
4	도암	만덕	373	전	1,501.0	1,501.0		전라남도
5	도암	만덕	374	전	1,861.0	1,861.0		전라남도
6	도암	만덕	375	전	357.0	357.0		전라남도
7	도암	만덕	376	전	1,514.0	1,514.0		전라남도
8	도암	만덕	377	전	1,438.0	1,438.0		전라남도
9	도암	만덕	380	대	2,260.0	2,260.0		전라남도
10	도암	만덕	353-1	전	3,338.0	3,338.0		전라남도
11	도암	만덕	353-4	전	450.0	450.0		전라남도
12	도암	만덕	355-3	전	365.0	365.0		전라남도
13	도암	만덕	360-1	전	987.0	987.0		전라남도
14	도암	만덕	360-12	전	118.0	118.0		전라남도
15	도암	만덕	360-3	임	1,670.0	1,670.0		전라남도
16	도암	만덕	360-4	도	187.0	187.0		강진군
17	도암	만덕	686-1	전	1,320.0	1,320.0	695	윤재영
18	도암	만덕	363-1	답	2,383.0	2,383.0		전라남도
19	도암	만덕	365-1	전	1,752.0	1,752.0		전라남도
20	도암	만덕	365-2	도	69.0	69.0		강진군
21	도암	만덕	365-3	전	132.0	132.0		전라남도
22	도암	만덕	365-6	전	81.0	81.0		전라남도
23	도암	만덕	372-1	대	607.0	607.0		전라남도
24	도암	만덕	372-2	임	861.0	861.0		전라남도
25	도암	만덕	372-4	전	7,696.0	7,696.0		전라남도
26	도암	만덕	372-5	임	74.0	74.0		전라남도
27	도암	만덕	372-6	전	423.0	423.0		전라남도
28	도암	만덕	372-7	전	1,585.0	1,585.0		전라남도
29	도암	만덕	372-8	전	360.0	360.0		전라남도
30	도암	만덕	377-1	대	185.0	185.0		전라남도
31	도암	만덕	380-1	대	342.0	342.0		전라남도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면	리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32	도암	만덕	381-1	대	221.0	221.0		전라남도
33	도암	만덕	686-3	전	45.0	45.0		전라남도
34	도암	만덕	산105-3	임	7,324.0	7,324.0		전라남도
35	도암	만덕	산105-4	임	712.0	712.0		전라남도
36	도암	만덕	산107-4	임	780.0	780.0		전라남도
37	도암	만덕	산107-5	임	462.0	462.0		전라남도
38	도암	만덕	산108	임	11,724.0	11,724.0		전라남도
39	도암	만덕	산108-2	임	651.0	651.0	53	강릉유씨술제공파제흥계손종중
합계					77,793.0	77,793.0		

전라남도 공고 제2021-557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건축공사업 (제150997호)	국토종합건설주식회사 (임○석)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읍내중앙길 62, 2층	2021. 5. 14.

전라남도 공고 제2021-562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등록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공고)에 따라 신규 등록한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20.

전라남도지사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현황

등록업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비고
정보통신공사업 (제610393호)	전산정보시스템	홍치석	전라남도 나주시 박정길 17, 1층 (산정동)	2021. 5. 17.	

목포시 공고 제2021-848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소로 2-538호선)사업 실시계획 공고

1. 목포시 옥암동 1202-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사업명 : 법원 앞 에메랄드 법조빌딩 옆 진입도로 개설공사】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및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건설과/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5. 20.

목포시장

■ 실시계획 공고 내용

구분 항목	공 고 내 용	비 고
1. 사업시행 위치	○ 사업위치 : 목포시 옥암동 1202-1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목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 업 명 : 법원 앞 에메랄드 법조빌딩 옆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도로 개설 L= 26m, B= 5.75m, A= 186㎡	
4.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목포시 양율로 203 ○ 성 명 : 목포시장(건설과장)	
5.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기간 : 2021. 06.(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1.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붙임 참조	
7. 실시계획 관계도서	○ 관계도서 : 게재 생략(목포시청 건설과/도시계획과 비치)	
8. 실시계획 열람공고	○ 열람기간 : 2021. 5. 20. ~ 2021. 6. 3.(14일간) ○ 열람장소 : 목포시청 건설과 / 도시계획과	
9. 기타 문의	○ 문의 전화 : 061-270-3484(목포시청 건설과) 061-270-3447(목포시청 도시계획과)	

편입 토지 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시 · 동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관리 관계	
1	목포시 옥암동	1189-8	도	12,207	16	공유지	목포시				
2	목포시 옥암동	1202-4	도	159	159	공유지	목포시				
3	목포시 옥암동	1189-12	도	2,001	11	공유지	목포시				
합 계				14,367	186						

지장물 조서 (가로등)

연번	토 지 소재지	지 번	지목	전주번호	소관청	수 량	비 고
1	옥암동	1202-4	도			1	
2	옥암동	1189-12	도			1	
합 계						2	

지장물 조서 (수목)

연번	토 지 소재지	지 번	지목	수 량	비 고
1	옥암동	1189-8	도	1	
합 계				1	

목포시 공고 제2021-854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소로 3-317호선)사업 실시계획 공고

1. 목포시 옥암동 1268-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사업명 : 부주동행정복지센터 맞은편 원룸촌 진입도로 개설공사】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건설과/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5. 20.

목포시장

■ 실시계획 공고 내용

구분 항목	공 고 내 용	비 고
1. 사업시행 위치	○ 사업위치 : 목포시 옥암동 1268-1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목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 업 명 : 부주동행정복지센터 맞은편 원룸촌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도로 개설: L= 25m, B= 6m, A= 145㎡	
4.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목포시 양율로 203 ○ 성 명 : 목포시장(건설과장)	
5.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기간 : 2021. 06.(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1.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다음	
7. 실시계획 관계도서	○ 관계도서 : 게재 생략(목포시청 건설과/도시계획과 비치)	
8. 실시계획 열람공고	○ 열람기간 : 2021. 5. 20. ~ 2021. 6. 3.(14일간) ○ 열람장소 : 목포시청 건설과 / 도시계획과	
9. 기타 문의	○ 문의 전화 : 061-270-3484(목포시청 건설과) 061-270-3447(목포시청 도시계획과)	

편입 토지 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시 · 동			토지대장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1	목포시 옥암동	1297	도	18,747	39	공유지	목포시				
2	목포시 옥암동	1267	도	102	102	공유지	목포시				
3	목포시 옥암동	1291	도	3,456	4	공유지	목포시				
합 계				22,305	145						

지장물 조서 (가로등)

연번	토 지 소재지	지 번	지목	전주번호	소관청	수 량	비 고
1	옥암동	1297	도			1	
2	옥암동	1291	도			1	
합 계						2	

지장물 조서 (수목)

연번	토 지 소재지	지 번	지목	수 량	비 고
1	옥암동	1297	도	1	
합 계				1	

목포시 공고 제2021-855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소로 1-246호선)사업 실시계획 공고

1. 목포시 옥암동 1048-13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명 : 부흥동 참여수교회 진입 도로개설공사】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 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건설과/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5. 20.

목포시장

■ 실시계획 공고 내용

항목	구분	공 고 내 용	비 고
1. 사업시행 위치		○ 사업위치 : 목포시 옥암동 1048-13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목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 업 명 : 부흥동 참여수교회 진입 도로개설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도로 개설 L= 43m, B= 9.5m, A= 454㎡	
4.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목포시 양율로 203 ○ 성 명 : 목포시장(건설과장)	
5.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기간 : 2021. 06.(실시계획인가 고시일).~ 2021.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다음	
7. 실시계획 관계도서		○ 관계도서 : 게재 생략(목포시청 건설과/도시계획과 비치)	
8. 실시계획 열람공고		○ 열람기간 : 2021. 5. 20. ~ 2021. 6. 3.(14일간) ○ 열람장소 : 목포시청 건설과 / 도시계획과	
9. 기타 문의		○ 문의 전화 : 061-270-3484(목포시청 건설과) 061-270-3447(목포시청 도시계획과)	

편입 토지 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시 · 동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관리 관계	
1	목포시 옥암동	1090	도	5,982	14	공유지	목포시				
2	목포시 옥암동	1089	도	5,117	440	공유지	목포시				
합 계				11099	454						

지장물 조서 (통신주)

연번	토 지 소재지	지 번	지목	전주번호	소관청	수 량	비 고
1	옥암동	1089	도			1	
합 계						1	

지장물 조서 (CCTV)

연번	토 지 소재지	지 번	지목	수 량	비 고
1	옥암동	1089	도	1	
합 계				1	

지장물 조서 (수목)

연번	토 지 소재지	지 번	지목	수 량	비 고
1	옥암동	1089	도	4	
합 계				4	

여수시 고시 제2021-206호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20.

여수시장

- 1. 사업시행지 위치 : 여수시 응천동 1836번지 일원
- 2. 사업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 응천못공원)사업
 - 나. 명 칭 : 응천못공원 주차장조성사업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A=1,290㎡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여수시장
 - 나.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5. 사업시행기간
 - 가. 착수예정년월일 : 2021. 5.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나. 준공예정년월일 : 2021. 12.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1	여수시 응천동	1836	공	36,477.6	1,290		여수시				

-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1) 및 공원과(☎061-659-463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고시 제2021-106호

순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순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변경)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20.

순천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순천시 서면 선평리 766-1번지 일원
2.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 내용

명 칭	종류	규 모				사업시행자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시설명	면 적(㎡)			주 소	성 명	
			구분	면적(㎡)	연장(폭)			
당초	도로	선평마을-북부지동차매매 단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당초	22,873	L=661m (20.0m)	순천시 징명로 30	순천시장 (도로과장)	2020. 6. 30. ~ 2027. 6. 30.
변경		선평마을-중앙로 (제일고 앞) 도로개설	변경	25,624	L=661m (20.0m)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다음
4. 관계도서는 순천시 도시과(☎ 061-749-631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등의 세목조서
가. 토지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지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당초	변경						
합 계					25,652	22,873	25,624	-	-				
1	가곡동	157-2	157-3	천	10	8	10	국토 교통부					
2	가곡동	937-1	937-104	천	1,056	1,075	1,056	국토 교통부					
3	서면 선평리	818	818-19	천	620	921	620	국토 교통부					
4	서면 선평리	766-1	766-7	전	250	240	250	순천시					
5	서면 선평리	766	766-3	전	1,186	1,055	1,186	김**	순천시 원기곡길 74				
								김**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6길 6(풍덕동)				
								김**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51				
								장**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92번길 76, 디동 205호(심곡동,태우연립)				
								김**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74번길 26-3, 301호(심곡동)				
								김**	기도 부천시 옥산로146번길 9-9(도당동) 지분 455분의 21				
								김**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강창길 82, 101동 804호 (라송센트럴카운티 아파트)				
6	서면 선평리	1078-1	1078-2	답	115	153	115	순천시					
7	서면 선평리	818	818-18	천	20		20	국토 교통부					
8	서면 선평리	1077	1077-1	전	76	18	76	순천시					
9	서면 선평리	766-2	766-2	전	3	3	3	순천시					
10	서면 선평리	764-4	764-6	전	43	6	43	순천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지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당초	변경						
11	서면 선평리	764	764-5	전	5	2	5	김**	순천시 원가곡길 74				
								김**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6길 6(풍덕동)				
								김**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을현충로 51				
								장**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92번길 76, 디동 205호(삼곡동,태우연립)				
								김**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74번길 26-3, 301호(삼곡동)				
								김**	기도 부천시 옥산로146번길 9-9(도당동) 지분 455분의 21				
								김**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강청길 82, 101동 804호 (라송센트럴카운티 아파트)				
12	서면 선평리	812	812-1	구	149		149	농림 축산 식품부					
13	서면 선평리	759	759-2	답	946	833	946	박**	순천시 조곡동 160-2				
14	서면 선평리	760	760-2	답	906	903	906	하**	순천시 서면 지분당산길 87	순천농업 협동조합	순천시 백연길 111	근저 당권	
15	서면 선평리	812	812-4	구	229	519	229	농림축산 식품부					
16	서면 선평리	742-2	742-5	철	776	779	776	국토 교통부					
17	서면 선평리	812	812-5	구	216		216	농림축산 식품부					
18	서면 선평리	741-4	741-8	철	276	266	276	국토 교통부					
19	서면 선평리	741-1	741-6	답	205	215	205	김**	인양시 동안구 평촌동 13-1 브락향촌아파트 308-1001				
20	서면 선평리	741-2	741-7	답	1,468	1,504	1,468	하**	선평리 554				
21	서면 선평리	738-1	738-3	답	93	295	93	하**	순천시 매곡동 448-3	순천농업 협동조합	순천시 조곡동 159-5	근저 당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지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당초	변경						
22	서면 선평리	726	726-1	답	1,760	1,822	1,760	하**	선평리 556				
23	서면 선평리	738-1	738-4	답	168		168	하**	순천시 매곡동 448-3	순천농업 협동조합	순천시 조곡동 159-5	근저 당권	
24	서면 선평리	727	727-2	답	276	284	276	하**	순천시 조례연동길 5 조례3차대주파크빌 316-1103				
25	서면 선평리	810	810-1	도	65	53	65	국토 교통부					
26	서면 선평리	734	734-3	답	306	276	306	조**	순천시 서면 대들이길 17 배들마을주공아파트 105-905				
27	서면 선평리	1046	1046-1	천	14	13	14	기획 재정부					
28	서면 선평리	1043	1043-1	도	139	95	139	국토 교통부					
29	서면 선평리	1045	1045-1	도	88	79	88	순천시					
30	서면 선평리	1044	1044-1	도	18	18	18	순천시					
31	서면 선평리	1035-6	1035-11	천	94	85	94	순천시					
32	서면 선평리	1035	1035-7	천	4,397	4,238	4,397	김**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13길 19 롯데캐슬노블 102-406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 당권	
								호**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13길 19, 102동 406호 (역삼동, 역삼동롯데캐슬노블)				
								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3길 19, 102동 406호 (역삼동, 역삼동롯데캐슬노블)				
33	서면 선평리	818	818-22	천	394	0	394	국토 교통부					
34	서면 선평리	625-3	625-54	임	1,468	1,449	1,468	순천시					
35	서면 선평리	625-6	625-60	전	327	303	327	순천시					
36	서면 선평리	625-5	625-59	전	55	50	55	순천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지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당초	변경						
37	서면 선평리	625-4	625-58	전	2		2	순천시					
38	서면 선평리		635-35	제	31		31	국토 교통부					
39	서면 선평리	634-1	634-8	답	612	317	612	김**	순천시 성동3길 8 선미중앙하이츠 1508호	순천농업 협동조합	순천시 백연길 111	근저 당권	
40	서면 선평리	634-7	634-7	답	2	2	2	김**	순천시 성동3길 8 선미중앙하이츠 1508호	순천농업 협동조합	순천시 백연길 111	근저 당권	
41	서면 선평리	625-46	625-63	임	17	17	17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골든타워 4층				
42	서면 선평리	818	818-21	천	63		63	국토 교통부					
43	서면 선평리	1080-1	1080-3	전	83	82	83	순천시					
44	서면 선평리	1080	1080-2	전	148	78	148	장**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73 샵터마을 105-801				
45	서면 선평리	1079-1	1079-4	답	2		2	순천시					
46	서면 선평리	1079-1	1079-1	답	28	23	28	순천시					
47	서면 선평리	1079	1079-2	답	10	8	10	김**	순천시 원곡길 74				
								김**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6길 6(풍덕동)				
								김**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51				
								장**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92번길 76, 디동 205호(심곡동,태우연립)				
								김**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74번길 26-3, 301호(심곡동)				
								김**	기도 부천시 옥산로146번길 9-9(도당동) 지분 455분의 21				
								김**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강청길 82, 101동 804호 (라송센트럴카운티 아파트)				
48	서면 선평리	767	767-2	답	177	28	177	장**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73 샵터마을 105-801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지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당초	변경						
49	서면 선평리	766	766-6	전	85	85	85	김**	순천시 원가곡길 74				
								김**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6길 6(풍덕동)				
								김**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51				
								장**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92번길 76, 다동 205호(심곡동,태우연립)				
								김**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74번길 26-3, 301호(심곡동)				
								김**	기도 부천시 옥산로146번길 9-9(도당동) 지분 455분의 21				
								김**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강창길 82, 101동 804호 (라송센트럴카운티 아파트)				
50	서면 선평리	768	768-1	답	645	96	645	강**	순천시 삼산로 81 동아아파트 101-506				
51	서면 선평리	765	765-1	답	725	549	725	박**	순천시 조곡동 160-2				
52	서면 선평리	742	742-4	답	886	871	886	강**	순천시 삼산중길 21	순천농업 협동조합	순천시 백연길 111	근저 당권	
53	서면 선평리	742-3	742-7	철	32	26	32	국토 교통부					
54	서면 선평리	741-5	741-9	철	583	572	583	국토 교통부					
55	서면 선평리	727-1	727-3	도	4	4	4	순천시					
56	서면 선평리	734-1	734-4	도	73	64	73	순천시					
57	서면 선평리	1048	1048-1	천	2	1	2	국토 교통부					
58	서면 선평리	1047	1047-2	천	47	38	47	순천시					
59	서면 선평리	1047-1	1047-1	천	1	1	1	순천시					
60	서면 선평리	1035-2	1035-9	천	11	9	11	김**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13길 19 롯데캐슬노블 102-406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 당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지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당초	변경						
								호**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13길 19, 102동 406호 (역삼동, 역삼동롯데캐슬노블)				
								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3길 19, 102동 406호 (역삼동, 역삼동롯데캐슬노블)				
61	서면 선평리	1035-3	1035-10	천	54	46	54	김**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13길 19 롯데캐슬노블 102-406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 당권	
								호**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13길 19, 102동 406호 (역삼동, 역삼동롯데캐슬노블)				
								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3길 19, 102동 406호 (역삼동, 역삼동롯데캐슬노블)				
62	서면 선평리	1031	1031-1	천	317	295	317	김**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13길 19 롯데캐슬노블 102-406				
63	서면 선평리	1032	1032-1	천	84	85	84	김**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13길 19 롯데캐슬노블 102-406				
64	서면 선평리	1033	1033-1	천	520	516	520	국토 교통부					
65	서면 선평리	627	627-1	전	151	149	151	순천시					
66	서면 선평리	626	626-1	대	81	78	81	순천시					
67	서면 선평리	629	629-1	전	200	185	200	순천시					
68	서면 선평리	625-3	625-56	임	25		25	순천시					
69	서면 선평리	625-11	625-62	전	59		59	순천시					
70	서면 선평리	635-1	635-32	답	227		227	조**	순천시 서면 입석길 68				
71	서면 선평리	625-3	625-57	임	2		2	순천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지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당초	변경						
72	서면 선평리	625-6	625-61	전	2		2	순천시					
73	서면 선평리	635-23	635-33	제	266	122	266	국토 교통부					
74	서면 선평리	634-5	634-12	도	49	1	49	국토 교통부					
75	서면 선평리	634-3	634-11	답	212	157	212	하**	선평리 571				
76	서면 선평리	634-2	634-10	답	831	832	831	김**	순천시 성동3길 8 선미중앙하이츠 1508호	순천농업 협동조합	순천시 백연길 111	근저 당권	
77	서면 선평리	625-52	625-64	임	40	58	40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골든타워 4층				
78	서면 선평리	625-52	625-65	임	18		18	주식회사 코람코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골든타워 4층				
79	서면 선평리	625-50		임	13	1		하**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330 남약유탄유블레스 9001104호				제척
80	서면 선평리	1078		답	13	1		김**	순천시 원가곡길 74				제척
								김**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6길 6(풍덕동)				
								김**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51				
								장**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92번길 76, 다동 205호(심곡동,태우연립)				
								김**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74번길 26-3, 301호(심곡동)				
								김**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146번길 9-9(도당동) 지분 455분의 21				
81	서면 선평리	622-5		답	2	1		하**	선평리 572				제척

나. 지장물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서면 선평리	766-7	웬스	철골망 (H=1.2)	60m	김** 외6인	순천시 원가곡길 74	
2	서면 선평리	764-5	비닐하우스	철골차양막	23㎡	김** 외6인	순천시 원가곡길 74	
3	서면 선평리	760-2	비닐하우스	철골파이프	316㎡	하**	순천시 서면 지분당산길 87	
			비닐하우스	철골차양막	189㎡			
			비닐하우스	철골차양막	147㎡			
4	서면 선평리	742-4	컨테이너BOX	30X6.0	18㎡	강**	순천시 삼산중길 21	
			비닐하우스	목조	159㎡			
			창고	목조스레트	50㎡			
			창고	목조합석	17㎡			
			계사	철골망	26㎡			
			계사	철골망	15㎡			
			웬스	철골망	150m			
			대문	철재	1식			
5	서면 선평리	741-8	웬스	알루미늄 일반형 (H=2.5)	80m	미상		
6	서면 선평리	741-7	비닐하우스	철골파이프	649㎡	하**	선평리 554	
7	서면 선평리	726-1	관정		1식	하**	선평리 556	
8	서면 선평리	738-3	비닐하우스	철골파이프	696㎡	하**	순천시 매곡동 448-3	
			관정		1식			
9	서면 선평리	727-2	컨테이너BOX	50X8.0	40㎡	하**	순천시 조례연동길 5 조례3차대주파크빌 316-1103	
			창고	철골스레트	30㎡			
10	서면 선평리	734-3	창고	블럭스레트	15㎡	조**	순천시 서면 대들이길 17 배들마을주공아파트 105-905	
			계사	철골스레트	12㎡			
			웬스	철골조	55m			
			대문	철골목조	1식			
11	서면 선평리	1035-9	웬스	철골철조망	15m	김** 외2인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13길 19 롯데캐슬노블 102-406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2	서면 선평리	1035-7	컨테이너BOX	3.0X6.0	18㎡	김** 외2인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13길 19 롯데캐슬노블 102-406	
13	서면 선평리	1033-1	담장	블럭조	94m	미상		
14	서면 선평리	818-22	환풍시설	벽돌조	1식	미상		
15	서면 선평리	818-22	이동식 중계기		1식	미상		
16	서면 선평리	625-60	웬스	철골망	25m	미상		
17	서면 선평리	635-32	창고	철골판넬	39㎡	조**	순천시 서면 입석길 68	
			평상	철골차양막	1식			

나주시 공고 제2021-723호

나주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서류 열람 공고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산1번지 일원 “나주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 를 위한 나주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2021. 5. 20.

나주시장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산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나주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사업
 - 명 칭: 나주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토지이용

구분	부지면적(㎡)			조성계획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41,200.00	증)5,006.7	146,206.7	146,206.7	
시설	소계	56,816.83	감)4,830.5	51,986.3	51,986.3
	도로	15,905.00	감)2,445.7	13,459.3	13,459.3
	조경시설	2,458.00	증)565.0	3,023.0	3,023.0
	편익시설	12,564.83	감)939.8	11,625.0	11,625.0
	교양시설	24,856.00	감)2,265.0	22,591.0	22,591.0
	관리시설	1,033.00	증)255.0	1,288.0	1,288.0
녹지	84,383.17	증)9,837.2	94,220.4	94,220.4	

○ 건축규모

연면적(㎡)			동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17,674.97	감)5,155.09	12,519.88	101	감)12	89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나주시장

○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5.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202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붙임(나주시 도시과 비치)

7. 실시계획 관계도서: 게재생략(나주시 도시과 비치)

8. 열람기간: 2021. 5. 20. ~ 2021. 6. 4.

9. 열람 및 의견 제출 장소

○ 나주시 도시과: ☎ 061-339-8973 / Fax 061-339-2826

편입토지 조서(나주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

구분	위치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72,739	154,538	141,200	146,206.7		
1	백사리	232	232	대	대	629	629	629	629	나주시	
2	백사리	232-1	232-1	대	대	807	807	807	807	나주시	
3	백사리	232-2	232-2	전	전	693	797	693	757	나주시	대장면적 변경, 유스호스텔 신설에 따른 부분편입 변경
4	백사리	232-3	232-3	대	대	492	492	492	492	나주시	
5	백사리	232-4	232-4	전	잡	67	21	67	21	나주시	등록사항 정정에 따른 지목 및 대장면적 감소
6	백사리	233	233	대	대	673	673	673	673	나주시	
7	백사리	233-1	233-1	대	대	292	292	292	292	나주시	
8	백사리	234	234	대	대	503	503	503	503	나주시	
9	백사리	234-1	234-1	대	잡	482	482	482	482	나주시	지목변경
10	백사리	235-1	235-1	대	대	565	565	565	565	나주시	
11	백사리	236-1	236-1	대	대	134	134	134	134	나주시	
12	백사리	566	566-1	도	대	3,078	322	277	322	나주시	지적분할에 따른 지목 및 대장면적 증가
13	백사리	산56	산56	임	임	22,612	21,227	22,612	21,227	나주시	지적분할에 따른 대장면적 감소
13-1	백사리	-	산56-1	-	임	-	1,385	-	1,385	나주시	백사리 산56에서 분할됨
14	백사리	산57	산57	임	임	11,306	11,306	11,306	10,235	나주시	유스호스텔 신설에 따른 부분편입 변경
15	백사리	산57-3	산57-3	임	임	2,579	2,579	2,579	2,513	나주시	유스호스텔 신설에 따른 면적 감소
15-1	백사리	-	산58-5	-	임	-	916	-	199	나주시	신규편입
15-2	백사리	-	산58-7	-	임	-	2,897	-	82	나주시	신규편입
16	산곡리	23	23	도	대	34	34	34	34	나주시	지목변경
17	산곡리	23-3	23-3	대	대	159	159	159	159	나주시	
18	산곡리	산1	산1	임	임	8,727	6,662	7,046	6,662	나주시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 감소
18-1	산곡리	-	산1-1	-	임	-	2,065	-	2,065	나주시	산곡리 산1에서 분할됨
19	산곡리	산2	산2	임	임	40,959	40,959	40,959	40,959	나주시	
20	산곡리	산3	산3-1	임	임	28,661	38,319	28,578	34,783.7	나주시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

구분	위치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1	신곡리	산22	-	임	-	28,974	-	2,000	-	김*식	사유지 제척
22	신곡리	산23	산23	임	임	2,876	2,876	2,876	2,876	나주시	
23	신곡리	산23-1	산23-1	임	임	12,705	12,705	12,705	12,598	나주시	부분편입으로 변경
24	신곡리	산23-2	산23-2	임	임	994	994	994	994	나주시	
25	신곡리	산23-3	산23-3	임	임	2,149	2,149	2,149	2,149	나주시	
26	신곡리	산23-4	산23-4	임	임	119	119	119	119	나주시	
27	신곡리	산24-2	산24-2	임	임	1,470	1,470	1,470	1,329	나주시	부분편입으로 변경

광양시 고시 제2021-185호

광양 도시관리계획(백운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양시 봉강면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백운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21. 5. 20.

광양시장

-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가.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	3	백운유원지	백운저수지 일대	1,129,990	-	1,129,990	2009. 7. 13.

나. 유원지 조성계획 세부내역 결정(변경): 세부시설 결정 조서(붙임)

구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1,129,990	-	1,129,990	6,532	7,858	12,985	14,446	시설율 17.2%
시설소계	178,444	증)15,962	194,406	6,532	7,858	12,985	14,446	
운동시설	21,379	-	21,379	152	152	152	152	건폐율 0.7%
휴양시설	80,426	증)15,962	96,388	6,344	7,670	12,797	14,258	
특수시설	24,459	-	24,459	36	36	36	36	용적률 1.3%
관리시설	52,180	-	52,180	-	-	-	-	
녹지	951,546	감)15,962	935,584	-	-	-	-	녹지율 82.8%

다. 유원지 조성계획 관계도서 :계재 생략(광양시청 공원과, 도시재생과 비치)

라. 세부시설 조서: 붙임 참조

-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공원과(☎061-797-2951) 및 도시재생과(☎061-797-2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시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부지면적 (㎡)			시설면적(㎡)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129,990	-	1,129,990	6,532	7,858	12,985	14,446	시설율 17.2%
시설소계			178,444	증 15,962	194,406	6,532	7,858	12,985	14,446	
운동 시설	소 계		21,379	-	21,379	152	152	152	152	
	1-1	물놀이장	18,798	-	18,798	152	152	152	152	
	1-2	수상레포츠	2,581	-	2,581	-	-	-	-	
휴양 시설	소 계		80,426	증 15,962	96,388	6,344	7,670	12,797	14,258	
	2-1-1	숙박시설	15,833	-	15,833	2,801	2,801	6,394	6,394	
	2-1-2	숙박시설	-	증 15,962	15,962	-	1,326	-	1,461	
	2-2	복합휴양시설	30,370	-	30,370	3,455	3,455	6,288	6,288	
	2-3	오토캠핑장	34,223	-	34,223	88	88	115	115	
특수 시설	소 계		24,459	-	24,459	36	36	36	36	
	3-1	초화원	24,459	-	24,459	36	36	36	36	
관리 시설	소 계		52,180	-	52,180	-	-	-	-	
	4-1	도로	32,997	-	32,997	-	-	-	-	
	4-2	산책로	19,183	-	19,183	-	-	-	-	
녹지			951,546	감 15,962	935,584	-	-	-	-	녹지율 82.8%

강진군 고시 제2021-71호

강진 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진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강진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20.

강진군수

1. 강진 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조서 : 다음
2. 강진 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진군청 건설과(061-430-39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용도지역 결정(변경없음)
- 2. 근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⑥	학교	고등학교	강진읍 교촌리 281번지 일원	80,269	증)3,450	83,719	전고 제1988-142호 (1988.08.31)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⑥	학교	- 구분 : 변경(경미한 변경) - 위치 : 강진읍 교촌리 281번지일원 - 면적 : 80,269㎡ → 83,719㎡[증3,450(4.3%)]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및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동실습소를 증축하고, 이에 필요한 학교 부지를 확보하고자 함

강진군 고시 제2021-73호

강진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강진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21. 5. 20.

강진군수

1. 강진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다음
2. 강진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강진군청 건설과(061-430-3993) 및 관광과(061-430-333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강진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2	저두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대구면 저두리 일원	-	38,426.2	38,426.2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경 사유
신설	12	대구면 저두리 320-3번지 일원	38,426.2	대구면 저두리 일원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1	1,102	11,078.2	1	14	153	5	793	9,743.2	5	295	1,182.0
중로	3	476	7,005.2	-	-	-	3	476	7,005.2	-	-	-
소로	8	626	4,073.0	1	14	153	2	317	2,738.0	5	295	1,182.0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98	14	국지도로	448	저두리497-3	소로2-357	일반도로	-	
신설	중로	2	99	15	국지도로	14	중로2-98	주차장27	일반도로	-	
신설	중로	2	100	17	국지도로	14	중로2-98	주차장27	일반도로	-	
신설	소로	1	125	10	특수도로	14	중로2-98	주차장27	보행자 전용도로	-	
신설	소로	2	356	8	국지도로	55	중로2-98	저두리311-3	일반도로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357	8	국지도로	262	중로2-98	저두리320-2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174	4	특수도로	80	저두리307-3	저두리496-4	보행자 우선도로	-	
신설	소로	3	175	4	특수도로	79	저두리 313	저두리 314	보행자 우선도로	-	
신설	소로	3	176	4	특수도로	35	저두리311-1	저두리311-1	보행자 우선도로	-	
신설	소로	3	177	4	특수도로	62	중로2-98	소로2-357	보행자 전용도로	-	
신설	소로	3	178	4	특수도로	41	중로2-98	소로2-357	보행자 전용도로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중로2-98	• 국지도로신설 (B=14m, L=448m)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국지도로 신설
-	중로2-99	• 국지도로신설 (B=15m, L=14m)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국지도로 신설
-	중로2-100	• 국지도로신설 (B=17m, L=14m)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국지도로 신설
-	소로1-125	• 특수도로신설 (B=10m, L=14m)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특수도로 신설
-	소로2-356	• 국지도로신설 (B=8m, L=55m)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국지도로 신설
-	소로2-357	• 국지도로신설 (B=8m, L=262m)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국지도로 신설
-	소로3-174	• 특수도로신설 (B=4m, L=80m)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특수도로 신설
-	소로3-175	• 특수도로신설 (B=4m, L=79m)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특수도로 신설
-	소로3-176	• 특수도로신설 (B=4m, L=35m)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특수도로 신설
-	소로3-177	• 특수도로신설 (B=4m, L=62m)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특수도로 신설
-	소로3-178	• 특수도로신설 (B=4m, L=41m)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특수도로 신설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	증)8,933	8,933	-	
신설	26	노외주차장	대구면 저두리 312번지 일원	-	증)3,073	3,073	-	
신설	27	노외주차장	대구면 저두리 313번지 일원	-	증)1,791	1,791	-	
신설	28	노외주차장	대구면 저두리 320번지 일원	-	증)4,069	4,069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26	노외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 위치 : 저두리 312번지 일원 - 면적 : 3,073㎡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주차장 신설
27	노외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 위치 : 저두리 313번지 일원 - 면적 : 1,791㎡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주차장 신설
28	노외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 위치 : 저두리 320번지 일원 - 면적 : 4,069㎡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주차장 신설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2	공원	소공원	대구면 저두리 320번지 일원	-	증) 1,365	1,365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2	소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 위치 : 저두리 320번지 일원 - 면적 : 1,365㎡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소공원 신설

나) 광장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8	광장	경관광장	대구면 저두리 321번지 일원	-	증) 1,294	1,294	-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8	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 위치 : 저두리 321번지 일원 - 면적 : 1,294㎡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광장 신설

다)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6	녹지	경관녹지	대구면 저두리 496-9번지 일원	-	증) 348	348	-	
신설	7	녹지	경관녹지	대구면 저두리 313번지 일원	-	증) 1,846	1,846	-	
신설	8	녹지	경관녹지	대구면 저두리 320-1번지 일원	-	증) 766	766	-	
신설	9	녹지	경관녹지	대구면 저두리 320-2번지 일원	-	증) 400	400	-	
신설	10	녹지	경관녹지	대구면 저두리 320-10번지 일원	-	증) 300	300	-	
신설	11	녹지	경관녹지	대구면 저두리 307-3번지 일원	-	증) 1,425	1,425	-	
신설	12	녹지	경관녹지	대구면 저두리 311-1번지 일원	-	증) 1,547	1,547	-	
신설	13	녹지	경관녹지	대구면 저두리 477-1번지 일원	-	증) 2,202	2,202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6	경관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 위치 : 저두리 496-9번지 일원 - 면적 : 348㎡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녹지 신설
7	경관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 위치 : 저두리 313번지 일원 - 면적 : 1,846㎡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녹지 신설
8	경관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 위치 : 저두리 320-1번지 일원 - 면적 : 766㎡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녹지 신설
9	경관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 위치 : 저두리 320-2번지 일원 - 면적 : 400㎡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녹지 신설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0	경관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위치 : 저두리 320-10번지 일원 - 면적 : 300㎡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녹지 신설
11	경관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위치 : 저두리 307-3번지 일원 - 면적 : 1,425㎡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녹지 신설
12	경관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위치 : 저두리 311-1번지 일원 - 면적 : 1,547㎡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녹지 신설
13	경관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위치 : 저두리 477-1번지 일원 - 면적 : 2,202㎡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녹지 신설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상가시설용지

도면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	5,424	
상가시설 (A)	A1	803	496-4답 일원	803	
	A2	490	313답	490	
	A3	490	314답	490	
	A4	490	311-1전	490	
	A5	940	320-1잡	940	
	A6	468	320답	468	
	A7	477	323전 일원	477	
	A8	484	323전 일원	484	
	A9	782	322전	782	

2) 공공시설용지

도면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	10,227	
공공시설 (B)	B1	3,073	312답 일원	3,073	주차장
	B2	1,791	312-2도 일원	1,791	주차장
	B3	4,069	3126전 일원	4,069	주차장
	B4	1,294	321전 일원	1,294	광 장

3) 녹지용지

도면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m ²)	
합 계			-	11,697	
녹지시설 (C)	C1	348	496-9도 일원	348	경관녹지
	C2	1,846	313답 일원	1,846	경관녹지
	C3	766	320-1잡 일원	766	경관녹지
	C4	400	320-2도 일원	400	경관녹지
	C5	300	320-10답 일원	300	경관녹지
	C6	1,425	307-3전 일원	1,425	경관녹지
	C7	1,547	311-1전 일원	1,547	경관녹지
	C8	2,202	477-1구 일원	2,202	경관녹지
	C9	1,498	317전	1,498	소하천
	C10	1,365	321답	1,365	공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준관리
계획 결정(변경)조서

1) 상가시설용지

도면 표시 번호	위치 (가구 번호)	구분	계획내용(도면표시)			
-	A1-A9	용도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및 제4호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제외),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불허용도 - 권장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2층 이하			
		배치	○지형을 고려한 배치			
		형태	○건축물의 배치는 해안가의 특성상 최대한 바닷가를 조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치 유도			
		색채	색채 가이드라인			적용범위
	색채구분	명도	채도	전라남도 섬경관가이드라인의 상업건축물 권장색채		
	외벽	8이상	4이하			
	지붕	20이상	10이상 90이하			
	강조색	40이하	40이하			

2) 녹지용지

도면 표시 번호	위치 (가구 번호)	구분	계획내용(도면표시)
-	C1-C8	용도	○권장용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 중 나목 조경시설 중 화단·분수·조각, 다목적 휴양시설 중 휴게소·긴의자, 사목 편의시설 중 화장실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1층 이하(5m 이하), 공공목적의 조형물일 경우 예외

강진군 공고 제2021-373호

강진 군계획시설(주차장 1호) 영랑힐링정원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강진 군계획시설(주차장 1호) 영랑힐링정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20.

강진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21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주차장 1호)
 - 나. 명 칭 : 영랑힐링정원 주차장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주차장 885㎡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강진군수
 - 나. 주 소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5. 사업기간(예정) : 실시계획인가일 ~ 2022. 12. 31.
6. 관련설계도서 및 도면 : 게재생략(강진군 건설과 비치)
7. 열람기간 및 장소
 - 가. 기 간 : 2021. 5. 20. ~ 2021. 6. 3. (14일간)
 - 나. 장 소 : 강진군 건설과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건설과(061-430-3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가. 편입 토지조서

연번	토지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성명	주 소	
1	강진읍 동성리	217	대	764	764	박○○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연번	토지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권리 내용	성명	주소	
2	강진읍 동성리	217-2	대	53	53	박○○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3	강진읍 동성리	217-4	대	13	13	박○○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4	강진읍 동성리	711-34	대	25	25	박○○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5	강진읍 동성리	715	도	18,887	30	국(건설부)					
합계				19,742	885						

나. 편입 지장물조서

위 편입토지 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일체이며,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개별 통지하며,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열람기간 중에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사업명 : 강진 군계획시설(주차장 1호) 영랑힐링정원 주차장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 강진군수

토지(물건)소재지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번지

소유자

성명



주소

의견내용

첨부서류

제출처

강진군청 건설과 농어촌개발팀 ☎ 061-430-3413 / 2021.5.31.까지

2021년 5월 일

의견 제출인

(인)

영광군 고시 제2021-55호

**‘영광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330번지 외 33필지 상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사항 등에 대하여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의제 처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군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 5. 20.

영광군수

1. 영광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다음
2. 영광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 게재생략
3. 관계 도서는 영광군청 도시환경과(061-350-4764) 및 종합민원실(061-350-547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영광 백학리 공동주택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330번지 일원	-	증 32,537	32,537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결정내용	비고
㉠	영광 백학리 공동주택	·신설 - 면적 : 32,537㎡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등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대상지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도시미관 증진과 양호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세분 및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2,537	-	32,537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32,528	-	32,528	99.9	
자연녹지지역	9	-	9	0.1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가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2	25	주간선 도로	1,495	대로1-2	대로3-6	일반 도로	-	
변경	대로	3	2	25	주간선 도로	1,495	대로1-2	대로3-6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430	중로1-1	대로3-2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1	2	10	국지 도로	430 (198)	중로1-1	대로3-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74	8	국지 도로	207 (140)	소로2-175	소로1-2	일반 도로	-	

주 : ()는 구역 내 연장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대로3-2호선	대로3-2호선	· 선형 변경 - B = 25m, L = 1,425m	영광군 고시 제2019-54호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반영하여 선형변경
변경	소로1-2호선	소로1-2호선	· 선형 변경 - B = 10m, L = 430m	공동주택 진출입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일부구간 선형변경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	공동 1	29,348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330번지 일원	-	증 29,348	29,348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	공동 1	용 도	○ 허용용도 : 주택법에 의한 APT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제5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사업지구 결정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이하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제6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사업지구 결정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APT : 최고 20층 이하
		배 치	○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확보, 채광 고려 배치
		형 태	○ 지붕 :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경사형 지붕 또는 평지붕으로 조형적 형태의 지붕으로 계획을 권장하고, 과도한 장식은 지양 ○ 담장 :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높이 1m이하의 생울타리 및 투시형 담장 계획

5)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비고
-	공동 1	보행 동선	공동주택 단지내	보차분리를 통한 안전한 보행통로 확보 단지내에서 보행동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계획	도면 참조
		차량 동선	공동주택 단지내	단지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남측 소로1-2호선변에 주출입구, 동측 대로3-2호선변 부출입구를 계획 단지 내 에서 차량동선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계획으로 단지 내 차량동선의 최소화	도면 참조
		차량 출입 허용 구간	소로1-2호선변 (주출입구) 대로3-2호선변 (부출입구)	단지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남측에 주출입구, 동측에 부출입구 를 계획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 허용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 한하여 설치	도면 참조
		차량 출입 불허 구간	-	차량출입허용구간외의 구간은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	도면 참조

다. 영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 : 별첨(생략)

영광군 고시 제2021-56호

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영광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21. 5. 20.

영광군수

1. 영광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다음조서
2. 영광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 도서는 영광군청 도시환경과(061-350-476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 군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

○ 교통시설(도로)

·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133	대로3-2	소로1-2	일반 도로	백학리	전남고-50 (1979.3.20)	
변경	소로	2	2	8	국지 도로	141	대로3-2	소로1-2	일반 도로	백학리	전남고-50 (1979.3.20)	
기정	소로	2	86	8	국지 도로	145	대로3-2	소로1-2	일반 도로	백학리	1986.9.4	
변경	소로	2	86	8	국지 도로	154	대로3-2	소로1-2	일반 도로	백학리	1986.9.4	

· 변경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2	소로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증가 •연장 : 133m → 141m, 증8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에 따라 단절된 도로의 연결
소로2-86	소로2-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증가 •연장 : 145m → 154m, 증9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에 따라 단절된 도로의 연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16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고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 승인을 얻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7.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단위 : 원)

회계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잉여금
계	50,490,835,785	25,652,940,693	24,837,895,092
일반회계	23,534,246,967	14,881,810,863	8,652,436,104
특별회계	26,956,588,818	10,771,129,830	16,185,458,988

- 2. 2020년말 현재 채 권 액 : 350,000원
- 3. 2020년말 현재 채 무 액 : 50,000,000,000원
- 4. 2020년말 현재 공유재산관리액 : 230,000,000원
- 5. 2020년말 현재 물품보유액 : 720,895,630원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

□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 예산현액	: 49,112,772,570원
○ 수납액	: 50,490,835,785원
○ 지출액	: 25,652,940,693원
○ 결산상잉여금	: 24,837,895,092원
○ 다음연도 이월액	: 4,906,311,400원
- 명시이월	: 4,605,670,700원
- 사고이월	: 300,640,700원
○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 1,238,149,710원
○ 순세계잉여금	: 18,743,433,982원
□ 2020년도 일반회계	
○ 예산현액	: 21,753,707,570원
○ 수납액	: 23,534,246,967원
○ 지출액	: 14,881,810,863원
○ 결산상잉여금	: 8,652,436,104원
○ 다음연도 이월액	: 4,696,311,400원
- 명시이월	: 4,395,670,700원
- 사고이월	: 300,640,700원
○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 1,238,149,710원
○ 순세계잉여금	: 2,767,974,994원
□ 2020년도 특별회계(울촌산단조성사업특별회계)	
○ 예산현액	: 27,359,065,000원
○ 수납액	: 26,956,588,818원
○ 지출액	: 10,771,129,830원
○ 결산상잉여금	: 16,185,458,988원
○ 다음연도 이월액	: 210,000,000원
- 사고이월	: 1,497,227,000원
○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 0원
○ 순세계잉여금	: 15,975,458,988원
□ 채권 결산(관사관리비 선수금)	
○ 2019년도 말 채권 현재액	: 350,000원
○ 2020년도 말 채권 현재액	: 350,000원
□ 채무 결산	
○ 2019년도 말 채무현재액	: 58,500,000,000원

- 2020년도 채무 상환액 : 8,500,000,000원
- 2020년도 말 채무현재액 : 50,000,000,000원
- 공유재산 결산
 - 건물 2동(관사) : 230,000,000원
- 물품 결산
 - 2019년도 말 물품현황 : 87건 617,919,550원
 - 2020년도 신규취득 : 7건 105,846,080원
 - 2020년도 처분(폐기) : 2건 2,870,000원
 - 2020년 말 현재 물품현황 : 92건 720,895,630원